



---

# 의정활동보고서

---



제296회 정례회(2017. 11. 6 ~ 12. 20)



경 상 북 도 의 회



## 개 회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한한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정유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18년 새해를 설계  
하는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비회기 중에도 특위활동과 정책연구회 세미나 개최, 의정  
자문단 분과별 회의, 지역행사 참석을 통한 민생투어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닷새 앞으로 다가온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준비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등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정부가 울진·영덕 등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을 재천명하고,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을 발표하면서 영덕과 울진, 경주 지역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들 지역민들의 피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손실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정부 지원책 건의 등 후속대책 마련은 물론 우리 도가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등 국책사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치밀한 논리개발 등 도정 역량을 총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4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개정 협상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철강과 자동차·농산품 등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은 물론 신흥시장 개척, 시장

다변화 등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인 지원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8년도 본예산 심사를 비롯해 민생 조례안 처리 등 매우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도정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도정과 예산편성 방향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미래 응도 경북의 탄탄한 기반 마련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사를 하면서 새삼 세월이 참 빠름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일이 입동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 응 규

#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0
III. 의안처리	23
IV. 민원처리	24
V. 본회의 보고사항	26
VI. 5분 자유발언	35
□ 박권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35
□ 박문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38
□ 안희영 의원(농수산위원회)	42
□ 장경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45
□ 정영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48
□ 조주홍 의원(문화환경위원회)	51

부 록

<input type="checkbox"/> 조 례 안( 41건) .....	57
<input type="checkbox"/> 예 산 안( 4건) .....	347
<input type="checkbox"/> 동 의 안( 3건) .....	363
<input type="checkbox"/> 결 의 안( 5건) .....	438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는 2017년 11월 6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2월 20일까지 45일간의 회기동안 4차의 본회의와 24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8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1월 6일(월) 14시에 개의하여 일반사항 보고를 마친 후, 5분 자유발언과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월)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8년도 본예산 심사를 비롯해 민생 조례안 처리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도정 발전의 기회로 삼는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297회 임시회로 2018년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 II. 의사일정

###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정례회
-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 다. 집회일시 : 2017년 11월 6일(월) 14:00

###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7년 11월 6일 ~ 12월 20일(45일간)
-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4회(누계 69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32	2	5	4	3	3	3	4	7	1
누 계	375	30	48	48	40	36	38	40	61	34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 3. 활 동

####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6(월)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 박권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11. 27(월)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 박문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2. 12(화)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 안희영 의원(농수산위원회) - 장경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 ○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 12(화) 11:00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li> <li>○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li> <li>○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li> <li>○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li> <li>○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li> </ul>	
12. 20(수) 11:00 (제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영길 의원(문화환경위원회)</li> <li>- 조주홍 의원(문화환경위원회)</li> </ul> </li> <li>○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li> <li>○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li> <li>○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li> <li>○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li> <li>○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li> <li>○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li> <li>○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li> <li>○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li> </ul>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li> <li>○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li> <li>○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li> <li>○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li> <li>○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li> <li>○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li> <li>○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김희수)·부위원장(배진석) 인사</li> </ul>	

## 나. 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7(월)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li> <li>○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li> </ul>	
12. 12(화) 10:2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li> <li>○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li> <li>○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회사무처 소관)</li> </ul>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6(월) 15:1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주요업무보고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북통상주식회사 소관	
11. 29(수) 11:1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 30(목) 11:10 (제3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변인 소관) ○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12. 1(금) 11:10 (제4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12. 12(화) 11:10 (제5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소관) ○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9(수) 10: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li> <li>○ 경상북도약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도시립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li> <li>○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li> </ul>	
11. 30(목)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li> <li>○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li> </ul>	
12. 1(금)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li> <li>○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li> </ul>	
12. 12(화) 14:00 (제4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li> <li>○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li> <li>○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li> <li>○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li> </ul>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li> <li>○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li> <li>○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li> </ul>	

〈문화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29(수) 10: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li> <li>○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도시립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li> <li>○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li> </ul>	
11. 30(목) 10: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li> <li>○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li> </ul>	
12. 12(화) 14:30 (제3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li> <li>○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li> <li>○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li> </ul>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29(수)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동해안발전본부 소관)	
11.30(목) 11:1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축산유통국 소관)	
12.12(화) 14:30 (제3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29(수) 11:07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예산안(도청신도시추진단, 건설도시국 소관) ○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11. 30(목) 11:33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민안전실 소관)</li> <li>○ 2018년도 예산안(소방본부 소관)</li> <li>○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민안전실 소관)(계속)</li> <li>○ 2018년도 예산안(소방본부 소관)(계속)</li> <li>○ 2018년도 예산안(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계속)</li> <li>○ 2018년도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계속)</li> </ul>	
12. 12(화) 14:40 (제3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 소관)</li> <li>○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계속)</li> </ul>	

〈교육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9(수) 14:02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li> <li>○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li> </ul>	
11. 30(목) 11:05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li> </ul>	
12. 1(금)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li> </ul>	
12. 12(화) 14:00 (제4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li> <li>○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li> </ul>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 4(월) 10:4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li> <li>· 기획조정실 소관</li> <li>·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li> <li>·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li> </ul>	
12. 5(화) 10:4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li> </ul>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본부 소관</li> <li>· 의회사무처 소관</li> <li>·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li> <li>· 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li> <li>· 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 소관</li> </ul>	
12. 6(수) 10:35 (제3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li> <li>· 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문화관광체육국 소관</li> <li>· 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 소관</li> </ul>	
12. 7(목) 10:40 (제4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li> <li>· 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 소관</li> <li>·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농업기술원 소관</li> </ul>	
12. 8(금) 10:30 (제5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li> <li>○ 계수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li> </ul>	
12. 11(월) 17:40 (제6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li> <li>○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li> </ul>	
12. 18(월) 10:40 (제7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li> <li>·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li> <li>·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li> <li>·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li> </ul>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li> <li>· 의회사무처·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li> <li>○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li> <li>○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li> <li>○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계속)</li> <li>○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계속)</li> </ul>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6(월) 11:12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li> <li>○ 독도 관련 주요 업무보고의 건</li> </ul>	

### Ⅲ. 의안처리

#### 제10대 의회 의안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부의)	처 리 (가+나+다)	의 결					철회 (나)	보류 (다)	비고	
			계 (가)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59 (811)	58 (800)	58 (791)	53 (721)	5 (67)	0 (3)	3 (0)	0 (9)	1 (11)		
조 례 안	소 계	42 (516)	41 (508)	41 (501)	38 (458)	3 (40)	0 (3)	0 (0)	0 (7)	1 (8)	
	의 회 제 안	29 (296)	28 (289)	28 (283)	27 (269)	1 (14)			(6)	1 (7)	
	도지사 제 출	10 (152)	10 (152)	10 (151)	8 (132)	2 (19)			(1)		
	교육감 제 출	3 (68)	3 (67)	3 (67)	3 (57)	(7)	(3)		(0)	(1)	
규 칙 안	0 (6)	0 (5)	0 (5)	(5)					(1)		
예산 · 결산	4 (35)	4 (35)	4 (35)	2 (20)	2 (15)						
동의 · 승인	3 (75)	3 (73)	3 (73)	5 (61)	(12)				(2)		
건의 안	0 (2)	0 (2)	0 (2)	(2)							
결 의 안	8 (106)	8 (106)	8 (106)	8 (106)							
기 타 안	2 (71)	2 (71)	2 (69)	2 (69)				(2)			

※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 IV. 민원처리

###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 2. 진 정

####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5 (99)	1 (42)	(10)	(2)	2 (23)	1 (6)	(7)	(4)	1 (2)	(3)
의 회 영	(2)	(2)								
기 경 제	(8)	(3)					(5)			
행 정 보 건 복 지	1 (18)	1 (12)	(4)		(1)		(1)			
문 화 환 경	(13)	(5)	(6)					(2)		
농 수 산	1 (6)	(3)					(1)		1 (2)	
건 설 소 방	2 (39)	(11)		(2)	2 (22)			(2)		(2)
교 육	1 (12)	(5)				1 (6)				(1)
특 별 위 원 회	(1)	(1)								

※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 나. 처 리

(단위 : 건)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9 (99)	9 (98)	(1)			
의회운영	(2)	(2)				
기획경제	(8)	(8)				
행 정 보건복지	2 (18)	2 (18)				
문화환경	1 (13)	1 (13)				
농 수 산	1 (6)	1 (6)				
건설소방	4 (39)	4 (38)	(1)			
교 육	1 (12)	1 (12)				
특별위원회	(1)	(1)				

※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 59건(조례안 42, 예산안 4, 동의안 3, 결의안 8, 기타 2)

2. 처리안건 : 58건

- 가결 의안 : 58건(조례안 41, 예산안 4, 동의안 3, 결의안 8, 기타 2)
- 미처리(보류) 의안 : 조례안 1건
  - 경상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17. 12. 1, 황병직 의원 외 12명)

3. 의안접수 내용

- 조례안 : 접수 42건, 처리 41건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17. 10. 26	도 지 사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7. 10. 26	도 지 사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	
3	'17. 10. 26	배한철 의원 외 12명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17. 10. 26	황이주 의원 외 19명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17. 10. 26	도 지 사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17. 10. 26	윤창욱 의원 외 11명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7. 10. 26	장두욱 의원 외 10명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7. 10. 26	이영식 의원 외 11명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17. 10. 26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7. 10. 26	도 지 사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1	'17. 10. 26	장대진 의원 외 13명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2	'17. 10. 26	황병직 의원 외 7명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7. 10. 26	이진락 의원 외 10명	경상북도 도시립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14	'17. 12. 1	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7. 12. 1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7. 12. 1	정상구 의원 외 10명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 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17	'17. 12. 1	이영식 의원 외 14명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12. 1	도 지 사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12. 1	이태식 의원 외 14명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20	'17. 12. 1	윤창욱 의원 외 7명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17. 12. 1	박용선 의원 외 13명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17. 12. 1	황이주 의원 외 11명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17. 12. 1	나기보 의원 외 24명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4	'17. 12. 1	이운식 의원 외 16명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17. 12. 1	도 지 사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6	'17. 12. 1	도 지 사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17. 12. 1	장영석 의원 외 9명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17. 12. 1	남천희 의원 외 9명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9	'17. 12. 1	박문하 의원 외 9명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30	'17. 12. 1	박정현 의원 외 10명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17. 12. 1	김수문 의원 외 9명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17. 12. 1	홍진규 의원 외 9명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17. 12. 1	김봉교 의원 외 7명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4	'17. 12. 1	김지식 의원 외 9명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35	'17. 12. 1	곽경호 의원 외 16명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17. 12. 1	김희수 의원 외 19명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17. 12. 1	조현일 의원 외 10명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17. 12. 1	조현일 의원 외 9명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17. 12. 1	교 육 감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17. 12. 1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1	'17. 12. 1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17. 12. 1	황병직 의원 외 12명	경상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계류중

○ 예산안 : 4건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17. 11. 10	도 지 사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17. 11. 10	교 육 감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17. 12. 1	도 지 사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17. 12. 1	교 육 감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동의안 : 3건

연번	접수일	제출자	안건명	비고
1	'17. 10. 26	도지사	2018년도 정기분(2차)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17. 10. 26	교육감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3	'17. 12. 1	교육감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결의안 : 8건

연번	접수일	제출자	안건명	비고
1	'17. 11. 6	의장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17. 11. 6	의장	휴회의 건	
3	'17. 11. 27	의장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17. 12. 1	김명호 의원 외 36명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5	'17. 12. 1	박권현 의원 외 37명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	
6	'17. 12. 20	황병직 의원 외 9명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17. 12. 20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17. 12. 20	의회운영위원장	지진대책특별위 구성결의안	

○ 기타안 : 2건

연번	접수일	제출자	안건명	비고
1	'17. 11. 6	의장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	
2	'17. 12. 20	의장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 : 41건

연번	이 송 일	이 송 처	안 건 명	공포일
1	'17. 12. 12	도 지 사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22호)
2	'17. 12. 12	도 지 사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	'17. 12. 28 (제4023호)
3	'17. 12. 12	도 지 사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2. 28 (제4024호)
4	'17. 12. 12	도 지 사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2. 28 (제4025호)
5	'17. 12. 12	도 지 사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2. 28 (제4026호)
6	'17. 12. 12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27호)
7	'17. 12. 12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28호)
8	'17. 12. 12	도 지 사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29호)
9	'17. 12. 12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30호)
10	'17. 12. 12	도 지 사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31호)
11	'17. 12. 12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7. 12. 28 (제4032호)
12	'17. 12. 12	도 지 사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2. 28 (제4033호)
13	'17. 12. 12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시립 등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17. 12. 28 (제4034호)
14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 8 (제4052호)

연번	이 송 일	이 송 처	안 건 명	공포일
15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 8 (제4053호)
16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17. 12. 28 (제4035호)
17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2. 28 (제4036호)
18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37호)
19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7. 12. 28 (제4038호)
20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12. 28 (제4039호)
21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2. 28 (제4040호)
22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41호)
23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7. 12. 28 (제4042호)
24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43호)
25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44호)
26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45호)
27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46호)
28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47호)

연번	이 송 일	이 송 처	안 건 명	공포일
29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48호)
30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49호)
31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50호)
32	'17. 12. 20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51호)
33	'17. 12. 20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12. 28 (제4013호)
34	'17. 12. 20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17. 12. 28 (제4014호)
35	'17. 12. 20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15호)
36	'17. 12. 20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16호)
37	'17. 12. 20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17호)
38	'17. 12. 20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18호)
39	'17. 12. 20	교 육 감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19호)
40	'17. 12. 20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20호)
41	'17. 12. 20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28 (제4021호)

## 5.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

위원회	일자	장소	참석의원	활동내용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2017. 10. 23	도의회	위원장 외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의회 의정자문단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분과회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li> <li>-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제언</li> </ul> </li> </ul>
문화환경위원회	2017. 10. 24	도의회	위원장 외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의회 의정자문단 문화환경분과회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자문단 활동에 관한 사항</li> <li>- 2017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li> <li>- 2018 본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li> </ul> </li> </ul>
농수산위원회	2017. 10. 30	성주	위원장 외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의회 의정자문단 농수산분과회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분야 주요정책 토론 및 현장 시찰</li> <li>-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주요 성과 분석</li> </ul> </li> </ul>
건설소방위원회	2017. 10. 27	도의회	위원장 외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의회 의정자문단 분과회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등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li> <li>-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제언</li> <li>- 2018년 분과활동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ul>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2017. 10. 25	구미	위원장 외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북·대구 상생발전 토론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발표 및 토론</li> <li>· 우수 상생발전과제 발표</li> <li>· 상생발전 현안 자유토론</li> </ul> </li> </ul>
환경정책연구회	2017. 10. 31 ~ 2017. 11. 1	부산창원	이동호 대표 외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세미나 및 현장방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발표 및 토론</li> <li>· 낙동강 수질 개선 방안 모색</li> <li>- 현장방문 :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K-water 낙동강남부권관리</li> </ul> </li> </ul>
자연공원정책연구회	2017. 11. 2 ~ 2017. 11. 3	문경	홍진규 대표 외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세미나 및 현장방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발표 및 토론</li> <li>· 경상북도 도립공원 보전 및 발전 방향</li> <li>- 현장방문 : 문경새제도립공원 관리사무소</li> </ul> </li> </ul>

## 6. 의원 동정

### □ 수 상

수 상 자	수여기관	일 시	훈 격
이진락 의원	대한뉴스신문, 시사매거진 2580	2017. 10. 25(수)	2017 TOP LEADERS 대상 (우수의정활동 부문)

## VI. 5분 자유발언

□ 2017년 11월 6일 제2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박권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 새마을운동의 발전 방안 관련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오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농촌근대화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계 제10위권의 경제대국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때문에 OECD와 UNDP는 새마을운동을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전수를 요청한 국가는 2013년 13개국에서 2016년에는 52개국으로 늘어났고,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새마을운동은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이 되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이러한 빛나는 성과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물론, 새마을운동의 미래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과 함께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 새마을사업의 경우 코이카(KOICA)는 진행하고 있던 새마을 ODA 관련 26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폐지하고, 2018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ODA'로 분류된 지역개발사업에서 '새마을' 명칭을 삭제하고, 개도국에 기술을 전수하는 새마을청년봉사단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마을'이라는 말이 들어간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짓발도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새마을운동 사업예산은 2018년에 약 36억 7,000만 원이 책정되어 2017년 사업예산 97억 2,000만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되었고, 새마을운동지원 사업예산은 약 4억 2,000만 원으로 2017년 143억 2,000만 원의 3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70년대 초반 열악한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획기적인 정책이었으며, 오랜 시간동안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훌륭한 경제발전 모델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전통이자 인류 보편적 자산이 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뛰어난 경쟁력인 새마을운동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위축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200만 현역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600만 전직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정신과 자부심에 상처를 입혀서도, 사기를 꺾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모든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헌신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서 제2, 제3의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 같은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마을운동의 본질을 오늘날 새로이 되살려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 국가발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 고자 이번 회기에 모든 3백만 경북도민의 힘을 모아 우리 도의회에서 새마을운동을 계승·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2017년 11월 27일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박문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포항지진 피해 대책 관련》

포항 출신 박문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96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93%의 복구율을 기록하며 평상을 찾아가고 있는 포항의 지진과 관련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찬바람 부는 이 겨울에 보금자리를 잃고 기약 없이 시름과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시는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미증유의 국가 대재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포항시 북구 9km지점 흥해읍 용천리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이 그것입니다.

많은 지진 전문가들은 경주 지진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는 데 모두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예고 없이 엄습한 포항의 지진 현장에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그리고 완벽한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리 큰 재난이라도 결코 넘지 못할 난관은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상북도가 지진상황 3분 만에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포항시와 물샐 틈 없는 횡적 공조를 이루어낸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5,600여 포항 수험생을 위해서 수능 시험 1주일 연기 결단을 촉구해 주신 이영우 교육감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등 수차례 포항을 방문하여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셨고, 진행 중이던 행정사무 감사를 중단해 주시고 도정질문까지 취소해 주시고 전 행정력을 지진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배려해 주신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을 방문하여 포항시민들에게 안전과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총리, 해당부처 장관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한목소리로 포항 지진 재난극복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포항시민 대다수는 대입수능시험이 끝나고 대통령까지 다녀가신 지금부터가 진정한 지진복구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기적·중장기적 대책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11월 15일 첫 지진 이후 총 70여 차례 발생한 여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제어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안전진단이 아닌 유능하고 명망 있는 건축구조기술 전문가들의 신뢰할 만한 정밀안전진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복구와 보상에 대한 장비, 인력투입과 관련한 납득할 만한 로드맵과 마스터플랜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곧이어 의회의 예산심사가 있습니다만 2018년에 책정하여진 보장 사업비 5억원과 지도제작비 1억 4,000만 원 등 총 6억 4,000만 원이 고작인 방재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유비는 곧 무환'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지진으로 포항과 경주는 일본처럼 지진발생지역에 국립 지진방재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중장기 종합적인 지진정책 수립과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끝으로 내진설계의 강화와 부실·날림공사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지진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지진에서 1,200여 채의 주택과 32개의 학교건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지진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런 공사를 했는가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그 어떤 천재지변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나눔과 희생의 미덕으로 슬픔과 불행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 국군장병 여러분 등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로는 20억원을 쾌척한 글로벌 기업 포스코로부터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어린 성금 기탁 등 포항을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의 고마운 손길을 포항시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53만 포항시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포항은 지진 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고 포항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포항을 향한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 12월 12일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안희영 의원(농수산위원회) ◎

《신도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관련》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신도시 내의 교육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신도시에 정주기반이 갖추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시설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이 처한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은 아이를 신도시 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청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신도시 내 새벗유치원과 꿈빛유치원은 추첨 결과 대기번호가 100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반 2차 인근 어린이집도 신청 결과 200명 가량은 갈 곳조차 없다고 하니 도청 신도시 교육 인프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학부모들의 불만과 원성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도시는 2019년 3월까지 9개 단지 7,105세대의 아파트에 1만 7,0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향후 영·유아 교육시설 수요는

1,33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근 공무원아파트와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7년 상반기 현재 신도시 내에는 단지 450여 명이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도시 내의 영·유아 수용을 위해 신도시로 이주해오는 영·유아가 정원 초과로 신도시 내의 교육시설에 입학하지 못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천 등 인근지역의 교육시설에 통학을 유도하고, 추가로 영·유아 교육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립 교육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면 신도시 내의 영·유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까지 신도시로 대규모 주민 이주가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신도시 내 땅값이나 임대료가 높아 사립 교육시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신도시 영·유아 교육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되지 않을까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내의 영·유아들은 교육시설 부족으로 하루에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원거리 셔틀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걱정과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신도시 내 학부모들이 영·유아 교육시설의 조기 건립과 추가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원론적인 대책만 제시할 뿐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으며, 특히 영·유아 교육은 가정 생활안정의 근본으로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교육시설의 확충과 같은 교육인프라 구축은 도청 신도시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영·유아 교육 등 교육환경 문제는 가정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현재 경북도와 도교육청에서 신도시 내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현실성 있는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에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영·유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영·유아 교육시설의 조기 건립과 확충을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7년 12월 12일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장경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포항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대책마련 촉구 관련》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포항에 유례 없는 지진이 발생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되어 갑니다. 아직도 지진의 피해는 모두 아물지 않았지만 지진피해 복구 과정에서의 국민적 참여와 따뜻한 관심은 포항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진복구에 큰 힘을 보태주신 국민들과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신 의장님,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도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진 등으로 침체된 포항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부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현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가 등에 대한 소비 촉진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 포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항경제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산출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간접피해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포항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생산, 고용, 수출 등 다방면에서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철강수요 둔화와 동북아 3국간 시장 쟁탈전 가속화에 따른 설비 과잉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성장 저수익 구조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항의 철강생산은 2011년 18조 원에서 2016년 12조 원으로 연평균 8.2%나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고용인원은 2011년 1만 6,400여 명에서 2016년 1만 4,700여 명으로 연평균 2.2% 감소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번 지진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지역의 힘만으로 헤쳐 나가기 어렵고 위기가 장기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가 및 경북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기술의 변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지역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의 포스텍, 3·4세대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핵심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포항~경주~영천~경산~대구~구미~김천을 연결하는 경북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포항~경주~울산을 잇는 동해안 연구개발특구의 조기 지정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포항의 국가 및 일반산업, 경북·대구혁신도시, 경북·대구경제자유구역을 잇는 포항·대구·구미경제권 발전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신항만의 물동량 확보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포항신항만~구미 간 직결선 건설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정책제안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타개하고 지진으로 실의에 빠진 포항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포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북도에서는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세밀한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7년 12월 20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정영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사드배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촉구 관련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성주군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2016년 7월 13일 성주군에 사드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26일 성주군민들의 깊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발사대 2기를 비롯한 관련 장비가 성주에 배치되었고, 9월 6일에는 4기의 발사대가 추가로 배치되면서 현재 성주에는 6기의 발사대를 가진 사드포대가 운용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드포대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성주지역 사드배치가 마무리되었는지는 몰라도 성주지역은 아직도 사드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군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배치된 사드 때문에 평화롭게 참외농사를 짓던 성주

소성리 마을 주민들의 삶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해 성주군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정부는 이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한 성주군민들과 김천시민들에 대한 위로와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성주군에 사드배치를 추진하면서 이에 상응한 지역 개발 사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재 정부가 약속한 보상안으로서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실종되었고 관련부처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주군민들은 대구와 성주를 연결하는 국도 6차로 확장, 성주와 김천을 연결하는 지방도 905호 확장 등 18개 사업들을 제안하였지만 2018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니다.

이후 국회를 통해 요구한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 건립, 성주~대구 간 국도교차로 개선사업 등의 4개 사업 91억 원 정도 반영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는 성주군이 당초 제안한 지역개발사업 예산 1조 8,000억 원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경상북도 또한 성주 사드배치를 발표할 당시 사드배치지역 정부 지원 대책반을 꾸렸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으로 성주군은 1년 넘게 극심한

갈등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11월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성주군을 방문했을 때에도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시종일관 추진하고 있다는 변명만 되풀이 하였을 뿐 어떠한 실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며 사드반대집회를 꾸준히 이어오는 군민과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정으로 사드를 받아들인 군민들 모두에게 위로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진정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 최소한의 조치로 관련 지역개발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정부가 성주군민들에게 한 약속을 분명하고 조속하게 이행하도록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도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7년 12월 20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조주홍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건립 촉구 관련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조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리아 실크로드와 신 남방문화 교류의 초석을 다진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 기간 중 땀과 열정으로 수고해 주신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지진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포항시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진피해 복구와 대책마련에 모두 함께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지진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은 갑작스런 재난의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해안권 산불방지센터'의 시간·공간적인 최적입지가 충분히 감안된 지역에 유치·건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산림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전국의 21%에 달할 정도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7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피해면적 또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와 같이 산불 발생이 잦고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산불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초동 대처하느냐에 따라 산불피해 정도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강원도 동해안 대형 산불 발생 이후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동해안권 산불방지센터' 신설의 개선책을 마련하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도 전국에서 산림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지목하면서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경북 동해안 지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산불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동해안권 대형 산불 재난 피해의 답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동시다발적 재난대응체제와 초기 신속한 산불 진화대응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면적이 넓은 우리 도의 경우 시·군 간의 산불진화 헬기의 이동시간은 최소 40여 분 이상 소요되는 바 동

해안권 산불방지센터는 남쪽과 북쪽에 치우치지 않고 도내 안동, 청송, 영양 등 내륙지역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중간지점에 위치해야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해안권 울진, 영덕, 포항의 중심위치는 바로 영덕입니다.

동해안권 산불방지센터가 건립되면 경찰, 소방, 국방부, 기상청 등의 전문 산불방지 전담인력 22명 외 관련 고부가가치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추가 산불진화 전문헬기의 배치와 국비 40%의 헬기 임대 지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 행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 그리고 현 정부 탈원전정책으로 원전클러스터와 신규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스러운 지역 민심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우리 도와 산림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경북도와 강원도에 동해안권 산불방지센터를 동시에 추진해 주실 것과 신속한 재난대응체제를 위한 최적의 입지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41건) .....	57
□ 예 산 안( 4건) .....	347
□ 동 의 안( 3건) .....	363
□ 결 의 안( 5건) .....	438



## 二 조 례 안 二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7. 10. 26)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  
도지사('17. 10. 26)
-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한철 의원 외 12명('17. 10. 26)
-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이주 의원 외 19명('17. 10. 26)
-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7. 10. 26)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욱 의원 외 11명('17. 10. 26)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두욱 의원 외 10명('17. 10. 26)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식 의원 외 11명('17. 10. 26)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7. 10. 26)

-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7. 10. 26)
-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장대진 의원 외 13명('17. 10. 26)
-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병직 의원 외 7명('17. 10. 26)
- 경상북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이진락 의원 외 10명('17. 10. 26)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7. 12. 1)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7. 12. 1)
-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에 관한 조례안  
정상구 의원 외 10명('17. 12. 1)
-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식 의원 외 14명('17. 12. 1)
-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7. 12. 1)
-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태식 의원 외 14명('17. 12. 1)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윤창욱 의원 외 7명('17. 12. 1)
-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선 의원 외 13명('17. 12. 1)

-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이주 의원 외 11명('17. 12. 1)
-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나기보 의원 외 24명('17. 12. 1)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운식 의원 외 16명('17. 12. 1)
-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7. 12. 1)
-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지사('17. 12. 1)
-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석 의원 외 9명('17. 12. 1)
-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천희 의원 외 9명('17. 12. 1)
-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하 의원 외 9명('17. 12. 1)
-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정현 의원 외 10명('17. 12. 1)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문 의원 외 9명('17. 12. 1)
-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진규 의원 외 9명('17. 12. 1)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봉교 의원 외 7명('17. 12. 1)
-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김지식 의원 외 9명('17. 12. 1)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경호 의원 외 16명('17. 12. 1)
-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수 의원 외 19명('17. 12. 1)
-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현일 의원 외 10명('17. 12. 1)
-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현일 의원 외 9명('17. 12. 1)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감('17. 12. 1)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17. 12. 1)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17. 12. 1)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증명)의 제4호 기타 제증명 중 (2) 화재증명을 삭제하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의 제5호 보건사회위생  
관계 중 (6)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응시 (7)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구 분	기준	금액	구 분	기준	금액
<b>【증 명】</b>			<b>【증 명】</b>		
4. 기타 제증명			4. 기타 제증명		
(2) 화재증명	1통	800원	(2) 삭제		
<b>【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b>			<b>【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b>		
5. 보건사회위생관계			5. 보건사회위생관계		
(6)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1건	3,000원	(6) 삭제		
(7)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7) 삭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 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3. 청년의 능력개발
4.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의 생활안정
6.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7. 청년의 권리보호
8.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방안
10.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11.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에 대한 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 이때 성별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한 정보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 3 장 청년정책 심의·의결 등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와 기획·일자리·문화·복지·예산 등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남·여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상북도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추천한 사람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⑨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⑩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년정책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청년정책참여단)**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협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청년정책을 위한 의견제시 및 참여
6. 활동보고서 발간
7.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③ 참여단 구성원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참여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참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도의 관련 부서는 참여단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참여단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 4 장 청년의 권익증진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의 고용촉진)** ①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 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외·사회부적응·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치관을 홍보하는 등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창업지원)** 도지사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교류확대)** 도지사는 도내·외 및 국외 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 5 장 청년의 정착지원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제19조(청년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청년이 도에 정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의 정착분야 발굴)** 도지사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1. 청년창업형 : 제품생산, 복지, IT기반조성, 마을기업 사업 등
2. 마을공동체 : 지역서비스,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등
3. 문화창작형 : 음악, 미술 등 청년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4. 기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시책 등

**제21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청년 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집·선발단계부터 교육, 컨설팅, 지역활동에 이르기까지의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 6 장 청년시설 설치·운영 등

**제22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 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 7 장 보 칙

**제24조(청년발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와 참여단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참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포상)** 도지사는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기능경기대회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에 따른 경기대회를 말한다.
2. “국내기능경기대회”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 경기대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경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기능경기대회(이하 “지방대회”라 한다)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참가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기관에 설치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대회 개최
2. 전국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지역 기능발전을 위한 기능인 사기진작 및 기능장려 사업
4.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운영위원장 1명,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상근 부위원장과 비상근 부위원장으로 구분하고, 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국이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하며, 비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되는 덕망 있는 단체장 및 기업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장, 기술위원장 및 위원은 제3조의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기업의 임직원 중에서 상근 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 및 조직관리, 예산집행 등을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담당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기능경기대회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소속부서장으로 하며 담당직원은 그 부서 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상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부위원장 및 위원이 사고·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위원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 결정을 한다.

**제11조(경비의 재원)** ① 위원회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이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의 보조

2. 도의 보조금

②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사업 경비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대회 개최와 관련되는 경비

2.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3.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및 격려금

4. 제3조제3항제3호의 지역 숙련기술 장려 및 발전에 관련한 사업

5.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경비의 집행)** ① 위원회의 경비는 위원회 설치기관의 회계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② 제11조제1항제2호의 도 보조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상근 부위원장은 원활하고 투명한 경비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회계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지방대회 개최 및 운영)** ① 지방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위원회로부터 개최시기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최시기를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지방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기직종은 전국대회 실시직종을 중심으로 도 숙련기술인 육성 및 산업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직종으로 한다.

③ 지방대회 참가선수의 정원은 경기장별, 직종별 선수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전형기준을 위원장이 마련하여 참가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지방대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기간, 개최지역, 경기직종, 참가자격 등 대회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개최 2개월 전까지 위원장 명의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대회개최 15일전까지 참가선수에게 참가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참가 안내서
2. 지침공구의 목록
3. 선수증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전국대회 유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 순회개최 원칙에 따라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 운영을 주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전국대회의 유치와 운영주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회장 시설과 장비의 준비를 위한 경비
2. 대회준비와 운영을 위한 경비
3. 도 참가선수단에 대한 지원경비
4. 도의 산업·문화·관광과 기업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
5. 그 밖에 전국대회의 운영에 관련되는 경비

**제16조(참가선수 등에 대한 지원)** 위원장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도 선수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수 훈련에 따른 재료비
2. 훈련기간 중 선수 등에 대한 급량비
3. 훈련 지도교사에 대한 격려금
4. 전국대회 입상자 및 우수상 수상자에 대한 격려금
5. 전국대회 입상 유공자(선수, 지도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비용

6.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7조(선수시상)** 위원장은 지방대회 입상자와 우수상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상금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할 수 있다.

1. 1·2·3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기관 등 표창)** ① 위원장은 지방 및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선수를 다수 배출한 산업체와 육성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단체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대회개최 또는 경기집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와 관계자에게 공로표창 또는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기능장려)** 도지사는 기능인 사기양양과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2.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취업·진학 촉진 등 사기진작 사업
3.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위한 기업의 고용유도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방대회 및 전국대회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이하 “공단경북지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경북지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집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위원회의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경상북도 기능경기위원회와 위원회에 설치한 사무국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상북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중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도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도모 및 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출향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출향도민회는 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출향도민회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정 시책 홍보
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3. 출향도민과 도민간의 교류 협력
4.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사업 및 조형물·공원 조성
5. 도 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
6. 도가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 홍보
7. 그 밖에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도민과 출향도민회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을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기금  
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회계관계공무원)</b>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li> <li>2. (생 략)</li> </ol> <p><b>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b>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p> <p><b>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b> 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청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②·③ (생 략)</p>	<p><b>제1조(목적)</b> ----- 「지방회계법」 제50조----- ----- -----.</p> <p><b>제2조(회계관계공무원)</b>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기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li> <li>2. (현행과 같음)</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b>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b> ① - ----- 「지방회계법」 제49조에 ----- ----- ----- ----- -----.</p> <p style="text-align: right;">②·③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관람석  
지정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적의 관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입장한 자를”를 “입장한 사람을”로 하고,

안 제6조 중 “배정하여야 한다”를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에서 장애인관람석 지정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적의 관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 (생략)</b>                      1.~3. (생략)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p>	<p><b>제2조(정의) (생략)</b>                      1.~3. (생략)                      4. -----                      ----- 입장한 사람을 -----.</p>
<p><b>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b>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u>배정하여야 한다.</u></p>	<p><b>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b> -----                      -----                      -----                      ----- <u>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8조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8조(계약자의 의무)</b>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이 관리·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8조(계약자의 의무)</b> ----- ----- ----- -----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는 삭제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적당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안 제7조제1항의 “1인”을 “1명”으로 하고, 안 제8조의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안 제10조의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기능)</b>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li> <li>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li> <li>3.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실시</li> <li>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li> </ol>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기능)</b>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li> <li>2. 그 밖에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p> <p>③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장애인문제에 관한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3. <u>경상북도 소속 공무원</u></p> <p>4. <u>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u>&lt;신설&gt;</u></p> <p><b>제7조(간사 및 서기)</b>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u>1인</u>을 둔다. ②~③(생략)</p> <p><b>제8조(회의록)</b>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4.(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3. <u>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u></p> <p>4. <u>&lt;삭제&gt;</u></p> <p><b>제4조의2(위촉해제)</b> 도지사는 위촉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u></p> <p>2. <u>장기간의 심신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3. <u>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적당하지 않는 경우</u></p> <p>4. <u>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u></p> <p><b>제7조(간사 및 서기)</b> ① ----- ----- --- <u>1명</u>-----. ②~③(현행과 같음)</p> <p><b>제8조(회의록)</b> ----- ----- --- <u>각 호</u>-----. 1.~4.(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b>제10조(수당 등 지급)</b>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u>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b>제11조(위원의 제척)</b> 위원회의 위원은 <u>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u></p> <p><b>제12조(시행규칙)</b>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10조(수당 등 지급)</b> ----- ----- ----- --- <u>예산의 범위에서</u>----- ----- -----.</p> <p><b>제11조(위원의 제척)</b>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b>제12조(운영규정)</b>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1호 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th>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청인</td> <td style="width: 15%;">① 법인·단체명</td> <td colspan="2"></td> </tr> <tr> <td>② 소재지</td> <td colspan="2">(전화: )</td> </tr> <tr> <td>③ 대표자 성명</td> <td style="width: 15%;">(한글) (한자)</td> <td style="width: 15%;">④ 주민등록 번호</td> <td></td> </tr> <tr> <td>⑤ 대표자 주소</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청내용</td> <td>⑥ 신청구분</td>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단체                 </td> </tr> <tr> <td>⑦ 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td> <td colspan="2"></td> </tr> <tr> <td>⑧ 소재지 (예술단 등)</td> <td colspan="2">(전화: )</td> </tr> <tr> <td>⑨ 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td> <td></td> <td>⑩ 주민등록 번호</td> <td></td> </tr> </table> <p>(※ 하단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2호 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정번호 : 제 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전문예술법인 지정서</b></td> </tr> <tr> <td>                     1. 법인(단체)의 명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li> <li>○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li> </ul> </td> </tr> <tr> <td>                     2. 운영 예술단·공연장·전시행사단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 칭 :</li> <li>○ 소재지 :</li> <li>○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li> </ul> </td> </tr> <tr> <td>                     3. 법인의 주요 목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td> </tr> <tr> <td>                     위 ( <input type="checkbox"/> 예술단, <input type="checkbox"/> 공연장, <input type="checkbox"/> 전시행사단)을 운영하는 위 법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합니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시·도지사                 </td> </tr> </table>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단체명			② 소재지	(전화: )		③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④ 주민등록 번호		⑤ 대표자 주소			신청내용	⑥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단체		⑦ 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			⑧ 소재지 (예술단 등)	(전화: )		⑨ 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		⑩ 주민등록 번호		지정번호 : 제 호	<b>전문예술법인 지정서</b>	1. 법인(단체)의 명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li> <li>○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li> </ul>	2. 운영 예술단·공연장·전시행사단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 칭 :</li> <li>○ 소재지 :</li> <li>○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li> </ul>	3. 법인의 주요 목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위 ( <input type="checkbox"/> 예술단, <input type="checkbox"/> 공연장, <input type="checkbox"/> 전시행사단)을 운영하는 위 법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1호 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th>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청인</td> <td style="width: 15%;">① 법인·단체명</td> <td colspan="2"></td> </tr> <tr> <td>② 소재지</td> <td colspan="2">(전화: )</td> </tr> <tr> <td>③ 대표자 성명</td> <td style="width: 15%;">(한글) (한자)</td> <td style="width: 15%;">④ 생년월일</td> <td></td> </tr> <tr> <td>⑤ 대표자 주소</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청내용</td> <td>⑥ 신청구분</td>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단체                 </td> </tr> <tr> <td>⑦ 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td> <td colspan="2"></td> </tr> <tr> <td>⑧ 소재지 (예술단 등)</td> <td colspan="2">(전화: )</td> </tr> <tr> <td>⑨ 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td> <td></td> <td>⑩ 생년월일</td> <td></td> </tr> </table> <p>(※ 하단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2호 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정번호 : 제 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전문예술법인 지정서</b></td> </tr> <tr> <td>                     1. 법인(단체)의 명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li> <li>○ 대표자 : (생년월일 : )</li> </ul> </td> </tr> <tr> <td>                     2. 운영 예술단·공연장·전시행사단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 칭 :</li> <li>○ 소재지 :</li> <li>○ 대표자 : (생년월일 : )</li> </ul> </td> </tr> <tr> <td>                     3. 법인의 주요 목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td> </tr> <tr> <td>                     위 ( <input type="checkbox"/> 예술단, <input type="checkbox"/> 공연장, <input type="checkbox"/> 전시행사단)을 운영하는 위 법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합니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시·도지사                 </td> </tr> </table>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단체명			② 소재지	(전화: )		③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④ 생년월일		⑤ 대표자 주소			신청내용	⑥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단체		⑦ 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			⑧ 소재지 (예술단 등)	(전화: )		⑨ 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		⑩ 생년월일		지정번호 : 제 호	<b>전문예술법인 지정서</b>	1. 법인(단체)의 명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li> <li>○ 대표자 : (생년월일 : )</li> </ul>	2. 운영 예술단·공연장·전시행사단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 칭 :</li> <li>○ 소재지 :</li> <li>○ 대표자 : (생년월일 : )</li> </ul>	3. 법인의 주요 목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위 ( <input type="checkbox"/> 예술단, <input type="checkbox"/> 공연장, <input type="checkbox"/> 전시행사단)을 운영하는 위 법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단체명																																																																														
	② 소재지	(전화: )																																																																													
	③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④ 주민등록 번호																																																																												
	⑤ 대표자 주소																																																																														
신청내용	⑥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단체																																																																													
	⑦ 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																																																																														
	⑧ 소재지 (예술단 등)	(전화: )																																																																													
	⑨ 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		⑩ 주민등록 번호																																																																												
지정번호 : 제 호																																																																															
<b>전문예술법인 지정서</b>																																																																															
1. 법인(단체)의 명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li> <li>○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li> </ul>																																																																															
2. 운영 예술단·공연장·전시행사단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 칭 :</li> <li>○ 소재지 :</li> <li>○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li> </ul>																																																																															
3. 법인의 주요 목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위 ( <input type="checkbox"/> 예술단, <input type="checkbox"/> 공연장, <input type="checkbox"/> 전시행사단)을 운영하는 위 법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단체명																																																																														
	② 소재지	(전화: )																																																																													
	③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④ 생년월일																																																																												
	⑤ 대표자 주소																																																																														
신청내용	⑥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단체																																																																													
	⑦ 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																																																																														
	⑧ 소재지 (예술단 등)	(전화: )																																																																													
	⑨ 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		⑩ 생년월일																																																																												
지정번호 : 제 호																																																																															
<b>전문예술법인 지정서</b>																																																																															
1. 법인(단체)의 명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li> <li>○ 대표자 : (생년월일 : )</li> </ul>																																																																															
2. 운영 예술단·공연장·전시행사단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 칭 :</li> <li>○ 소재지 :</li> <li>○ 대표자 : (생년월일 : )</li> </ul>																																																																															
3. 법인의 주요 목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위 ( <input type="checkbox"/> 예술단, <input type="checkbox"/> 공연장, <input type="checkbox"/> 전시행사단)을 운영하는 위 법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3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지정번호 : 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전문예술단체 지정서</b></p> <p>1. 단체의 명칭 :            ○ 소재지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p> <p>2. 운영 예술단·공연장·전시행사단 내역            ○ 명 칭 :            ○ 소재지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p> <p>3. 주요 목적사업            ○            ○            ○</p> <p>위 ( <input type="checkbox"/> 예술단, <input type="checkbox"/> 공연장, <input type="checkbox"/> 전시행사단 )을 운영하는 위 법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시·도지사</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4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부</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5"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align: center;">신청인</td> <td>① 법인·단체명</td> <td colspan="3"></td> </tr> <tr> <td>② 소재지</td> <td colspan="3">(전화: )</td> </tr> <tr> <td>③ 대표자 성명</td> <td>(한글) (한자)</td> <td>④ 주민등록 번호</td> <td></td> </tr> <tr> <td>⑤ 대표자 주소</td> <td colspan="3"></td> </tr> <tr> <td>⑥ 신청구분</td> <td><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법인</td> <td colspan="2"><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단체</td> </tr> <tr> <td rowspan="3"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align: center;">신청내용</td> <td>⑦ 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td> <td colspan="3"></td> </tr> <tr> <td>⑧ 소재지 (예술단 등)</td> <td colspan="3">(전화: )</td> </tr> <tr> <td>⑨ 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td> <td></td> <td>⑩ 주민등록 번호</td> <td></td> </tr> </table> <p>(※ 하단생략)</p> </div>	신청인	① 법인·단체명				② 소재지	(전화: )			③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④ 주민등록 번호		⑤ 대표자 주소				⑥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단체		신청내용	⑦ 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				⑧ 소재지 (예술단 등)	(전화: )			⑨ 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		⑩ 주민등록 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3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지정번호 : 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전문예술단체 지정서</b></p> <p>1. 단체의 명칭 :            ○ 소재지 :            ○ 대표자 : (생년월일 : )</p> <p>2. 운영 예술단·공연장·전시행사단 내역            ○ 명 칭 :            ○ 소재지 :            ○ 대표자 : (생년월일 : )</p> <p>3. 주요 목적사업            ○            ○            ○</p> <p>위 ( <input type="checkbox"/> 예술단, <input type="checkbox"/> 공연장, <input type="checkbox"/> 전시행사단 )을 운영하는 위 법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시·도지사</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4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부</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5"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align: center;">신청인</td> <td>① 법인·단체명</td> <td colspan="3"></td> </tr> <tr> <td>② 소재지</td> <td colspan="3">(전화: )</td> </tr> <tr> <td>③ 대표자 성명</td> <td>(한글) (한자)</td> <td>④ 생년월일</td> <td></td> </tr> <tr> <td>⑤ 대표자 주소</td> <td colspan="3"></td> </tr> <tr> <td>⑥ 신청구분</td> <td><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법인</td> <td colspan="2"><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단체</td> </tr> <tr> <td rowspan="3"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align: center;">신청내용</td> <td>⑦ 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td> <td colspan="3"></td> </tr> <tr> <td>⑧ 소재지 (예술단 등)</td> <td colspan="3">(전화: )</td> </tr> <tr> <td>⑨ 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td> <td></td> <td>⑩ 생년월일</td> <td></td> </tr> </table> <p>(※ 하단생략)</p> </div>	신청인	① 법인·단체명				② 소재지	(전화: )			③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④ 생년월일		⑤ 대표자 주소				⑥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단체		신청내용	⑦ 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				⑧ 소재지 (예술단 등)	(전화: )			⑨ 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		⑩ 생년월일	
신청인		① 법인·단체명																																																																			
		② 소재지	(전화: )																																																																		
		③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④ 주민등록 번호																																																																	
		⑤ 대표자 주소																																																																			
	⑥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단체																																																																		
신청내용	⑦ 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																																																																				
	⑧ 소재지 (예술단 등)	(전화: )																																																																			
	⑨ 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		⑩ 주민등록 번호																																																																		
신청인	① 법인·단체명																																																																				
	② 소재지	(전화: )																																																																			
	③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④ 생년월일																																																																		
	⑤ 대표자 주소																																																																				
	⑥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단체																																																																		
신청내용	⑦ 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																																																																				
	⑧ 소재지 (예술단 등)	(전화: )																																																																			
	⑨ 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		⑩ 생년월일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2개월”을 “1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년도 2월말까지”를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b>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u>2개월 전까지</u>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u>다음연도 2월 말까지</u>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b> ----- ----- ----- <u>1월</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u> <u>이내</u>-----.</p>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문화기반시설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이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 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 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지역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추진
2.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 6.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7.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 8. 시·군 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 9.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제조시설·축산 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악취실태조사)**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악취방지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3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각 시·군별로 악취방지사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방지사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 2 장 사업장 악취방지

**제5조(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한다.

**제6조(악취 자율관리협약)**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사업장이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사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며, 해당지역 주민은 시군 관계관과 함께 협약사업장의

시설개선 상황을 현장 방문하여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한다.

**제7조(사업장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장·군수와 제6조의 악취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악취 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 사업비는 별표 2에서 정한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8조(기술진단과 기술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도와 시군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2. 분뇨처리시설
3. 폐수종말처리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시설
5. 그 밖에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영시설

② 도지사는 오염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전담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과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술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관리요령, 환경오염 사고 시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신기술 등 환경기술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주요 산업단지가 소재한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시군·기업·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악취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②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는 악취현안을 확인하여 피해지역 악취 발생원에 대한 합동조사 및 법 제18조의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기업·주민 간에 합의된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 제 3 장 가축분뇨 악취방지

**제10조(가축분뇨 악취배출허용기준)** 축산시설 사업장의 악취 배출 허용기준은 별표 1의 기타지역을 적용한다.

**제11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 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를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제10조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저감 효율 증대에 필요한 악취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이행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사업비는 별표 2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비용 보조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가축분뇨 악취저감제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를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도지사는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축사 청결유지 지원)** ①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오염 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상시적으로 악취민원이 제기되는 가축분뇨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

#### 제 4 장 보 칙

**제17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장 및 가축분뇨 악취방지 사업시행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환경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5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악취 배출허용기준**(제5조, 제10조 관련)

1. 복합악취

구 분	배출허용기준(회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 출 구	1,000 이하	500 이하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2. 지정악취물질

구 분	배출허용기준(ppm)	
	공업지역	기타 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구 분	배출허용기준(ppm)	
	공업지역	기타 지역
자일렌	2 이하	1 이하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메틸아이소부틸케톤	3 이하	1 이하
부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n-부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i-부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 비 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회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회 희석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 가목에 따른 전용공업 지역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 나목에 따른 일반공업 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별표 2]

##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관련)

### 1. 보조금

구 분	보 조 금	비 고
가. 악취방지시설 신설비용	8천만원 이하	
나.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4천만원 이하	

#### ※ 비 고

1. 악취방지시설 신설비용은 신규설치 및 증설을 포함한다.
2.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3. 보조금은 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를 말한다.

### 2. 기준보조율 : 지방비 50%, 사업자 부담 50%

지방비 보조율은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경상북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행정구역내 도시림·생활림·  
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제4조(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림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 등의 기능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 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 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② 시·군간 업무 또는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산림업무 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이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회의 소집은 당연직 위원인 경상북도 산림업무 국장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위원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 결정을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 및 소방본부”를 “일자리경제산업실·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2. 창조경제기본계획 수립, 첨단산업, 산학협력 및 과학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육성 및 차세대 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4. ICT,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산업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창업·경영·기술지원 및 노·사·정 협조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물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7. 교통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삭제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5장 앞에 “제4장 지역본부”를 삽입한다.

제4장에 제1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1 절 환동해지역본부

제38조의2(설치) ① 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동해안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동해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에 둔다.

제38조의3(본부장)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동해안권 지역 언론 홍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2. 동해안발전정책, 에너지산업, 원자력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 항만물류, 독도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
5. 어업기술업무에 관한 사항

제5장(현행 제4장)에 제4절(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현행 제4장)에 제5절부터 제10절까지를 각각 제4절부터 제9절  
까지로 한다.

제54조부터 제74조까지를 각각 제50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제5장(현행 제4장)에 제11절(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실·국·본부의 설치)</b> 도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u>창조경제산업실</u>·일자리민생본부·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지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p>	<p><b>제5조(실·국·본부의 설치)</b> ----- ----- ----- <u>일자리경제산업실</u>·<u>자치행정국</u>·<u>문화관광체육국</u>·<u>농축산유통국</u>·<u>환경산림지원국</u>·<u>복지건강국</u>·<u>건설도시국</u> 및 <u>소방본부</u>를 둔다.</p>
<p><b>제7조(창조경제산업실)</b>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창조경제기본계획 수립, 첨단산업, 산학협력 및 과학진흥에 관한 사항</u></li> <li>2. <u>지역산업육성 및 차세대 성장 산업에 관한 사항</u></li> <li>3. <u>ICT,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 산업에 관한 사항</u></li> <li>4. <u>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u></li> <li>5. <u>원자력산업에 관한 사항</u></li> <li>6. <u>그 밖에 창조경제에 관한 사항</u></li> </ol>	<p>〈삭 제〉</p>
<p><b>제8조(일자리민생본부)</b>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u></li> <li>2. <u>소상공인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물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u></li> <li>3. <u>교통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u></li> <li>4. <u>중소기업 창업·경영·기술지원 및 노·사·정 협조에 관한 사항</u></li> <li>5. <u>국제교류·협력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u></li> </ol>	<p><b>제8조(일자리경제산업실)</b>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u></li> <li>2. <u>창조경제기본계획 수립, 첨단산업, 산학협력 및 과학진흥에 관한 사항</u></li> <li>3. <u>지역산업육성 및 차세대 성장 산업에 관한 사항</u></li> <li>4. <u>ICT,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 산업에 관한 사항</u></li> <li>5. <u>중소기업 창업·경영·기술지원 및 노·사·정 협조에 관한 사항</u></li> </ol>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395 546 783 613">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 data-bbox="368 846 783 913"><b>제15조(동해안발전본부)</b>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 data-bbox="395 916 783 983">1. 동해안발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p> <p data-bbox="395 985 783 1052">2. 해양개발 및 보존, 항만물류에 관한 사항</p> <p data-bbox="395 1055 783 1122">3. 독도정책·연구·홍보, 독도영유권 확립에 관한 사항</p> <p data-bbox="395 1124 783 1158">4. 해양수산진흥에 관한 사항</p> <p data-bbox="395 1160 783 1261">5. 그 밖에 동해안발전정책, 해양·수산진흥, 항만물류 및 독도정책에 관한 사항</p> <p data-bbox="539 1283 624 1317">〈신 설〉</p> <p data-bbox="539 1330 624 1364">〈신 설〉</p>	<p data-bbox="836 546 1224 647">6.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물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p> <p data-bbox="836 649 1224 683">7. 교통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p> <p data-bbox="836 685 1224 752">8.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p> <p data-bbox="836 754 1224 822">9.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의 종합 기획에 관한 사항</p> <p data-bbox="820 846 904 880">〈삭 제〉</p> <p data-bbox="911 1283 1118 1317"><b>제 4 장 지역본부</b></p> <p data-bbox="874 1330 1155 1364"><b>제 1 절 환동해지역본부</b></p> <p data-bbox="810 1388 1224 1664"><b>제38조의2(설치)</b> ① 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동해안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동해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p> <p data-bbox="836 1666 1224 1733">②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에 둔다.</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사 업 소</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절 수산자원연구소</b></p> <p><b>제50조(설치)</b> ① 도의 바다와 내수면의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경상북도수산자원연구소(이하 "수산자원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산자원연구소는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178에 둔다.</p> <p><b>제51조(소장)</b> 수산자원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b>제52조(소관사무)</b>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어·패류 등 기술개발이 된 품종의 종묘 생산</p>	<p><b>제38조의3(본부장)</b>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b>제38조의4(소관사무)</b>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동해안권 지역 언론 홍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2. 동해안발전정책, 에너지산업, 원자력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 항만물류, 독도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 5. 어업기술 업무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장 사 업 소</b></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2. 지역 특산품종의 종묘 생산기술 연구·개발</p> <p>3. 우량품종의 종보존 및 수정란 생산 보급</p> <p>4. 먹이생물 원종보존·배양 및 보급</p> <p>5. 유용 수산자원 유전자보존</p> <p>6. 해양바이오산업 지원</p> <p>7. 생산종묘의 유·무상방류 및 사후 관리</p> <p>8. 양식어가 기술교육 및 새로운 양식품종 보급</p> <p>9. 연어의 인공부화 및 사육·방류</p> <p>10. 담수어의 양식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험</p> <p>11. 내수면 토속어종 보존</p> <p>12. 기타 수산자원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p> <p><b>제53조(하부조직)</b>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 또는 센터를 둘 수 있으며, 과 또는 센터의 명칭·위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절 산림환경연구원</b></p> <p><b>제54조(설치)</b> (생 략)</p> <p><b>제55조(원장)</b> (생 략)</p> <p><b>제56조(소관사무)</b> (생 략)</p> <p><b>제57조(하부조직)</b>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절 산림환경연구원</b></p> <p><b>제50조(설치)</b> (현행 제54조와 같음)</p> <p><b>제51조(원장)</b> (현행 제55조와 같음)</p> <p><b>제52조(소관사무)</b> (현행 제56조와 같음)</p> <p><b>제53조(하부조직)</b> (현행 제57조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b>제 6 절 건설사업소</b>	<b>제 5 절 건설사업소</b>
<u>제58조(설치)</u> (생략) <u>제59조(소장)</u> (생략) <u>제60조(소관사무)</u> (생략) <u>제61조</u> 삭제 (생략)	<u>제54조(설치)</u> (현행 제58조와 같음) <u>제55조(소장)</u> (현행 제59조와 같음) <u>제56조(소관사무)</u> (현행 제60조와 같음) <u>제57조</u> 삭제 (현행 제61조와 같음)
<b>제 7 절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b>	<b>제 6 절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b>
<u>제62조(설치)</u> (생략) <u>제63조(소장)</u> (생략) <u>제64조(소관사무)</u> (생략)	<u>제58조(설치)</u> (현행 제62조와 같음) <u>제59조(소장)</u> (현행 제63조와 같음) <u>제60조(소관사무)</u> (현행 제64조와 같음)
<b>제 8 절 서울지사</b>	<b>제 7 절 서울지사</b>
<u>제65조(설치)</u> (생략) <u>제66조(지사장)</u> (생략) <u>제67조(소관사무)</u> (생략)	<u>제61조(설치)</u> (현행 제65조와 같음) <u>제62조(지사장)</u> (현행 제66조와 같음) <u>제63조(소관사무)</u> (현행 제67조와 같음)
<b>제 9 절 산림자원개발원</b>	<b>제 8 절 산림자원개발원</b>
<u>제68조(설치)</u> (생략) <u>제69조(원장)</u> (생략) <u>제70조(소관사무)</u> (생략) <u>제71조(하부조직)</u> (생략)	<u>제64조(설치)</u> (현행 제68조와 같음) <u>제65조(원장)</u> (현행 제69조와 같음) <u>제66조(소관사무)</u> (현행 제70조와 같음) <u>제67조(하부조직)</u> (현행 제71조와 같음)
<b>제10절 노인전문간호센터</b>	<b>제 9 절 노인전문간호센터</b>
<u>제72조(설치)</u> (생략) <u>제73조(소장)</u> (생략) <u>제74조(소관사무)</u> (생략)	<u>제68조(설치)</u> (현행 제72조와 같음) <u>제69조(소장)</u> (현행 제73조와 같음) <u>제70조(소관사무)</u> (현행 제74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11절 어업기술센터</b></p> <p><b>제75조(설치)</b> ①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어업 기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이하 “어업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어업기술센터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에 둔다.</p> <p><b>제76조(소장)</b> 어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b>제77조(소관사무)</b>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소득개발 및 보급지도</li> <li>2. 어장예찰 및 수산재해예방지도</li> <li>3. 수산자원회복 및 육성지도</li> <li>4. 어업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의 사업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b>제78조(하부조직)</b> 어업기술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 또는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과 또는 지소의 명칭·위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7년 12월 12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

### 1. 수정이유

- 당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시행일이 2018년 1월 22일로 되어 있었으나,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공백을 줄이기 위해 부칙 시행일을 변경하고자 수정 제안함.

### 2. 주요내용

- 부칙 시행일 변경
  - 당 초 : 이 조례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변 경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수정안 : 붙임

###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 및 소방본부”를 “일자리경제산업실·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2. 창조경제기본계획 수립, 첨단산업, 산학협력 및 과학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육성 및 차세대 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4. ICT,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산업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창업·경영·기술지원 및 노·사·정 협조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물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7. 교통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8.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삭제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5장 앞에 “제4장 지역본부”를 삽입한다.

제4장에 제1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1 절 환동해지역본부

제38조의2(설치) ① 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동해안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동해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에 둔다.

제38조의3(본부장)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동해안권 지역 언론 홍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2. 동해안발전정책, 에너지산업, 원자력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 3. 해양수산, 항만물류, 독도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 4. 수산자원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
- 5. 어업기술업무에 관한 사항

제5장(현행 제4장)에 제4절(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현행 제4장)에 제5절부터 제10절까지를 각각 제4절부터 제9절까지로 한다.

제54조부터 제74조까지를 각각 제50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제5장(현행 제4장)에 제11절(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b>제5조(실·국·본부의 설치)</b>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u>창조경제산업실</u>·일자리민생본부·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p> <p><b>제7조(창조경제산업실)</b>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창조경제기본계획 수립, 첨단산업, 산학협력 및 과학진흥에 관한 사항</li> <li>2. 지역산업육성 및 차세대 성장산업에 관한 사항</li> <li>3. ICT,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산업에 관한 사항</li> <li>4.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li> <li>5. 원자력산업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창조경제에 관한 사항</li> </ol> <p><b>제8조(일자리민생본부)</b>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li> </ol>	<p><b>제5조(실·국·본부의 설치)</b> — ----- ----- <u>일자리경제산업실</u>·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p> <p>〈삭 제〉</p> <p><b>제8조(일자리경제산업실)</b>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li> </ol>	<p>〈좌 동〉</p>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2. <u>소상공인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물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u></p> <p>3. <u>교통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u></p> <p>4. <u>중소기업 창업·경영·기술 지원 및 노·사·정 협조에 관한 사항</u></p> <p>5. <u>국제교류·협력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u></p> <p>6. <u>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u></p>	<p>2. <u>창조경제기본계획 수립, 첨단 산업, 산학협력 및 과학진흥에 관한 사항</u></p> <p>3. <u>지역산업육성 및 차세대 성장 산업에 관한 사항</u></p> <p>4. <u>ICT,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산업에 관한 사항</u></p> <p>5. <u>중소기업 창업·경영·기술 지원 및 노·사·정 협조에 관한 사항</u></p> <p>6. <u>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물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u></p> <p>7. <u>교통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u></p> <p>8. <u>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u></p> <p>9. <u>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u></p>	<p>〈좌 동〉</p>
<p><b>제15조(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 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p> <p>1. <u>동해안발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p> <p>2. <u>해양개발 및 보존, 항만물류에 관한 사항</u></p> <p>3. <u>독도정책·연구·홍보, 독도 영유권 확립에 관한 사항</u></p> <p>4. <u>해양수산진흥에 관한 사항</u></p> <p>5. <u>그 밖에 동해안발전정책, 해양·수산진흥, 항만물류 및 독도정책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지역본부</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환동해지역본부</p> <p><b>제38조의2(설치)</b> ① 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동해안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동해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p> <p>②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에 둔다.</p> <p><b>제38조의3(본부장)</b>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 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b>제38조의4(소관사무)</b>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해안권 지역 언론 홍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li> <li>2. 동해안발전정책, 에너지산업, 원자력정책업무에 관한 사항</li> <li>3. 해양수산, 항만물류, 독도 정책업무에 관한 사항</li> <li>4. 수산자원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li> <li>5. 어업기술 업무에 관한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좌 등〉</p>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사 업 소</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절 수산자원연구소</b></p> <p><b>제50조(설치)</b> ① 도의 바다와 내수면의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경상북도수산자원연구소(이하 “수산자원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수산자원연구소는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178에 둔다.</p> <p><b>제51조(소장)</b> 수산자원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b>제52조(소관사무)</b>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패류 등 기술개발이 된 품종의 종묘 생산</li> <li>2. 지역 특산품종의 종묘 생산 기술 연구·개발</li> <li>3. 우량품종의 종보존 및 수정란 생산보급</li> <li>4. 먹이생물 원종보존·배양 및 보급</li> <li>5. 유용 수산자원 유전자보존</li> <li>6. 해양바이오산업 지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지역본부</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장 사 업 소</b></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등〉</p>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7. 생산종묘의 유·무상방류 및 사후관리</p> <p>8. 양식어가 기술교육 및 새로운 양식품종 보급</p> <p>9. 연어의 인공부화 및 사육·방류</p> <p>10. 담수어의 양식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험</p> <p>11. 내수면 토속어종 보존</p> <p>12. 기타 수산자원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p> <p><b>제53조(하부조직)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 또는 센터를 둘 수 있으며, 과 또는 센터의 명칭·위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b></p> <p><b>제 5 절 산림환경연구원</b></p> <p><b>제54조(설치) (생 략)</b></p> <p><b>제55조(원장) (생 략)</b></p> <p><b>제56조(소관사무) (생 략)</b></p> <p><b>제57조(하부조직) (생 략)</b></p> <p><b>제 6 절 건설사업소</b></p> <p><b>제58조(설치) (생 략)</b></p> <p><b>제59조(소장) (생 략)</b></p>	<p><b>제 4 절 산림환경연구원</b></p> <p><b>제50조(설치) (현행 제54조와 같음)</b></p> <p><b>제51조(원장) (현행 제55조와 같음)</b></p> <p><b>제52조(소관사무) (현행 제56조와 같음)</b></p> <p><b>제53조(하부조직) (현행 제57조와 같음)</b></p> <p><b>제 5 절 건설사업소</b></p> <p><b>제54조(설치) (현행 제58조와 같음)</b></p> <p><b>제55조(소장) (현행 제59조와 같음)</b></p>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u>제60조(소관사무)</u> (생략)</p> <p><u>제61조</u> 삭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7 절</b> <b><u>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u></b></p> <p><u>제62조(설치)</u> (생략)</p> <p><u>제63조(소장)</u> (생략)</p> <p><u>제64조(소관사무)</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8 절 서울지사</b></p> <p><u>제65조(설치)</u> (생략)</p> <p><u>제66조(지사장)</u> (생략)</p> <p><u>제67조(소관사무)</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9 절 산림자원개발원</b></p> <p><u>제68조(설치)</u> (생략)</p> <p><u>제69조(원장)</u> (생략)</p> <p><u>제70조(소관사무)</u> (생략)</p> <p><u>제71조(하부조직)</u> (생략)</p>	<p><u>제56조(소관사무)</u> (현행 제60조와 같음)</p> <p><u>제57조</u> 삭제 (현행 제61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6 절</b> <b><u>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u></b></p> <p><u>제58조(설치)</u> (현행 제62조와 같음)</p> <p><u>제59조(소장)</u> (현행 제63조와 같음)</p> <p><u>제60조(소관사무)</u> (현행 제64 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7 절 서울지사</b></p> <p><u>제61조(설치)</u> (현행 제65조와 같음)</p> <p><u>제62조(지사장)</u> (현행 제66조와 같음)</p> <p><u>제63조(소관사무)</u> (현행 제67 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8 절 산림자원개발원</b></p> <p><u>제64조(설치)</u> (현행 제68조와 같음)</p> <p><u>제65조(원장)</u> (현행 제69조와 같음)</p> <p><u>제66조(소관사무)</u> (현행 제70 조와 같음)</p> <p><u>제67조(하부조직)</u> (현행 제71 조와 같음)</p>	〈좌 동〉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u>제10절 노인전문간호센터</u></p> <p><u>제72조(설치)</u> (생략)  <u>제73조(소장)</u> (생략)  <u>제74조(소관사무)</u> (생략)</p> <p><u>제11절 어업기술센터</u></p> <p><u>제75조(설치)</u> ①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어업기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이하 "어업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어업기술센터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에 둔다.</p> <p><u>제76조(소장)</u> 어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u>제77조(소관사무)</u>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소득개발 및 보급지도  2. 어장예찰 및 수산재해예방지도  3. 수산자원회복 및 육성지도  4. 어업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p>	<p><u>제 9 절 노인전문간호센터</u></p> <p><u>제68조(설치)</u> (현행 제72조와 같음)  <u>제69조(소장)</u> (현행 제73조와 같음)  <u>제70조(소관사무)</u> (현행 제74조와 같음)</p> <p>〈삭제〉</p>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 data-bbox="395 551 730 613">5. 그 밖의 사업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 data-bbox="368 663 730 869"><u>제78조(하부조직) 어업기술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 또는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과 또는 지소의 명칭·위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 data-bbox="368 913 730 1016">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data-bbox="756 913 1118 1187">부 칙 <b>제1조(시행일)</b> 이 조례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b>제2조(경과조치)</b>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 data-bbox="1139 913 1225 1151">부 칙 <b>제1조(시행일)</b>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data-bbox="1139 1191 1225 1223">〈좌 동〉</p>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7년 12월 20일

발 의 자 : 한창화 의원

찬 성 자 : 홍진규 의원 외 18명

### 1. 수정이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일부조문을 수정코자 함.

### 2. 수정안 주요내용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조의2(설치) 제2항에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에 둔다”를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에 한시적으로 둔다”로 수정

### 3. 수정안 : 붙임

###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 및 소방본부”를 “일자리경제산업실·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2. 창조경제기본계획 수립, 첨단산업, 산학협력 및 과학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육성 및 차세대 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4. ICT,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산업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창업·경영·기술지원 및 노·사·정 협조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물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7. 교통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8.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삭제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5장 앞에 “제4장 지역본부”를 삽입한다.

제4장에 제1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1 절 환동해지역본부

제38조의2(설치) ① 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동해안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동해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에 한시적으로 둔다.

제38조의3(본부장)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동해안권 지역 언론 홍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2. 동해안발전정책, 에너지산업, 원자력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 3. 해양수산, 항만물류, 독도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 4. 수산자원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
- 5. 어업기술업무에 관한 사항

제5장(현행 제4장)에 제4절(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현행 제4장)에 제5절부터 제10절까지를 각각 제4절부터 제9  
절까지로 한다.

제54조부터 제74조까지를 각각 제50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제5장(현행 제4장)에 제11절(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b>제5조(실·국·본부의 설치)</b>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p>	<p><b>제5조(실·국·본부의 설치)</b> — ----- ----- 일자리경제산업실·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p>	<p>〈좌 동〉</p>
<p><b>제7조(창조경제산업실)</b>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창조경제기본계획 수립, 첨단산업, 산학협력 및 과학진흥에 관한 사항</li> <li>2. 지역산업육성 및 차세대 성장산업에 관한 사항</li> <li>3. ICT,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산업에 관한 사항</li> <li>4.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li> <li>5. 원자력산업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창조경제에 관한 사항</li> </ol>	<p>〈삭 제〉</p>	
<p><b>제8조(일자리민생본부)</b>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li> </ol>	<p><b>제8조(일자리경제산업실)</b>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li> </ol>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2. <u>소상공인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물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u></p> <p>3. <u>교통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u></p> <p>4. <u>중소기업 창업·경영·기술 지원 및 노·사·정 협조에 관한 사항</u></p> <p>5. <u>국제교류·협력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u></p> <p>6. <u>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u></p>	<p>2. <u>창조경제기본계획 수립, 첨단산업, 산학협력 및 과학진흥에 관한 사항</u></p> <p>3. <u>지역산업육성 및 차세대 성장산업에 관한 사항</u></p> <p>4. <u>ICT,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산업에 관한 사항</u></p> <p>5. <u>중소기업 창업·경영·기술 지원 및 노·사·정 협조에 관한 사항</u></p> <p>6. <u>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물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u></p> <p>7. <u>교통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u></p> <p>8. <u>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u></p> <p>9. <u>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u></p>	<p>〈좌 동〉</p>
<p><b>제15조(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p> <p>1. <u>동해안발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p> <p>2. <u>해양개발 및 보존, 항만물류에 관한 사항</u></p> <p>3. <u>독도정책·연구·홍보, 독도 영유권 확립에 관한 사항</u></p> <p>4. <u>해양수산진흥에 관한 사항</u></p> <p>5. <u>그 밖에 동해안발전정책, 해양·수산진흥, 항만물류 및 독도정책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신 설〉</p>	<p><b>제 4 장 지역본부</b></p> <p><b>제 1 절 환동해지역본부</b></p> <p><b>제38조의2(설치)</b> ① 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동해안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동해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p> <p>②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에 둔다.</p> <p><b>제38조의3(본부장)</b>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 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b>제38조의4(소관사무)</b>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해안권 지역 언론 홍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li> <li>2. 동해안발전정책, 에너지산업, 원자력정책업무에 관한 사항</li> <li>3. 해양수산, 항만물류, 독도 정책업무에 관한 사항</li> <li>4. 수산자원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li> <li>5. 어업기술 업무에 관한 사항</li> </ol>	<p>〈좌 동〉</p> <p>② ----- -----에 한시적으로 둔다. 〈좌 동〉</p>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사 업 소</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절 수산자원연구소</b></p> <p><b>제50조(설치)</b> ① 도의 바다와 내수면의 특성에 맞는 수산 자원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경상북도수산자원연구소(이하 “수산자원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수산자원연구소는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178에 둔다.</p> <p><b>제51조(소장)</b> 수산자원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p> <p><b>제52조(소관사무)</b>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패류 등 기술개발이 된 품종의 종묘 생산</li> <li>2. 지역 특산품종의 종묘 생산 기술 연구·개발</li> <li>3. 우량품종의 종보존 및 수정란 생산보급</li> <li>4. 먹이생물 원종보존·배양 및 보급</li> <li>5. 유용 수산자원 유전자보존</li> <li>6. 해양바이오산업 지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지역본부</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장 사 업 소</b></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7. 생산종묘의 유·무상방류 및 사후관리</p> <p>8. 양식어가 기술교육 및 새로운 양식품종 보급</p> <p>9. 연어의 인공부화 및 사육·방류</p> <p>10. 담수어의 양식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험</p> <p>11. 내수면 토속어종 보존</p> <p>12. 기타 수산자원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p> <p><b>제53조(하부조직)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 또는 센터를 둘 수 있으며, 과 또는 센터의 명칭·위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b></p> <p><b>제 5 절 산림환경연구원</b></p> <p><b>제54조(설치) (생 략)</b>  <b>제55조(원장) (생 략)</b>  <b>제56조(소관사무) (생 략)</b>  <b>제57조(하부조직) (생 략)</b></p> <p><b>제 6 절 건설사업소</b></p> <p><b>제58조(설치) (생 략)</b>  <b>제59조(소장) (생 략)</b></p>	<p><b>제 4 절 산림환경연구원</b></p> <p><b>제50조(설치) (현행 제54조와 같음)</b>  <b>제51조(원장) (현행 제55조와 같음)</b>  <b>제52조(소관사무) (현행 제56조와 같음)</b>  <b>제53조(하부조직) (현행 제57조와 같음)</b></p> <p><b>제 5 절 건설사업소</b></p> <p><b>제54조(설치) (현행 제58조와 같음)</b>  <b>제55조(소장) (현행 제59조와 같음)</b></p>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u>제60조(소관사무)</u> (생략)</p> <p><u>제61조</u> 삭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7 절</b> <b>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b></p> <p><u>제62조(설치)</u> (생략) <u>제63조(소장)</u> (생략) <u>제64조(소관사무)</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8 절 서울지사</b></p> <p><u>제65조(설치)</u> (생략) <u>제66조(지사장)</u> (생략) <u>제67조(소관사무)</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9 절 산림자원개발원</b></p> <p><u>제68조(설치)</u> (생략) <u>제69조(원장)</u> (생략) <u>제70조(소관사무)</u> (생략) <u>제71조(하부조직)</u> (생략)</p>	<p><u>제56조(소관사무)</u> (현행 제60조와 같음) <u>제57조</u> 삭제 (현행 제61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6 절</b> <b>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b></p> <p><u>제58조(설치)</u> (현행 제62조와 같음) <u>제59조(소장)</u> (현행 제63조와 같음) <u>제60조(소관사무)</u> (현행 제64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7 절 서울지사</b></p> <p><u>제61조(설치)</u> (현행 제65조와 같음) <u>제62조(지사장)</u> (현행 제66조와 같음) <u>제63조(소관사무)</u> (현행 제67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8 절 산림자원개발원</b></p> <p><u>제64조(설치)</u> (현행 제68조와 같음) <u>제65조(원장)</u> (현행 제69조와 같음) <u>제66조(소관사무)</u> (현행 제70조와 같음) <u>제67조(하부조직)</u> (현행 제71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b>제10절 노인전문간호센터</b></p> <p><b>제72조(설치)</b> (생략)</p> <p><b>제73조(소장)</b> (생략)</p> <p><b>제74조(소관사무)</b> (생략)</p> <p><b>제11절 어업기술센터</b></p> <p><b>제75조(설치)</b> ①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어업 기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이하 "어업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어업기술센터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에 둔다.</p> <p><b>제76조(소장)</b> 어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b>제77조(소관사무)</b>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소득개발 및 보급지도</li> <li>2. 어장예찰 및 수산재해예방지도</li> <li>3. 수산자원회복 및 육성지도</li> <li>4. 어업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li> </ol>	<p><b>제 9 절 노인전문간호센터</b></p> <p><b>제68조(설치)</b> (현행 제72조와 같음)</p> <p><b>제69조(소장)</b> (현행 제73조와 같음)</p> <p><b>제70조(소관사무)</b> (현행 제74조와 같음)</p> <p>〈삭 제〉</p>	

원 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p>5. 그 밖의 사업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b>제78조(하부조직)</b> 어업기술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 또는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과 또는 지소의 명칭·위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조례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경과조치)</b>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847명”을 “5,85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43명”을 “2,05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직 급 별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 청
합 계			5,859						
정 무 직			1						
일 반 직	소 계	1,906							
	1급	1							1
	2급	1					1		
	2~3급	2		1	1				
	3급	11		7		1	2		1
	3~4급	2		2					
	4급	83		54	7	5	9	8	
	5급 이하	1,793							
	전문경력관	13							
	별 정 직	소 계	15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1							
연 구 직	소 계	210							
	연구관	42				41		1	
	연구사	168							
지 도 직	소 계	28							
	지도관	10				10			
	지도사	18							
소 방 직	소 계	3,656							
	소방정	23		5		18			
	소방령 이하	3,633							
교 원	소 계	43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정원의 총수)</b> 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84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2,043명 2. ~ 4. (생략)</p> <p>[별표 3] <b>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b> (제4조 관련) (단위: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rowspan="2">기관별</th> <th colspan="6">합 계</th> </tr> <tr> <th>합 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경제자유구역청</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td> <td>5,84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 무 직</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 계</td> <td></td> <td>1,89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5">일 반 직</td> <td>1급</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2~3급</td> <td>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1</td> <td>9</td> <td></td> <td>1</td> <td></td> <td>1</td> </tr> <tr> <td>3~4급</td> <td>2</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83</td> <td>61</td> <td>7</td> <td>5</td> <td>10</td> <td></td> </tr> <tr> <td>5급 이하</td> <td>1,78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 문 경력관</td> <td>1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 계</td> <td>1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별 정 직</td> <td>1급상당</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상당</td> <td>3</td> <td>1</td> <td>2</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상당 이하</td> <td>1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 구 직</td> <td>소 계</td> <td>2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연구관</td> <td>42</td> <td></td> <td></td> <td>41</td> <td>1</td> </tr> <tr> <td></td> <td>연구사</td> <td>16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 도 직</td> <td>소 계</td> <td>2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지도관</td> <td>10</td> <td></td> <td></td> <td>10</td> <td></td> </tr> <tr> <td></td> <td>지도사</td> <td>1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 방 직</td> <td>소 계</td> <td>3,65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소방정</td> <td>23</td> <td>5</td> <td></td> <td>18</td> <td></td> </tr> <tr> <td></td> <td>소방령 이하</td> <td>3,63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 원</td> <td>소 계</td> <td>4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총 장</td> <td>1</td> <td></td> <td></td> <td>1</td> <td></td> </tr> <tr> <td></td> <td>교 수</td> <td>31</td> <td></td> <td></td> <td>31</td> <td></td> </tr> <tr> <td></td> <td>조 교</td> <td>11</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합 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5,847					-	정 무 직		1					-	소 계		1,894					-	일 반 직	1급	1					1	2~3급	2	1	1				3급	11	9		1		1	3~4급	2	2					4급	83	61	7	5	10		5급 이하	1,782						전 문 경력관	13						소 계	15						별 정 직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1						연 구 직	소 계	210						연구관	42			41	1		연구사	168					지 도 직	소 계	28						지도관	10			10			지도사	18					소 방 직	소 계	3,656						소방정	23	5		18			소방령 이하	3,633					교 원	소 계	43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p><b>제2조(정원의 총수)</b> ----- ----- 5,859명 ----- ----- . -----</p> <p>1. ----- : 2,055명 2. ~ 4. (현행과 같음)</p> <p>[별표 3] <b>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b> (제4조 관련) (단위: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rowspan="2">기관별</th> <th colspan="6">합 계</th> </tr> <tr> <th>합 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 기관</th> <th>지역본부</th> <th>사업소</th> <th>경제자유구역청</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td> <td>5,85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 무 직</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 계</td> <td></td> <td>1,9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5">일 반 직</td> <td>1급</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2급</td> <td>1</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r> <tr> <td>2~3급</td> <td>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1</td> <td>7</td> <td></td> <td>1</td> <td>2</td> <td>1</td> </tr> <tr> <td>3~4급</td> <td>2</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83</td> <td>54</td> <td>7</td> <td>5</td> <td>9</td> <td>8</td> </tr> <tr> <td>5급 이하</td> <td>1,79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 문 경력관</td> <td>1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 계</td> <td>1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별 정 직</td> <td>1급상당</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상당</td> <td>3</td> <td>1</td> <td>2</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상당 이하</td> <td>1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 구 직</td> <td>소 계</td> <td>2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연구관</td> <td>42</td> <td></td> <td></td> <td>41</td> <td>1</td> </tr> <tr> <td></td> <td>연구사</td> <td>16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 도 직</td> <td>소 계</td> <td>2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지도관</td> <td>10</td> <td></td> <td></td> <td>10</td> <td></td> </tr> <tr> <td></td> <td>지도사</td> <td>1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 방 직</td> <td>소 계</td> <td>3,65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소방정</td> <td>23</td> <td>5</td> <td></td> <td>18</td> <td></td> </tr> <tr> <td></td> <td>소방령 이하</td> <td>3,63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 원</td> <td>소 계</td> <td>4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총 장</td> <td>1</td> <td></td> <td></td> <td>1</td> <td></td> </tr> <tr> <td></td> <td>교 수</td> <td>31</td> <td></td> <td></td> <td>31</td> <td></td> </tr> <tr> <td></td> <td>조 교</td> <td>11</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합 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5,859					-	정 무 직		1					-	소 계		1,906					-	일 반 직	1급	1					1	2급	1				1		2~3급	2	1	1				3급	11	7		1	2	1	3~4급	2	2					4급	83	54	7	5	9	8	5급 이하	1,793						전 문 경력관	13						소 계	15						별 정 직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1						연 구 직	소 계	210						연구관	42			41	1		연구사	168					지 도 직	소 계	28						지도관	10			10			지도사	18					소 방 직	소 계	3,656						소방정	23	5		18			소방령 이하	3,633					교 원	소 계	43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직급별			기관별	합 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5,847					-																																																																																																																																																																																																																																																																																																																																																																																																																																		
정 무 직		1					-																																																																																																																																																																																																																																																																																																																																																																																																																																		
소 계		1,894					-																																																																																																																																																																																																																																																																																																																																																																																																																																		
일 반 직	1급	1					1																																																																																																																																																																																																																																																																																																																																																																																																																																		
	2~3급	2	1	1																																																																																																																																																																																																																																																																																																																																																																																																																																					
	3급	11	9		1		1																																																																																																																																																																																																																																																																																																																																																																																																																																		
	3~4급	2	2																																																																																																																																																																																																																																																																																																																																																																																																																																						
	4급	83	61	7	5	10																																																																																																																																																																																																																																																																																																																																																																																																																																			
5급 이하	1,782																																																																																																																																																																																																																																																																																																																																																																																																																																								
전 문 경력관	13																																																																																																																																																																																																																																																																																																																																																																																																																																								
소 계	15																																																																																																																																																																																																																																																																																																																																																																																																																																								
별 정 직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1																																																																																																																																																																																																																																																																																																																																																																																																																																							
연 구 직	소 계	210																																																																																																																																																																																																																																																																																																																																																																																																																																							
	연구관	42			41	1																																																																																																																																																																																																																																																																																																																																																																																																																																			
	연구사	168																																																																																																																																																																																																																																																																																																																																																																																																																																							
지 도 직	소 계	28																																																																																																																																																																																																																																																																																																																																																																																																																																							
	지도관	10			10																																																																																																																																																																																																																																																																																																																																																																																																																																				
	지도사	18																																																																																																																																																																																																																																																																																																																																																																																																																																							
소 방 직	소 계	3,656																																																																																																																																																																																																																																																																																																																																																																																																																																							
	소방정	23	5		18																																																																																																																																																																																																																																																																																																																																																																																																																																				
	소방령 이하	3,633																																																																																																																																																																																																																																																																																																																																																																																																																																							
교 원	소 계	43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직급별	기관별	합 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5,859					-																																																																																																																																																																																																																																																																																																																																																																																																																																		
정 무 직		1					-																																																																																																																																																																																																																																																																																																																																																																																																																																		
소 계		1,906					-																																																																																																																																																																																																																																																																																																																																																																																																																																		
일 반 직	1급	1					1																																																																																																																																																																																																																																																																																																																																																																																																																																		
	2급	1				1																																																																																																																																																																																																																																																																																																																																																																																																																																			
	2~3급	2	1	1																																																																																																																																																																																																																																																																																																																																																																																																																																					
	3급	11	7		1	2	1																																																																																																																																																																																																																																																																																																																																																																																																																																		
	3~4급	2	2																																																																																																																																																																																																																																																																																																																																																																																																																																						
4급	83	54	7	5	9	8																																																																																																																																																																																																																																																																																																																																																																																																																																			
5급 이하	1,793																																																																																																																																																																																																																																																																																																																																																																																																																																								
전 문 경력관	13																																																																																																																																																																																																																																																																																																																																																																																																																																								
소 계	15																																																																																																																																																																																																																																																																																																																																																																																																																																								
별 정 직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1																																																																																																																																																																																																																																																																																																																																																																																																																																							
연 구 직	소 계	210																																																																																																																																																																																																																																																																																																																																																																																																																																							
	연구관	42			41	1																																																																																																																																																																																																																																																																																																																																																																																																																																			
	연구사	168																																																																																																																																																																																																																																																																																																																																																																																																																																							
지 도 직	소 계	28																																																																																																																																																																																																																																																																																																																																																																																																																																							
	지도관	10			10																																																																																																																																																																																																																																																																																																																																																																																																																																				
	지도사	18																																																																																																																																																																																																																																																																																																																																																																																																																																							
소 방 직	소 계	3,656																																																																																																																																																																																																																																																																																																																																																																																																																																							
	소방정	23	5		18																																																																																																																																																																																																																																																																																																																																																																																																																																				
	소방령 이하	3,633																																																																																																																																																																																																																																																																																																																																																																																																																																							
교 원	소 계	43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7년 12월 12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

1. 수정이유

- 당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시행일이 2018년 1월 22일로 되어 있었으나,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공백을 줄이기 위해 부칙 시행일을 변경하고자 수정 제안함.

2. 주요내용

- 부칙 시행일 변경
  - 당 초 : 이 조례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변 경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847명”을 “5,85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43명”을 “2,05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경제유역청
	합 계	5,859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1,906						-
	1급	1						1
	2급	1				1		
	2~3급	2	1	1				
	3급	11	7		1	2		1
	3~4급	2	2					
	4급	83	54	7	5	9	8	
	5급 이하	1,793						-
	전문경력관	13						-
	별 정 직	소 계	15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1						-
연 구 직	소 계	210						-
	연구관	42			41		1	
	연구사	168						-
지 도 직	소 계	28						-
	지도관	10			10			
	지도사	18						-
소 방 직	소 계	3,656						-
	소방정	23	5		18			
	소방령 이하	3,633						-
교 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개정 조례안	수정안
<p><b>제2조(정원의 총수)</b>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84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2,043명</u></p> <p>2.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정원의 총수)</b> ----- ----- <u>5,859명</u>----- -----.</p> <p>1. ----- : <u>2,055명</u></p> <p>2. ~ 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b>제1조(시행일)</b> 이 조례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경과조치)</b>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b>제1조</b> <b>(시행일)</b>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좌 동〉</p>

원 안		개정 조례안										수정안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좌 동>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경자구역청	계	유청			
합계		5,859											
정무직		1											
일반직	소계	1,906											
	1급	1										1	
	2급	1					1						
	2~3급	2	1	1									
	3급	11	7		1	2						1	
	3~4급	2	2										
	4급	83	54	7	5	9	8						
	5급 이하	1,793											
	전문경력관	13											
	별정직	소계	15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1											
연구직	소계	210											
	연구관	42			41		1						
	연구사	168											
지도직	소계	28											
	지도관	10			10								
	지도사	18											
소방직	소계	3,656											
	소방장	23	5		18								
	소방령 이하	3,633											
교원	소계	43											
	총장	1			1								
	교수	31			31								
	조교	11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경자구역청	계	유청			
합계		5,847											
정무직		1											
일반직	소계	1,894											
	1급	1										1	
	2~3급	2	1	1									
	3급	11	9		1							1	
	3~4급	2	2										
	4급	83	61	7	5	10							
	5급 이하	1,782											
	전문경력관	13											
	별정직	소계	15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1											
연구직	소계	210											
	연구관	42			41		1						
	연구사	168											
지도직	소계	28											
	지도관	10			10								
	지도사	18											
소방직	소계	3,656											
	소방장	23	5		18								
	소방령 이하	3,633											
교원	소계	43											
	총장	1			1								
	교수	31			31								
	조교	11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인증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 면제확인 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 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 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 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일괄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수수료(제8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안전인증, 안전확인 신고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등 면제확인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최저 금액을 1,000원으로 하며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괄면제의 경우 해당 모델의 5회 수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저 금액을 1,000원으로 하며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input type="checkbox"/>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 면제 확인서			
신청인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 조 자	제 조 국 (원 산 지)		
	상 호		
확 인 내 용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수 량(개)
	통관세관명		
	사 용 장 소		
<p>「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제16조제2호·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조·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 면제를 확인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10px;"><b>경상북도지사</b> (인)</p>			
※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이 면제 됩니다.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m<sup>2</sup>)

■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처리기간** 5일

<input type="checkbox"/>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전자우편
	소 개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일괄면제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제16조제2호·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5조·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 일괄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경상북도지사 귀하</p>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 1부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서 사본 포함)	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
비고	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제활용품))

■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input type="checkbox"/>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 일괄면제 확인서			
신 청 인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확 인 내 용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일괄면제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제16조제2호·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5조·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경상북도지사 (인)</b></p>			
※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내의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경상북도내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대학의 학생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자료제출 요청)**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일자리민생본부장·인재개발정책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산업체·연구기관 임직원
2.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의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를 개최할 경우로서 의장이 검토

하여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제14조(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사업)**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연구 여건 개선 및 학술 또는 교육 연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도내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과 학술·학문연구 및 인재의 도내 정착을 위하여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 업무
2. 대학 및 지역인재 관련 통계 조사에 관한 업무
3.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업무
4.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대학 또는 민간기관 등에 대하여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요청 또는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8조(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년 이상 근속하고 2년”을 “2년”으로 한다.

조례 제3615호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기금의 관리) ① (생 략)</b>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u>구조</u>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생 략)</p> <p><b>제7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b>            ① 대부자의 자격은 경상북도 소속            (도분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경상            북도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도 소속”            이라 한다.)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대부신청일 현재 <u>3년 이상</u> 근속하고  <u>2년</u>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공무원으로 한다.            ② (생 략)</p> <p><b>부 칙(조례 제3615호 2015. 4. 6)</b>  <b>제2조(유효기간)</b> 이 조례 제7조의2는  <u>2017년 12월 31일까지</u> 그 효력을            가진다.</p>	<p><b>제4조(기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b>            ② -----  <u>구조</u>-----.            ③ (현행과 같음)</p> <p><b>제7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b>            ① -----            -----            -----            ----- <u>2년</u> -----            -----            -----.            ② (현행과 같음)</p> <p><b>부 칙(조례 제3615호 2015. 4. 6)</b>  <b>제2조(유효기간)</b> -----  <u>2019년 12월 31일</u>-----            -----.</p>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책 수립 및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체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빅데이터책임관)**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보장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경상북도 지역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지역정보화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하면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요청하면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도지사는 교육·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빅데이터 실태조사)** 도지사는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내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 수립 및 지역현안 해결 지원
3.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4.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5. 도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6.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7.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 출연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개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생활보  
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의료급여심의위원  
회의 심의사항

4.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5.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개별 조례에서 심의·의결을 대신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 및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3항을 적용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장 선출, 임기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보장분과위원회 :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5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사회공헌분과위원회 :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위원회 위원은 1개 분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잔여 임기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례)**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임기는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경상북도 생활보장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④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⑤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⑥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중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한다.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를 재설계하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년  
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시책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의 적절한 교육과 상담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
3.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지원 사업
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지원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 사업
7. 장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중·장기적으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정책연구 개발
2.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복지 및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관광안내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관광 안내인력의 양성 등 관광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광사업을”을 “관광사업 및 관광일자리 창출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관광일자리 창출 및 육성

10. 관광전문인력 양성

11. 관광창업 컨설팅 및 교육

제11조제1항제4호 중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을 “관광분야 인력양성 및 교육”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b>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u>4. 관광안내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u> 5. ~ 6. (생략)</p> <p><b>제10조(보조금 지원) ①</b> 도지사는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1. ~ 8. (생략) <u>&lt;신 설&gt;</u></p> <p>9. 관광정책 관련 연구 및 컨설팅, 심포지엄 개최 등 10. 관광의날 기념행사 11.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생략)</p> <p><b>제11조(업무의 위탁) ①</b> (생략) 1. ~ 3. (생략) <u>4.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u> 5. ~ 7. (생략) ② (생략)</p>	<p><b>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b>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관광안내인력의 양성 등 관광일 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u> 5. ~ 6. (현행과 같음)</p> <p><b>제10조(보조금 지원) ①</b> ----- 관광 사업 및 관광일자리 창출 등을 ----- ----- ②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p> <p>9. <u>관광일자리 창출 및 육성</u> 10. <u>관광전문인력 양성</u> 11. <u>관광창업 컨설팅 및 교육</u> 12. ----- ----- 13. ----- 14. ----- ----- ③ (현행과 같음)</p> <p><b>제11조(업무의 위탁) ①</b>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관광분야 인력양성 및 교육</u>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  
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  
빈병·폐부직포·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영농  
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5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를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7년 12월 12일

제 출 자 : 문화환경위원장

### 1. 수정이유

-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조사 탈락으로 다소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자연스럽게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중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를 “환경보전에”로 함.
- 안 제3조제1항 중 “환경오염”을 “환경오염을”로 함.

### 3. 수정안 : 붙임

### 4.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를 “환경보전에”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환경오염”을 “환경오염을”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영농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u>지속가능한 농업발전</u>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 ----- ----- ----- --- <u>환경보전에</u> ----- -----.</p>	<p>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에 맞게 문구 수정</p>
<p><b>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b></p> <p>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u>환경오염</u>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b>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b></p> <p>① ----- ----- <u>환경오염을</u> ----- ----- -----.</p> <p>② (원안과 같음)</p>	<p>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자연스럽게 수정</p>

###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5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를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입장료 :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을  
“시설사용료 :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로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할매· 할배의 날 주간”이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목요일을 말한다.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성수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가. 매년 7월 1일 ~ 8월 31일까지의 기간

나. 금요일, 토요일

다. 공휴일 전일(前日), 이 경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기간

8.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시설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를 “시설사용료(이하 “시설사용료”이라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연휴양림을 많이 찾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성수기와 비수기(성수기 이외의 기간)의 주말 등(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을 “성수기”로, “30%를 넘지 않는”을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수기 주중”을 “비수기”로, “30%를”을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로 한다.

제5조의 제목“(입장료 등의 징수 및 예약)”을“(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예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입장료 등은 매표

소에서 입장권 및”을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시설사용료 면제)”를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어느 하나”를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단체
2. 할매·할배의 날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또는 경로자를 동반한 자
3. 지역주민
4.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
5.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의 제목 “(시설사용 제한)”을 “(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연휴양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④ 휴관일에 유관기관·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 (원)		비 고	
			개 인	단 체		
시 설 사 용 료	캠핑장	야영장	1일/1개소	5,000		
		야영데크	"	10,000		
		오토캠핑장	"	15,000		
		카라반	18㎡ 미만	1일/1대	100,000	
			18㎡~22㎡	"	120,000	
	숙박 시설	18㎡ 미만(3인 이하)	1일/1동·실	40,000		
		18㎡ 이상 28㎡ 미만 (4인 이하)	"	50,000		
		28㎡ 이상 41㎡ 미만 (6인 이하)	"	60,000		
		41㎡ 이상 51㎡ 미만 (8인 이하)	"	80,000		
		51㎡ 이상 61㎡ 미만 (10인 이하)	"	90,000		
		61㎡ 이상 71㎡ 미만 (12인 이하)	"	100,000		
		71㎡ 이상 81㎡ 미만 (14인 이하)	"	120,000		
	81㎡ 이상(15인 이상)	"	150,000			
	<b>감 면 대 상</b>				<b>감면율</b>	<b>비 고</b>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 할매·할배의 날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50%	비수기에 한함	
	지역주민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의 경우 칠곡군민, 안동호반 자연 휴양림의 경우 안동시민)					

- ※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시설사용료 감면은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수기 및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에 한한다.
- ※ 감면이 중복시에는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 단,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u>입장료 및 시설사용료</u>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입장료</u> :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2. <u>시설사용료</u> :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u>신 설</u>〉</p> <p>3.·4. (생략)</p> <p>5. <u>어린이</u> : 초등학교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p> <p>6. <u>청소년</u>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p> <p>7. <u>군인</u>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u>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u></p> <p><b>제1조(목적)</b> ----- ----- ----- <u>시설사용료</u> ----- -----.</p> <p><b>제3조(정의)</b> ----- -----.</p> <p>1. <u>시설사용료</u> : 자연휴양림 시설을 <u>사용하는</u> ----- -----.</p> <p>〈<u>삭 제</u>〉</p> <p>4. <u>경로자</u> :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p> <p>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u>삭 제</u>〉</p> <p>6.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p> <p>7. “성수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가. 매년 7월 1일 ~ 8월 31일     <u>까지의 기간</u></p>

현행	개정안
<p>8. 일반 :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신설〉</p> <p>9. (생략)</p> <p><b>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b> ①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p> <p>②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1. 자연휴양림을 많이 찾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성수기와 비수기(성수기 이외의 기간)의 주말 등(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p>	<p>나. 금요일, 토요일</p> <p>다. 공휴일 전일(前日), 이 경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p> <p>라.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기간</p> <p>8.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p> <p>9. "할매·할배의 날 주간"이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목요일을 말한다.</p> <p>5. (현행 제9호와 같음)</p> <p><b>제4조(시설사용료)</b> ① ----- 시설사용료(이하 "시설사용료"이라고 -----</p> <p>② -----</p> <p>1. 성수기-----</p> <p>-----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의 -----</p>

현행	개정안
<p>2. 비수기 주중에는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b>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예약)</b>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숙박시설은 사전 예약으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p> <p><b>제6조(분쟁 해결) ① (생략)</b>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③·④ (생략)</p> <p><b>제7조(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b>  1.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3.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4. 자연휴양림내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5. 자연휴양림 시설 중 숙박시설 이용자</p>	<p>2. 비수기-----  -----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5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예약)</b>  ①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b>제6조(분쟁 해결) ① (현행과 같음)</b>  ② --- 각 호-----  -----.</p> <p>1.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행	개정안
<p>6. <u>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또는 치매서포터즈증 소지자</u></p> <p>7. <u>임산부</u></p> <p>8. <u>장기 기증자</u></p> <p>9. 「<u>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u>」 제5조에 따른 <u>한복 착용자</u></p> <p>10. <u>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p> <p><b>제8조(시설사용료 면제)</b>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기타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② <u>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u>  <u>&lt;신설&gt;</u></p>	<p><b>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b></p> <p>① ----- 호-----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 -----</u>  -----</p> <p>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u>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단체</u></p> <p>2. <u>할매·할배의 날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또는 경로자를 동반한 자</u></p> <p>3. <u>지역주민</u></p> <p>4. <u>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u></p> <p>5. <u>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p>

현행	개정안
<p><b>제10조(시설사용 제한)</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신설〉</p> <p>〈신설〉</p> <p><b>제13조(과태료)</b>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자연휴양림 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b>제10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b></p> <p>① -- 각 호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자연휴양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p> <p>④ 휴관일에 유관기관·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p> <p>〈삭제〉</p>

[별 표]

현 행					개 정 안					
<b>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4조제1항 관련)</b>					<b>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제4조제1항 관련)</b>					
구 분	기 준	요 금 (원)		비 고	구 분	기 준	요 금 (원)		비 고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입 장 료	어 른	1인/1일	1,000	600	캠 핑 장	야 영 장	1일/1개소	5,000		
	청소년	"	600	400		야영데크	"	10,000		
	어린이	"	300	200		오토캠핑장	"	15,000		
시 설 사 용 료	주 차 장	경형 자동차	1일/1대	1,000	카 라 반	18㎡ 미만	1일/1대	100,000		
		중·소형 자동차	"	2,000		18㎡~22㎡	"	120,000		
		대형 자동차	"	4,000		시 설 사 용 료	18㎡ 미만 (3인 이하)	1일/1동·실	40,000	
	캠 핑 장	야영장	1일/1개소	5,000	18㎡ 이상 28㎡ 미만 (4인 이하)		"	50,000		
		야영데크	"	10,000	28㎡ 이상 41㎡ 미만 (6인 이하)		"	60,000		
		오토캠핑장	"	15,000	41㎡ 이상 51㎡ 미만 (8인 이하)		"	80,000		
	숙 박 시 설	카 라 반	18㎡ 미만	1일/1대	100,000		51㎡ 이상 61㎡ 미만 (10인 이하)	"	90,000	
			18㎡~22㎡	"	120,000		61㎡ 이상 71㎡ 미만 (12인 이하)	"	100,000	
		숙 박 시 설	18㎡ 미만 (3인 이하)	1일/1동·실	40,000		71㎡ 이상 81㎡ 미만 (14인 이하)	"	120,000	
			18㎡ 이상 28㎡ 미만 (4인 이하)	"	50,000		81㎡ 이상 (15인 이상)	"	150,000	
			28㎡ 이상 41㎡ 미만 (6인 이하)	"	60,000		<b>감 면 대 상</b>		<b>감 면 율</b>	<b>비 고</b>
			41㎡ 이상 51㎡ 미만 (8인 이하)	"	80,000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		50%	비수기에 한함
51㎡ 이상 61㎡ 미만 (10인 이하)			"	90,000	할매·할배의 날 주간(5월)에 방문하는 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61㎡ 이상 71㎡ 미만 (12인 이하)			"	100,000	지역주민 (팔공산급회자연휴양림의 경우 칠곡군민,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의 경우 안동시민)					
71㎡ 이상 81㎡ 미만 (14인 이하)			"	120,000	*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1㎡ 이상 (15인 이상)	"	150,000	* 시설사용료 감면은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수기 및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에 한한다.							
					* 감면이 중복시에는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단,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 조건에 따른다.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산보고서”를 “재원별 계산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본”을 “등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b>제6조(결산보고 등) ①</b>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u>1개월</u>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u>정산보고서</u></p> <p>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u>사본</u></p> <p>② (생 략)</p>	<p><b>제6조(결산보고 등) ①</b> -----</p> <p>----- <u>2개월</u> -----</p> <p>----- .</p> <p>1. ----- <u>재원별 계산서</u></p> <p>2. ----- <u>등</u></p> <p style="padding-left: 40px;"><u>도지사가 정하는 서류</u></p> <p>②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업인학습단체를 말한다.”를 “한국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인 이내”를 “12명 이내”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 부위원장은 각 단체의 도연합회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기획과장, 기술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과 각 단체별 시군회장 중에서 농업기술원장이 위촉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각 단체의 도연합회장으로 한다.
2.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 시군회장 2명, 생활개선회 시군회장 2명 및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4명 이내로 농업기술원장이 위촉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민간전문가 위원은 2년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용어의 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u>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업인학습단체</u>를 말한다.</p>	<p><b>제2조(용어의 정의)</b> ----- -----<u>한국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u>를 말한다.</p>
<p><b>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④</b> (생략)</p> <p>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2. (생략)</p> <p>〈신설〉</p> <p>3. (생략)</p>	<p><b>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④</b> (현행과 같음)</p> <p>⑤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b>제7조(기금운용위원회) ①</b>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u>9인이내</u>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 부위원장은 <u>각단체의 도연합회장</u>이 되고 위원은 <u>지원기획과장, 기술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u>과 <u>각 단체별 시군회장</u> 중에서 농업기술원장이 위촉한다.</p>	<p><b>제7조(기금운용위원회) ①</b> (현행과 같음)</p> <p>② ----- ----- <u>12명이내</u>----- ----- <u>다음과 같이</u> 구성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1.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각 단체의 도연합회장으로 한다.</p>
<p>〈신설〉</p>	<p>2.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사회 시군회장 2명, 생활개선회 시군 회장 2명 및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4명이내로 농업기술원장이 위촉한다.</p>
<p>〈신설〉</p>	<p>③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민간전문가 위원은 2년으로 한다.</p>
<p>③·④ (생략)</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신설〉</p>	<p><b>제7조의3(위원의 해촉)</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p>
	<p>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p>
	<p>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를 “경상북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을 “스마트도시건설”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협의회”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유비쿼터스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 중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도청신도시추진단장”으로, “업무 담당과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비쿼터스도시 사업관련자”를 “스마트도시사업 관련자,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한다.

제9조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용어의 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3조(조직)</b>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b>제4조(기능)</b>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비쿼터스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li> <li>3.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인수 인계에 관한 사항</li> <li>4.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b>경상북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b></p> <p><b>제1조(목적)</b> ----- 스마트도시----- ----- 「스마트도시 구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p> <p><b>제2조(용어의 정의)</b> ----- ----- 「스마트도시 구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p> <p><b>제3조(조직)</b> 스마트도시건설-----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p> <p><b>제4조(기능)</b>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스마트도시기반시설-----</li> <li>3. 스마트도시기반시설-----</li> <li>4. 스마트도시건설사업-----</li> <li>5.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li> </ol>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 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1의 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차장 : 행정부지사

3. 총괄조정관 : 도민안전실장
  4. 대변인 :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국장 또는 본부장. 다만, 해당 실·국장 또는 본부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 ③ 본부장은 도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별표 4

2. 사회재난 :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국장 및 본부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 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 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 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 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 3 장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민안전실장 및 소방본부장. 단, 소방본부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본부장 및 과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4 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

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시·군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도지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도지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군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 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 보 칙

**제23조(사회재난 피해복구 비용 부담 기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와 시·군의 재원 부담률은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국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 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ND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나. 협업 기능반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구 분	업무와 역할
나. 협업 기능반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 운영의 지도·확인 라) 시·군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 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 통신체계 구축 라) 시·군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자재 등 지원 다)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 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시·군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구 분	업무와 역할	
나. 협 업 기능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li> <li>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li> <li>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li> <li>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li> <li>차) 시·군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li> </ul>	
	<p>7) 재난관리 자 원 지 원 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 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해당 부서 및 관리기관별)</li> <li>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ystem : DRSS) 가동</li> <li>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li> <li>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li> <li>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 지도</li> <li>바) 재난관리자원의 해당부서 및 관리기관별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li> </ul>
	<p>8) 교 통 대 책 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li> <li>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li> <li>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li> <li>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li> <li>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li> <li>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li> </ul>
	<p>9) 의료·방역 서 비 스 지 원 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li> <li>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li> </ul>

구 분		업무와 역할
나. 협업 기능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 비상방역 실시 현황 파악</li> <li>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li> <li>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li> <li>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li> </ul>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li> <li>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li> <li>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li> <li>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li> </ul>
	11) 사회질서 유지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li> <li>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li> <li>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li> <li>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li> <li>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li> </ul>
	12) 수색, 구조·구급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li> <li>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지원</li> <li>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li> <li>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li> <li>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li> </ul>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군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 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 기능반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 지원반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구 분		업무와 역할
나. 협업 기능반	6) 재난수습 홍보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 구급반	
다. 재난대응 협업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 지원반	수습본부, 시·군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인재개발 정책관실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글로벌통상협력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혁신법무 담당관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해당 실·과
6. 행정안전부	가. 도 청사 사고	회계과
7. 문화체육 관광부	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나. 축제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해당실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등)
	다.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 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동물방역과 농촌개발과
9. 산업통상 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 중단을 포함한다)	청정에너지산업과 청정에너지산업과 원자력산업정책과 청정에너지산업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라. 전력 사고	청정에너지산업과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정책과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안전과 물산업과 환경안전과 환경안전과 환경정책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노사지원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공항과 하 천 과 도로철도공항과 물 산 업 과 일자리경제교통단 도로철도공항과 도로철도공항과 도로철도공항과 해당실과 (건축과 등)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항만물류과 항만물류과 해양수산과
15.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도시계획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 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재난 및 사고 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대응예방과 사회재난과 대응예방과 자연재난과  해양수산과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정보통신과
17. 원자력 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원자력산업정책과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유산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자원과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 무 내 용	담당관	통계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본부장	도지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통제관	도민안전실장		
담당관	자연재난과장		
실무반	인 원	총 6+a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과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 협업 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안전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정책과, 항만물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당 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청정에너지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실무반	2) 협업 기능반(a)	사) 재난관리 지원반	· 사회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일자리경제교통단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봉사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구조구급과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연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도지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통 제 관	도민안전실장			
담 당 관	자연재난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7+a+β명		
	반 장	자연재난1담당사무관 또는 자연재난2담당사무관		
	1) 상황관리 총괄반 (6명)	가)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2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2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과 1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1명)	· 안전정책과 1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	· 자연재난과 2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자치행정과 1명	
	2) 협 업 기능반 (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안전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정책과, 항만물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당 실·과	

실 무 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청정에너지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사회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일자리경제교통단, 도로철도공항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봉사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타) 수색, 구조·구급반	· 구조구급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자연재난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도지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통 제 관	도민안전실장			
담 당 관	자연재난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9+a+β명		
	반 장	자연재난1담당사무관 또는 자연재난2담당사무관		
	1) 상황 관리 총괄반 (8명)	가)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안전상황실 2명 - 자연재난과 1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1명)	· 안전정책과 1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자연재난과 3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자치행정과 1명	
	2) 협 업 기능반 (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안전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정책과, 항만물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당 실·과	

실무반	2) 협업기능반 (a)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청정에너지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사회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일자리경제교통단, 도로철도공항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봉사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타) 수색, 구조·구급반	· 구조구급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대응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도지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본부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 $\alpha$ + $\beta$ + $\gamma$ 명		
	반 장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과장		
	1) 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과악팀(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 협업 기능반 ( $\alpha$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안전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정책과, 항만물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실 무 반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당 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청정에너지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사회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일자리경제교통단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봉사과
	카) 사회질서유지반	·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구조구급과
	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제50보병사단, 경북지방경찰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경북본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재난수습 주관 실·국·본부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구 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 재난	가. 풍수해 (태풍· 호우· 대설)	1) 비상 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 거나 1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 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3개 이상의 시·군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 지진 해일 및 화산	1) 비상 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 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 보가 발표된 경우

구 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 재난	2) 비상 1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회 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도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에서”를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에서”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 확보)** ① 영 제42조의3 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와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4.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한 지역
5. 그 밖에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군의 도시·군 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3 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기반시설 설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다.
3.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과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해당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 할 수 있다.
4.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을 “출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13조제2항 중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을 “5명”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중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공동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위원회”를 각각 “공동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3이하”를 “2/3 이하로 하되 제13조에 따른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제11조”,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8조” 의”를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1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영 제12조제4항의</b> 규정에 의한 광역 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③ 제2항에 의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승인요청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p> <p><b>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생 략)</b></p> <p>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도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p> <p>③·④ (생 략)</p>	<p><b>제1조(목적)</b> ----- ----- ----- <u>같은 법</u> ----- ----- <u>같은 법</u> ----- ----- -----.</p> <p><b>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b> 따른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따른</u> ----- ----- -----.</p> <p><b>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현행과 같음)</b></p> <p>② ----- ----- ----- <u>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u> <u>광고하고 도에서</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제6조(경관지구의 세분)</u> 영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종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li> <li>2. 삭제</li> <li>3. 삭제</li> <li>4. 삭제</li> <li>5. 삭제</li> <li>6. 삭제</li> </ol> <p>〈신설〉</p>	<p>〈삭제〉</p> <p><u>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 확보)</u> ① 영 제42조의3 제2항 제13호 및 제14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와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li> <li>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li> <li>3.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li> <li>4.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한 지역</li> <li>5. 그 밖에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li> </ol>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② 영 제42조의3 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기반시설 설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li> <li>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다.</li> <li>3.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li> </ol> <p><b>제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b></p> <p>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과 시·군의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p> <p>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원가 계산용역기관에서 해당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li> </ol>

현행	개정안
<p><u>제8조(용도지구의 신설) 법 제37조 제3항</u>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p> <p>1.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p>	<p>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2.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p> <p>3.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p> <p>4.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p> <p>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p> <p><b>제12조(회의운영) ① (생략)</b></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④ (생략)</p> <p><b>제13조(분과위원회) ①</b>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p> <p>1. 제1분과위원회</p> <p>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p> <p>나. (생략)</p> <p>2. 제2분과위원회</p> <p>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변경(영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p> <p>나·다. (생략)</p>	<p><b>제12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b></p> <p>② ----- ---- 출석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b>제13조(분과위원회) ①</b> ----- ----- -----.</p> <p>1. -----</p> <p>가. 법 제59조에 따른 ----- -----</p> <p>나. (현행과 같음)</p> <p>2. -----</p> <p>가. 법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p> <p>나·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3. 삭제</p> <p>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b>제1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b>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b>제19조(기능) 공동위원회</b>(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부의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배치·형태·색채·건축선·경관계획 등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한다.</p> <p><b>제20조(구성) ①</b>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p>	<p>② ----- 5명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b>제1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b>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p> <p><b>제19조(기능) 공동위원회</b> ----- ----- ----- ----- -----.</p> <p><b>제20조(구성) ① 공동위원회</b>----- ----- -----.</p> <p>②<b>공동위원회</b>----- ----- -----.</p> <p>③<b>공동위원회</b>----- ----- -----.</p>

현행	개정안
<p>1.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u>2/3이하</u></p> <p>2. (생략)</p> <p>3. 제13조 규정에 의한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한다.</p> <p><b>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b>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23조(구성) ①·② (생략)</b></p> <p>③ 단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과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④ (생략)</p> <p><b>제26조(권한의 위임) ①</b> 법 제1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시장·군수에 게 위임 또는 재위임 사무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 권한을 위임한다.</p>	<p>1. ----- ----- <u>2/3이하로 하되 제13조에 따른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b>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b> ----- ----- ----- <u>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u></p> <p><b>제2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b></p> <p>③ ----- <u>임기제공무원</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26조(권한의 위임) ①</b> 법 제139조 제3항에 따라 ----- ----- ----- -----.</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무중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군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 권한을 위임한다.</p> <p>③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 ----- ----- 제4조에 따라 ----- ----- ----- ----- -----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북도 관할 지역  
안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  
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및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1. 경상북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 안건 당사  
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 제척·회피·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  
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 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또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사항의 수행
2. 관할 시·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
3. 도 차원에서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등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시·군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초조사 결과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및 해당 의회 의견 청취 결과

3. 해당 시·군에 설치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사항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  
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초조사 결과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및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관할 시·군에 설치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및 승인에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성별·연령·계층·지역적 특성이 반영 되도록 한다.

**제1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3항 중 “다른 위원회 중 5개를 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를 초과”를 “다른 위원회 중 5개를 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중복위촉은 5개를 초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건축계획의 변경  
제8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 제3항”을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 제2항”으로 하고,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에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는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구성 등) ①</b> 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 위원회는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u>다른 위원회 중 5개를 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u></p> <p>④ ~ ⑦ (생략)</p> <p><b>제5조(임기) ①</b>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여성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생략)</p> <p><b>제6조(기능) ①·②</b> (생략)</p> <p>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b>제4조(구성 등) ①</b> ----- ----- ----- ----- <u>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다른 위원회 중 5개를 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5개를 초과</u>----- -----.</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b>제5조(임기) ①</b>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u>〈단서 삭제〉</u></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6조(기능) ①·②</b>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건축계획의 변경</u></p>

현행	개정안
<p>④ (생략)</p> <p><b>제8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b></p> <p>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 2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각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p> <p>1. <u>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u></p> <p>2.·3. (생략)</p> <p>② ~ ⑧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8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b></p> <p>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 2제2항에----- ----- -----.</p> <p>1. <u>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에 등재된 자는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u></p> <p>2.·3. (현행과 같음)</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를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제1조 부분 중 “운영등에”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5조2항 부분 중 “지명중”을 “지명 중”으로, “지명이기 명칭오류”를  
“지명이기·명칭오류”로 한다.

제5조제3항 부분 중 “지명등을”을 “지명 등을”로 한다.

제6조 부분 중 “시·군 지명위원회”를 “시·군 지명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u>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u> 제91조 및 <u>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u>경상북도지명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u>운영</u>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5조(지명의 조사)</b>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u>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기 명칭오류</u>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p> <p>③ <u>각급행정구역</u> 경계상에 위치한 <u>지명</u>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p>	<p><u>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제91조 및 <u>같은법 시행령</u>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u>경상북도지명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5조(지명의 조사)</b>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u>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기·명칭오류</u>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p> <p>③ <u>각급행정구역</u> 경계상에 위치한 <u>지명</u>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b>제6조(의견 청취 등)</b>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 또는 <u>시·군 지명위원회의</u> 위원으로부터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p>	<p><b>제6조(의견 청취 등)</b>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 또는 <u>시·군 지명위원회의</u> 위원으로부터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p>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창의 인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 제고 및 공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육기부”란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유치원 및 학교교육에 학습  
활동을 통하여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의 장 등의 책무)** 교육기부 수혜를 받는 학교의 장  
등은 기부 받은 인적·물적 자원을 기부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  
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지원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3. 교육기부 협력체계 구축
4.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기부 시스템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약의 체결)**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동의 확대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공헌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기대효과 및 발전가능성 등

**제8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추고 성찰하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인문학 교육의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으로 하고,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5. 그 밖에 인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및 인문학 교육 진흥 업무 관련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인문학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문학 교육 진흥업무 담당장학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 등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사 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학생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인문학 교육 주간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14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인문학 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동아리, 인문학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경상북도  
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익신고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무원(파견된 공무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으로, “계약직”을  
“교육실무직원 및 계약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익신고  
자”를 “부조리신고자”로, “공익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한다.

제3조 중 “공익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공익신고”를 각각 “부조리신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익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공익신고”를 각각 “부조리신고”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책임의 감면 등) ① 교육감은 공무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4항 중 “공익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1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전에 증언·감정·자문·손해사정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제2항 중 “다음달 말일까지”를 “90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익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기타 세부사항)”을 “(그 밖에 세부사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u>공익신고자</u>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무원 등”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을 말한다.</p> <p>2. (생략)</p> <p>3. “<u>공익신고자</u>”(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이하 “<u>공익신고</u>”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p> <p>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u></p> <p><b>제1조(목적)</b> ----- ----- ----- 사람에게 ----- ----- -----.</p> <p><b>제2조(정의)</b> ----- -----.</p> <p>1. ----- ----- 공무원(파견된 공무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교육실무직원 및 계약직 -----.</p> <p>2. (현행과 같음)</p> <p>3. “<u>부조리신고자</u>”----- ----- ----- “<u>부조리신고</u>”----- -----.</p> <p>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신고기한)</b>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u>공익신고</u>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p>	<p><b>제3조(신고기한)</b> ----- ----- <u>부조리신고</u> ----- ----- ----- . &lt;단서 삭제&gt;</p>
<p><b>제4조(신고방법 등)</b> ① 제3조에 따른 <u>공익신고</u>는 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p> <p>② <u>공익신고</u>는 신고자 및 부조리 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 행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전화 등으로 신고 후 서면(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b>제4조(신고방법 등)</b> ① ----- <u>부조리신고</u>----- ----- .</p> <p>② <u>부조리신고</u>----- -----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5조(사실조사)</b> ① 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은 <u>공익신고</u>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서 제외한다.</p>	<p><b>제5조(사실조사)</b> ① ----- ----- <u>부조리신고</u>----- ----- ----- ----- ----- .</p>

현 행	개 정 안
<p>1.·2. (생 략)</p> <p>②·③ (생 략)</p> <p><b>제6조(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 등)</b></p> <p>① 제4조에 따라 <u>공익신고</u>를 받은 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공익신고 및 보상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제9조에 따른 위원이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위촉 해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u>&lt;신 설&gt;</u></p>	<p>1.·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b>제6조(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 등)</b></p> <p>① <del>공익신고</del> <u>부조리신고</u></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부조리신고</u> -----</p> <p>-----</p> <p>-----</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6조의2(책임의 감면 등)</b> ① 교육감은 <u>공무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p> <p>② <u>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③ (생 략)</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u>공익신고</u>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p>⑤·⑥ (생 략)</p> <p>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p>1. <u>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인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 <u>신고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u></p>	<p>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_____ _____ 부조리신고 _____.</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_____</p> <p>_____ 심의·의결_____.</p> <p>1. <u>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u></p> <p>2. <u>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u></p> <p>3. <u>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증언·감정·자문·손해사정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p> <p>4. <u>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u></p> <p>② <u>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u></p>

현 행	개 정 안
<p>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신설〉</p>	<p>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p> <p>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11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b>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p> <p>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보상금의 지급) ① (생략)</p> <p>② 보상금은 위원회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u>다음달 말일까지</u>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익신고 및 보상금 지급·환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제13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6.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p> <p>제12조(보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90일 이내</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부조리신고</u> ----- -----.</p> <p>제13조(보상금 지급 제외) ----- ----- <u>부조리신고</u> ----- -----.</p> <p>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4.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p> <p>5. (생략)</p> <p><b>제16조(기타 세부사항) (생략)</b></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b>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b></p> <p><b>1. 신고유형별 보상금액</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30%;">신고유형</th> <th style="width: 25%;">지급기준</th> <th style="width: 40%;">보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td> <td rowspan="2">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td> <td>· 금품 수수액</td> <td>·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td> </tr> <tr> <td>· 개인별 향응액</td> <td>·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td> <td>· 추정·환수결정액</td> <td>· 10%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3</td> <td rowspan="2">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td> <td>·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td> <td>·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td> </tr> <tr> <td>· 알선·청탁행위 신고</td> <td>· 3백만원 이내</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4</td> <td rowspan="2">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td> <td>·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td> <td>· 5천만원 이내</td> </tr> <tr> <td>· 그 밖에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td> <td>· 3백만원 이내</td> </tr> </tbody> </table> <p><b>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b></p> <p>가. 금품·향응 수수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p>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정·환수결정액	· 10%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 알선·청탁행위 신고	· 3백만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 그 밖에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3백만원 이내	<p>4. 그 밖에 ----- -----</p> <p>5. (현행과 같음)</p> <p><b>제16조(그 밖에 세부사항) (현행과 같음)</b></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b></p> <p><b>1.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30%;">신고유형</th> <th style="width: 25%;">지급기준</th> <th style="width: 40%;">보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td> <td>· -----</td> <td>· ----- (-----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 -----</td> <td>· -----</td> <td>· ----- (-----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 -----</td> <td>· -----</td> <td>· ----- (-----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td> <td>· -----</td> <td>· ----- -----</td> </tr> </tbody> </table> <p><b>2. -----</b></p> <p>가. ----- ----- -----</p>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1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정·환수결정액	· 10%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 알선·청탁행위 신고	· 3백만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 그 밖에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3백만원 이내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1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현 행	개 정 안																																																																		
<p>나. 추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p> <p>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p> <p>[별지 제1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공익신고서(제4조제2항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width: 15%;">신고자</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생년월일</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소속</td> <td>전화번호</td> <td>(사무실) (휴대폰)</td> </tr> <tr> <td colspan="3">주소</td> </tr> <tr> <td rowspan="2">피신고자 (신고대상)</td> <td>성명</td> <td colspan="2">소속</td> </tr> <tr> <td colspan="3">직급</td> </tr> <tr> <td>신고내용</td> <td colspan="3">*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td> </tr> <tr> <td>증빙자료</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p>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교육감 귀하</p>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p><b>공익신고서 접수증</b></p> <p>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20 . . . . .</p> <p>신고자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td> </tr> </table>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직급			신고내용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p>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교육감 귀하</p>				<p><b>공익신고서 접수증</b></p> <p>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20 . . . . .</p> <p>신고자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나. ----- ----- ----- ----- -----</p> <p>다. ----- ----- -----</p> <p>[별지 제1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조리신고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width: 15%;">신고자</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생년월일</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소속</td> <td>전화번호</td> <td>(사무실) (휴대폰)</td> </tr> <tr> <td colspan="3">주소</td> </tr> <tr> <td rowspan="2">피신고자 (신고대상)</td> <td>성명</td> <td colspan="2">소속</td> </tr> <tr> <td colspan="3">직급</td> </tr> <tr> <td>신고내용</td> <td colspan="3">----- -----</td> </tr> <tr> <td>증빙자료</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right;">----- 부조리신고 -----</p> <p style="text-align: center;">-- -- -- (-----)</p>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p><b>부조리신고서</b> -----</p> <p>----- : ----- : -----</p> <p>----- :</p> <p>----- 부조리신고 -----</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교육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p> </td> </tr> </table>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직급			신고내용	----- -----			증빙자료				<p style="text-align: right;">----- 부조리신고 -----</p> <p style="text-align: center;">-- -- -- (-----)</p>				<p><b>부조리신고서</b> -----</p> <p>----- : ----- : -----</p> <p>----- :</p> <p>----- 부조리신고 -----</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교육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p>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직급																																																																		
신고내용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p>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교육감 귀하</p>																																																																			
<p><b>공익신고서 접수증</b></p> <p>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20 . . . . .</p> <p>신고자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직급																																																																		
신고내용	----- -----																																																																		
증빙자료																																																																			
<p style="text-align: right;">----- 부조리신고 -----</p> <p style="text-align: center;">-- -- -- (-----)</p>																																																																			
<p><b>부조리신고서</b> -----</p> <p>----- : ----- : -----</p> <p>----- :</p> <p>----- 부조리신고 -----</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교육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p>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2호 서식]</p> <p><b>공익신고에 따른 이의신청서</b> (제7조제1항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20 . . 호 신고사항에 대한 인사 등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이의 신청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년 월일</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속</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화 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무실) (휴대폰)</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주소</td> </tr> </table> <p>이의 신청 사유 ※ 이의신청 내용은 유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p> <p>증빙 자료</p> <p>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교육청(감사관) 귀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공익신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증</b></p> <p>접수번호 : 20 . . 호, 접수일자 : 20 . . . . 신 청 자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 (인) 귀하</p> </div>	이의 신청인	성명	생년 월일		소속	전화 번호	(사무실) (휴대폰)	주소			<p>[별지 제2호 서식]</p> <p><b>부조리신고에 따른 이의신청서</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이의 신청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년 월일</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화 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이의 신청 사유 .....</p> <p>증빙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 부조리신고 .....</p> <p>..... ..... (---) 경상북도교육청 귀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부조리신고</b></p> <p>..... : .. . . . . ..... : .. . . . . ..... 부조리신고 .....</p> <p>..... ..... 경상북도교육청 (인) .....</p> </div>	이의 신청인	..	생년 월일		..	전화 번호	(---) (---)	..																																																																																																						
이의 신청인		성명	생년 월일																																																																																																																						
		소속	전화 번호	(사무실) (휴대폰)																																																																																																																					
	주소																																																																																																																								
이의 신청인	..	생년 월일																																																																																																																							
	..	전화 번호	(---) (---)																																																																																																																						
	..																																																																																																																								
<p>[별지 제4호 서식]</p> <p><b>공익신고 및 보상금 지급·환수 대장</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접수 번호</th> <th rowspan="2">접수 일자</th> <th colspan="3">공익신고</th> <th colspan="3">보상금 지급 및 환수</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신고자</th> <th>피 신고자</th> <th>신고내용</th> <th>지급일 (환수일)</th> <th>지급액 (환수액)</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및 환수			비고	신고자	피 신고자	신고내용	지급일 (환수일)	지급액 (환수액)	내 용																																														<p>[별지 제4호 서식]</p> <p><b>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환수 대장</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th> <th rowspan="2">.....</th> <th colspan="3">부조리신고</th> <th colspan="3">.....</th> <th rowspan="2">.....</th> </tr>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	.....	부조리신고			.....			.....	.....	.....	.....	.....	.....	.....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및 환수			비고																																																																																																															
	신고자	피 신고자		신고내용	지급일 (환수일)	지급액 (환수액)	내 용																																																																																																																		
.....	.....	부조리신고			.....			.....																																																																																																																	
		.....	.....	.....	.....	.....	.....																																																																																																																		

[별 표]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 1. 신고유형별 보상금액

구분	신 고 유 형	지 급 기 준	보 상 금 액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환수결정액	· 10%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 알선·청탁행위 신고	· 3백만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 그 밖에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3백만원 이내

###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가. 금품·향응 수수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나.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부조리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 급			
신 고 내 용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p>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인 또는 서명)</p> <p>경상북도교육감 귀하</p>				

<p><b>부조리신고서 접수증</b></p> <p>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20 . . . . .</p> <p>신 고 자 :</p> <p>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경상북도교육감 (인)</p> <p style="text-align: right;">귀하</p>
--

[별지 제2호 서식]

### 부조리신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20 - 호 신고사항에 대한 인사 등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이 의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주 소		
이의신청사유	※ 이의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b>부조리신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증</b>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20 . . . . .
신 청 자 :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 경상북도교육감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환수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부 조 리 신 고			보상금 지급 및 환수			비고
		신고자	피 신고자	신고 내용	지급일 (환수일)	지급액 (환수액)	내 용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급인”을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하고, “아니하는 경우”를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변경요구 등) 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u>수급인이</u> <u>정당한 사유없이</u> 요구에 응하지 <u>아니하는</u>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제13조(변경요구 등) ----- ----- ----- ----- ----- 발주자는 수급인 ----- <u>아니하여</u> <u>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u> <u>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p>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를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8조(구매의무)</b>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li> <li>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li> <li>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li> </ol>	<p><b>제8조(구매의무)</b>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p>
<p><b>제9조(구매예외)</b>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li> <li>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li> <li>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li> <li>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li> </ol>	<p><b>제9조(구매예외)</b> ① &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교육감이 판단하는 경우</p> <p>② 제1항의 각 호 또는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p> <p>.....</p> <p>.....</p>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우선구매) ① (생   략)</p> <p>② <u>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u> <u>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사회적 경제</u> <u>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③ (생   략)</p>	<p>제8조(우선구매) ①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있으며, 이 경우 강의실은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별표 2 중 25. 의복란, 26. 식음료품(조리)란, 27. 식음료품(제과·제빵)란, 30. 산업 디자인란, 32. 이용·미용(이용)란, 33. 이용·미용(미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5. 의복	가. 시설 1) 실습실 :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틀 10대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5. 의복	<b>2) 마네킹 5대 이상</b> <b>3) 다리미 10대 이상</b>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식음료품 (조리)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1,000ℓ 이상) 1대 이상 3) 오븐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b>5) 소독기(살균기) 1대 이상</b>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 식음료품 (제과·제빵)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빵슬라이서 1대 이상 2)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3)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4) 실습대 8대 이상 5)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b>6) 저울 10대 이상</b> 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8) 반죽로라(DOUGH SHEETER) 1대 이상 9) 냉장고(1,000ℓ 이상) 1대 이상 10) 실습실 당 싱크대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디자인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30. 디자인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터샤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쇼윈도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쇼윈도용 마네킹 5대 이상 5) 패션(의복)디자인 과정 가)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이상 나) 시청각기구 1대 이상 다) 에어브러시 1세트 이상 라) 디자인 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마) 마네킹 5대 이상 바) 컴퓨터 2대 이상 사) 재봉틀 5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32. 이용·미용 (이용)	가. 시설 1) 실습실 :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이상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b>3) 헤어드라이어 2대 이상</b> 4) 이발기, 면도기,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 거울 : 이발 의자 수에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3. 이용·미용 (미용)	가. 시설 1) 실습실 :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헤어과정 <b>가) 두상 마네킹 20개 이상</b> <b>나) 헤어드라이어 10조 이상</b> 다) 파마기 20종 이상 <b>라) 거울 10조 이상</b> 마) 샴푸대 2대 이상 바) 세면장 및 급수시설 사) 실습대(4인용) 6대 이상 아) 컷트기구 10개 이상 자) 세팅기구 10개 이상 2) 피부 미용 과정 가) 마사지 침대 10개 이상 <b>나) 거울 10조 이상</b>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3) 메이크업, 네일아트과정 가) 실습대(1인용) 10대 이상 나) 메이크업 세트 또는 네일세트 3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2 중 34. 세탁관을 삭제하고, 49. 미술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수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49. 미술	가. 시설 1) 실습실 :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또는 실습용탁자 일시 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이상 2) 서양화 과정 : 석고 및 석고대 또는 정물 및 정물대 3) 동양화 과정 : 베틀, 모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위반 사항별 행정처분 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17조제1항 위반(학원)					
가. 시설	1) 시설 기준 미달		시정명령 및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 시설 임의 변경		시정명령 및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 위치 무단 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4) 등록된 시설 무단 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5) 설비·교구 기준 미달		시정명령	경고	교습정지
	6) 설비·교구 임의 변경		시정명령	경고	교습정지
나. 설립·운영자	1)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2) 설립·운영자 2개월 이상 행방불명		등록말소		
	3) 성범죄 경력 미조회(강사 및 직원 등)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다. 교습비 등	1) 교습비 등 초과징수	가) 100% 미만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나) 100% 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습비 등 미게시 및 거짓 게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 교습비 등 영수증 미교부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 교습비 등 미등록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5) 교습비 등 광고물 미표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다. 교습비 등	6) 교습비 등 미반환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7)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라. 강사 등	1) 무자격 강사·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강사·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또는 해임 미등록과 미통보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또는 거짓게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영양사 또는 생활지도담당인력 미배치	교습정지	등록말소	
마. 교습 과정	1)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습시간 연장 운영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바. 운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말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 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등록말소		
	4) 무단 명칭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5) 등록증명서 미게시 또는 거짓 게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6)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7) 재학생 출입 불허 대상 학원에 재학생 수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바. 운영	8)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교습정지	등록말소	
	9) 취업알선 등을 병자한 금품 편취	교습정지	등록말소	
	1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1) 거짓·과대광고	시정명령 및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2) 거짓 증명 발급	교습정지	등록말소	
	13) 환경 불량	시정명령 및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4)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 기재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5) 독서실 남·녀 혼석	교습정지	등록말소	
	16)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또는 금액 미달 가입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7)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및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8)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 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19) 아동학대 행위	등록 말소		
	20)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시정명령 및 경고	교습정지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사. 지도 감독	1)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등록말소			
	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4)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교습정지	등록말소		
아. 연수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비고) 2차 위반은 1차 위반자가 1차 위반에 따른 보충교육 불참시 적용하고, 3차 위반은 2차 위반자가 2차 위반에 따른 보충교육 불참시 적용한다.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 법 제17조 제2항 위반(교습소)					
가. 시설	1) 위치 무단 변경	교습정지	폐지		
나. 교습자	1) 교습자 무단변경	교습정지	폐지		
	2) 교습자 2개월 이상 행방불명	폐지			
	3) 성범죄경력미조회(직원 등)	경고	교습정지	폐지	
다. 교습비 등	1) 교습비 등 초과징수	가) 100% 미만	경고	교습정지	폐지
		나) 100% 이상	교습정지	폐지	
	2) 교습비 등 미게시 및 거짓 게시	경고	교습정지	폐지	
	3) 교습비 등 영수증 미교부	경고	교습정지	폐지	
	4) 교습비 등 미등록	경고	교습정지	폐지	
	5) 교습비 등 광고물 미표시	경고	교습정지	폐지	
	6) 교습비 등 미반환	경고	교습정지	폐지	
7)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지			
라. 강사	강사 채용	교습정지	폐지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마. 교습 과정	1)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경고	교습정지	폐지
	2) 교습시간 연장운영	경고	교습정지	폐지
바. 운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지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교습을 정지한 경우	폐지		
	3) 무단 명칭 변경	교습정지	폐지	
	4)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	경고	교습정지	폐지
	5)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경고	교습정지	폐지
	6) 취업알선 등을 병자한 금품 편취	교습정지	폐지	
	7)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경고	교습정지	폐지
	8) 거짓·과대광고	경고	교습정지	폐지
	9) 환경 불량	<b>시정명령 및 경고</b>	교습정지	폐지
	10)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 기재	경고	교습정지	폐지
	11)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또는 금액 미달 가입	경고	교습정지	폐지
	12)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b>시정명령 및 경고</b>	교습정지	폐지
	13) <삭 제>			
	14) 아동학대 행위	폐지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바. 운영	15)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시정명령 및 경고	교습정지	
사. 지도 감독	1)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교습정지	폐지	
	2)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폐지		
	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지	
	4)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교습정지	폐지	
아. 연수	교습자 연수 불참 (비고) 2차 위반은 1차 위반자가 1차 위반에 따른 보충교육 불참시 적용하고, 3차 위반은 2차 위반자가 2차 위반에 따른 보충교육 불참시 적용한다.	경고	교습정지	폐지
3. 법 제17조제3항 위반(개인과의교습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중지		
나.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교습정지	중지	
다.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습정지	중지	
라. 신고증명서 미제시 또는 미제시		경고	교습정지	중지
마. 교습비 등 초과징수	가) 100% 미만	경고	교습정지	중지
	나) 100% 이상	교습정지	중지	
바. 아동학대 행위		중지		
사. 주거지 개인과의교습자 표지 미부착		시정명령 및 경고	교습정지	중지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아. 교습비 등 미 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표시	시정명령 및 경고	교습정지	중지
	자.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시정명령 및 경고	교습정지	
	차. 강사 채용	교습정지	중지	
	카. 거짓, 과대 광고	시정명령 및 경고	교습정지	중지
	타. 교습비 등 영수증 미교부	경고	교습정지	중지
	파. 교습비 등 미반환	시정명령	교습정지	중지
	하.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고	교습정지	중지
	거. 교습시간 연장 운영	경고	교습정지	중지
	너.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경고	교습정지	중지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2</b> (단위시설의 기준)</p> <p>① (생략)</p> <p>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의실은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p> <p><b>[별표 2]</b>  <u>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4조의3 제3항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교수과정</th> <th style="width: 80%;">시설·설비 및 교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25. 의복</td> <td>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이상                      2) 시침각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러쉬 1세트 이상                      4) 모터미싱 10대 이상                      5) 디자인 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6) 인대(마네킹) 5대 이상                      7) 컴퓨터 2대 이상                      8) 다리미 10대 이상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26. 식음료품 (조리)</td> <td>                     나. 설비 및 교구                      1) ~ 4) (생략)                      5) 제독시설                 </td> </tr> </tbody> </table>	교수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생략)	(생략)	25. 의복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이상 2) 시침각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러쉬 1세트 이상 4) 모터미싱 10대 이상 5) 디자인 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6) 인대(마네킹) 5대 이상 7) 컴퓨터 2대 이상 8) 다리미 10대 이상	26. 식음료품 (조리)	나. 설비 및 교구 1) ~ 4) (생략) 5) 제독시설	<p><b>제4조2</b> (단위시설의 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있다.</p> <p><b>[별표 2]</b>  <u>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4조의3 제3항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교수과정</th> <th style="width: 80%;">시설·설비 및 교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25. 의복</td> <td>                     나. 설비 및 교구  <b>1) 재봉틀 10대 이상</b>  <b>2) 마네킹 5대 이상</b>  <b>3) 다리미 10대 이상</b>                      &lt;삭 제&gt;                      &lt;삭 제&gt;                      &lt;삭 제&gt;                      &lt;삭 제&gt;                      &lt;삭 제&gt;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26. 식음료품 (조리)</td> <td>                     나. 설비 및 교구                      1) ~ 4) (현행과 같음)  <b>5) 소독기(살균기) 1대 이상</b> </td> </tr> </tbody> </table>	교수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5. 의복	나. 설비 및 교구 <b>1) 재봉틀 10대 이상</b> <b>2) 마네킹 5대 이상</b> <b>3) 다리미 10대 이상</b>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6. 식음료품 (조리)	나. 설비 및 교구 1) ~ 4) (현행과 같음) <b>5) 소독기(살균기) 1대 이상</b>
교수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생략)	(생략)																
25. 의복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이상 2) 시침각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러쉬 1세트 이상 4) 모터미싱 10대 이상 5) 디자인 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6) 인대(마네킹) 5대 이상 7) 컴퓨터 2대 이상 8) 다리미 10대 이상																
26. 식음료품 (조리)	나. 설비 및 교구 1) ~ 4) (생략) 5) 제독시설																
교수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5. 의복	나. 설비 및 교구 <b>1) 재봉틀 10대 이상</b> <b>2) 마네킹 5대 이상</b> <b>3) 다리미 10대 이상</b>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6. 식음료품 (조리)	나. 설비 및 교구 1) ~ 4) (현행과 같음) <b>5) 소독기(살균기) 1대 이상</b>																

현 행		개 정 안	
27. 식음 료품 (제과· 제빵)	나. 설비 및 교구 1) ~ 5) (생략) 6) 추저울(5kg 이상) 10대 이상	27. 식음 료품 (제과· 제빵)	나. 설비 및 교구 1) ~ 5) (현행과 같음) <b>6) 저울 10대 이상</b>
30. 산업 디자인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 4) 생략 <b>&lt;신 설&gt;</b>	30. 디자인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 4) (현행과 같음) <b>5) 패션(의복)디자인 과정 가)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이상 나) 시침각기구 1대 이상 다) 에어브러시 1세트 이상 라) 디자인 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마) 마네킹 5대 이상 바) 컴퓨터 2대 이상 사) 재봉틀 5대 이상</b>
32. 이용· 비용 (이용)	나. 설비 및 교구 1) ~ 2) (생략) 3) 건발기 2대 이상 4) (생략)	32. 이용· 비용 (이용)	나. 설비 및 교구 1) ~ 2) (현행과 같음) <b>3) 헤어드라이어 2대 이상</b> 4) (현행과 같음)
33. 이용· 비용 (비용)	나. 설비 및 교구 1) 헤어과정 가) 인두(마네킹) 20개 이상 나) 건발기(드라이) 10조 이상 다) (생략) 라) 미안대(거울) 10조 이상 마) ~ 자) (생략) 2) 피부미용과정 가) (생략) 나) 미안대(거울) 10조 이상 3) (생략)	33. 이용· 비용 (비용)	나. 설비 및 교구 1) 헤어과정 <b>가) 두상 마네킹 20개 이상 나) 헤어드라이어 10대 이상</b> 다) (현행과 같음) <b>라) 거울 10조 이상</b> 마) ~ 자) (현행과 같음) 2) 피부미용과정 가) (현행과 같음) <b>나) 거울 10조 이상</b> 3) (현행과 같음)
34. 세탁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세탁기(대형) 1대 이상 2) 다리미 10대 이상 3) 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4) 건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삭 제>	<삭 제>
49. 미술	나. 설비 및 교구 1) (생략) 2) 서양화 과정: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3) (생략)	나. 설비 및 교구 1) (현행과 같음) <b>2) 서양화과정: 석고 및 석고대 또는 정물 및 정물대</b>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b>[별표 4]</b> 위반 사항별 행정처분 기준(제12조 관련)					<b>[별표 4]</b> 위반 사항별 행정처분 기준(제12조 관련)				
구분	위 반 사 항	반복횟수별 접수			구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 제1항 위반(학원)					1. 법 제17조 제1항 위반(학원)				
가. 시설	1) 시설 기준 미달	시정 명령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가. 시설	1) 시설 기준 미달	시정 명령 및 경고	---	---
	2) 시설 임의 변경	시정 명령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2) 시설 임의 변경	시정 명령 및 경고	---	---
	3) ~ 4) (생략)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설비·교구 기준 미달	시정 명령	경고	교습 정지
	<신 설>					6) 설비·교구 임의 변경	시정 명령	경고	교습 정지
바. 운영	1) ~ 4) (생략)	(생략)			바. 운영	1)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등록증 미게시 또는 거짓 게시	(생략)				5) 등록증명서 미게시 또는 거짓 게시	(현행과 같음)		
	6) ~ 10) (생략)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거짓·과대광고	시정 명령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11) 거짓·과대광고	시정 명령 및 경고	---	---
	12)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환경 불량	시정 명령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13) 환경 불량	시정 명령 및 경고	---	---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 반 사 항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 반 사 항	반복횟수별 점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바. 운영	14) ~ 16) (생략)	(생략)			14) ~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7)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17)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및 경고	---	---	
	18)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 말소			18)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 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19) (생략)	(생략)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시정명령 (경고)	교습 정지		20)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시정명령 및 경고	---		
2. 법 제17조 제2항 위반(교습소)					2. 법 제17조 제2항 위반(교습소)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강사	강사 무단 채용	교습 정지	폐지		라. 강사	강사 채용	---	---	
바. 운영	1) ~ 8) (생략)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환경 불량	시정명령 (경고)	교습 정지	폐지	9) 환경 불량	시정명령 및 경고	---	---	
	10) ~ 11) (생략)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경고)	교습 정지	폐지	12)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및 경고	---	---	
	13)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 말소			13) <삭 제>				
14) (생략)	(생략)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학습자 모집광고시 표시 사항 위반	시정명령 (경고)	교습 정지		15) 학습자 모집광고시 표시 사항 위반	시정명령 및 경고	---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 반 사 항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 반 사 항	반복횟수별 점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법 제17조 제3항 위반(개인과의교습자)					3. 법 제17조 제3항 위반(개인과의교습자)				
가. ~ 바. (생략)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	주거지 개인과의교습자 표지 미부착	시정명령 (경고)	교습 정지	중지	사.	주거지 개인과의교습자 표지 미부착	시정명령 및 경고	---	---
아.	교습비 등 미 계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계시·표시	시정명령 (경고)	교습 정지	중지	아.	교습비 등 미 계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계시·표시	시정명령 및 경고	---	---
자.	학습자 모집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시정명령 (경고)	교습 정지		자.	학습자 모집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시정명령 및 경고	---	
<신 설>					차.	강사 채용	교습 정지	중지	
<신 설>					카.	거짓, 과대광고	시정명령 및 경고	교습 정지	중지
<신 설>					타.	교습비 등 영수증 미교부	경고	교습 정지	중지
<신 설>					파.	교습비 등 미반환	시정명령	교습 정지	중지
<신 설>					하.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고	교습 정지	중지
<신 설>					거.	교습시간 연장운영	경고	교습 정지	중지
<신 설>					너.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경고	교습 정지	중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나목 중 “승인”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  
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및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승인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1.·2. (생략)</p> <p>3. 사립 소속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의 운영관리와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및 차입금 <u>승인</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바. (생략)</p> <p>4. 공·사립 관내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학습환경 조사</p> <p style="padding-left: 20px;">마. (생략)</p> <p>5. ~ 11. (생략)</p> <p>〈<u>신 설</u>〉</p>	<p>제3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p> <p>---</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p> <p>-----</p> <p>----- <u>허가</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바. (현행과 같음)</p> <p>4. -----</p> <p>-----</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 style="padding-left: 20px;">마. (현행과 같음)</p> <p>5. ~ 11. (현행과 같음)</p> <p>12. 「<u>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u>」 제5조 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및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에 관한 사항</p>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제2조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로, “별표 5와”를 “별표 5, 별표 6과”로 한다.

별표 1 중 구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농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금천초등학교문명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울곡유치원”란 다음에 “울빛유치원”, “농소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울빛유치원	김천시 남면 옥산길 112-11
농소유치원	김천시 울곡동 21

“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구미문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미인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구미문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9길 13
구미인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미시 산동면 신당인덕3로 25

“안평초등학교신평분교장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이두초등학교병설  
 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이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105

“약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새벗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새벗유치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1

포항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 중 “포항시 북구 우현동 18  
 블럭-1롯데”를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73”으로, 운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위치란 중 “김천시 율곡동 535”를 “김천시 용전4로  
 3길 7”로, 영주가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 중 “영주시 가흥동  
 1857”을 “영주시 대동로70번길 8-9”로 하고, 태화초등학교병설  
 유치원 명칭란 중 “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봉계초등학교  
 태화분교장병설유치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금천초등학교문명분교장, 가천초등학교무학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포항송곡초등학교”란 다음에 “양서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양서초등학교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12

“남계초등학교”란 다음에 “구미문성초등학교”, “구미인덕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구미문성초등학교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9길 13
구미인덕초등학교	구미시 산동면 신당인덕3로 25

포항중앙초등학교 위치란 중 “포항시 북구 우현동 18블럭-1 롯트”를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73”으로, 농소초등학교 위치란 중 “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52-9”를 “김천시 율곡동 21”로, 윤곡초등학교 위치란 중 “김천시 율곡동 535”를 “김천시 용전4로3길 7”로, 영주가흥초등학교 위치란 중 “영주시 가흥동 1857”을 “영주시 대동로70번길 8-9”로 하고,

태화초등학교 명칭란 중 “태화초등학교”를 “봉계초등학교태화분교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도산중학교, 임동중학교, 안동중학교와룡분교장, 안동중학교인계분교장, 길주중학교녹전분교장, 풍각중학교각북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장흥중학교”란 다음에 “양덕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양덕중학교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

“풍천중학교”란 다음에 “웅부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웅부중학교	안동시 도산면 온천로 620-4

별표 4 중 소천고등학교란을 삭제하고,

영천상업고등학교 명칭란 중 “영천상업고등학교”를 “경북식품과학  
마이스터고등학교”로, 경북관광고등학교 명칭란 중 “경북관광고등  
학교”를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로 하며, 감천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경북일고등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5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다지역>의 “가천초등학교무학분교장”란을 삭제  
하고, <라지역>의 “금천초등학교문명분교장”, “안동중학교인계분  
교장”, “소천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며, “경북관광고등학교”를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6]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명 칭	위 치
포항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포항시 북구 학산로 45
포항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항시 북구 아호로 50
김천중앙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김천시 남김천대로 3363
안동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안동시 강남로 550
구미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구미시 문장로 42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설치)</b> 경상북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u>고등학교</u> 및 특수학교를 설치 한다.</p> <p><b>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b>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u>고등학교</u> 및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그 위치는 <u>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다.</u></p> <p><b>【별표 1】 유치원</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구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김천시 구성면 상원길 46</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농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52-9</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금천초등학교문명분교장 병설유치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청도군 윤문면 윤문로 1558</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u>구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u>	<u>김천시 구성면 상원길 46</u>	<u>농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u>	<u>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52-9</u>	<u>금천초등학교문명분교장 병설유치원</u>	<u>청도군 윤문면 윤문로 1558</u>	〈신 설〉	_____	〈신 설〉	_____	〈신 설〉	_____	<p><b>제1조(설치)</b> ----- ----- ----- <u>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u>-----.</p> <p><b>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b> ----- <u>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u> ----- <u>별표 5, 별표 6과 ---.</u></p> <p><b>【별표 1】 유치원</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삭 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삭 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삭 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윤빛유치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김천시 남면 옥산길 112-11</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농소유치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김천시 율곡동 21</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구미문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구미시 고아읍 들성로9길 13</u></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삭 제〉	_____	〈삭 제〉	_____	〈삭 제〉	_____	<u>윤빛유치원</u>	<u>김천시 남면 옥산길 112-11</u>	<u>농소유치원</u>	<u>김천시 율곡동 21</u>	<u>구미문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u>	<u>구미시 고아읍 들성로9길 13</u>
명 칭	위 치																												
<u>구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u>	<u>김천시 구성면 상원길 46</u>																												
<u>농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u>	<u>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52-9</u>																												
<u>금천초등학교문명분교장 병설유치원</u>	<u>청도군 윤문면 윤문로 1558</u>																												
〈신 설〉	_____																												
〈신 설〉	_____																												
〈신 설〉	_____																												
명 칭	위 치																												
〈삭 제〉	_____																												
〈삭 제〉	_____																												
〈삭 제〉	_____																												
<u>윤빛유치원</u>	<u>김천시 남면 옥산길 112-11</u>																												
<u>농소유치원</u>	<u>김천시 율곡동 21</u>																												
<u>구미문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u>	<u>구미시 고아읍 들성로9길 13</u>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구미인덕초등학교병설 유치원	구미시 산동면 신당인덕3로 25
〈신 설〉		이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105
〈신 설〉		새벗유치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1
포항중앙초등학교병설 유치원	포항시 북구 우현동 18블럭-1로트	-----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73
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천시 율곡동 535	-----	김천시 용전4로3길 7
영주가흥초등학교병설 유치원	영주시 가흥동 1857	-----	영주시 대동로70번길 8-9
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천시 봉산면 봉산1로 43	봉계초등학교태화분교장 병설유치원	김천시 봉산면 봉산1로 43
<b>【별표 2】 초등학교</b>		<b>【별표 2】 초등학교</b>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금천초등학교문명분교장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1558	〈신 제〉	
가천초등학교무학분교장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587-4	〈신 제〉	
〈신 설〉		양서초등학교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12
〈신 설〉		구미문성초등학교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9길 13
〈신 설〉		구미인덕초등학교	구미시 산동면 신당인덕3로 25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포항중앙초등학교	포항시 북구 <u>우현동 18블럭-1롯데</u>	-----	포항시 북구 <u>우창동로 73</u>
농소초등학교	김천시 <u>농소면 농남로 52-9</u>	-----	김천시 <u>율곡동 21</u>
운곡초등학교	김천시 <u>율곡동 535</u>	-----	김천시 <u>용전4로3길 7</u>
영주가흥초등학교	영주시 <u>가흥동 1857</u>	-----	영주시 <u>대동로70번길 8-9</u>
<u>태화초등학교</u>	김천시 봉산면 <u>봉산1로 43</u>	<u>봉계초등학교태화분교장</u>	김천시 봉산면 <u>봉산1로 43</u>
<b>【별표 3】 중학교</b>		<b>【별표 3】 중학교</b>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u>도산중학교</u>	<u>안동시 도산면 온천로 620-4</u>	〈삭_____제〉	
<u>입동중학교</u>	<u>안동시 입동면 편향길 53</u>	〈삭_____제〉	
<u>안동중학교와룡분교장</u>	<u>안동시 와룡면 장수골길 17</u>	〈삭_____제〉	
<u>안동중학교인계분교장</u>	<u>안동시 예안면 농암로 2055</u>	〈삭_____제〉	
<u>길주중학교녹전분교장</u>	<u>안동시 녹전면 온천로 29</u>	〈삭_____제〉	
<u>풍각중학교각북분교장</u>	<u>청도군 각북면 남산길 26</u>	〈삭_____제〉	
〈신_____설〉		<u>양덕중학교</u>	<u>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u>
〈신_____설〉		<u>응부중학교</u>	<u>안동시 도산면 온천로 620-4</u>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별표 4】 고등학교</b>		<b>【별표 4】 고등학교</b>		
명	칭	명	칭	위
				치
	<u>소천고등학교</u>		〈 <u>삭</u>	〈 <u>제</u>
	<u>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37</u>			
	<u>영천상업고등학교</u>	<u>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u>	<u>고등학교</u>	영천시 신녕면 찰방길 8
	영천시 신녕면 찰방길 8			
	<u>경북관광고등학교</u>	<u>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u>		문경시 문경읍 향교길 20
	문경시 문경읍 향교길 20			
	<u>감천고등학교</u>	<u>경북일고등학교</u>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5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429			
<u>〈신 설〉</u>		<b>【별표 6】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b>		
		명	칭	위
				치
		<u>포항중학교부설</u>		<u>포항시 북구 학산로 45</u>
		<u>방송통신중학교</u>		
		<u>포항고등학교부설</u>		<u>포항시 북구 아호로 50</u>
		<u>방송통신고등학교</u>		
		<u>김천중앙고등학교부설</u>		<u>김천시 남김천대로 3363</u>
		<u>방송통신고등학교</u>		
		<u>안동고등학교부설</u>		<u>안동시 강남로 550</u>
		<u>방송통신고등학교</u>		
		<u>구미고등학교부설</u>		<u>구미시 문장로 42</u>
		<u>방송통신고등학교</u>		

## 二 예산안 二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17. 11. 10)
-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교육감('17. 11. 10)
-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지사('17. 12. 1)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감('17. 12. 1)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1. 주요내용

□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802,493,000	100.00%	7,437,866,000	100.00%	364,627,000	4.90%
일반회계	7,072,400,000	90.64%	6,751,100,000	90.77%	321,300,000	4.76%
특별회계	730,093,000	9.36%	686,766,000	9.23%	43,327,000	6.31%
기타특별회계	730,093,000	9.36%	686,766,000	9.23%	43,327,000	6.3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80,298,000	6.16%	455,902,000	6.13%	24,396,000	5.35%
치수사업특별회계	6,300,000	0.08%	3,420,000	0.05%	2,880,000	84.2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563,000	0.03%	1,563,000	0.02%	1,000,000	63.98%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04,800,000	1.34%	96,345,000	1.30%	8,455,000	8.7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3,032,000	0.42%	34,694,000	0.47%	△1,662,000	△4.79%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9,000,000	0.12%	10,000,000	0.13%	△1,000,000	△10.00%
소방안전특별회계	94,100,000	1.21%	84,842,000	1.14%	9,258,000	10.91%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802,493,000	100.00%	7,437,866,000	100.00%	364,627,000	4.90%
100 지방세수입	1,810,000,000	23.20%	1,751,000,000	23.54%	59,000,000	3.37%
110 지방세	1,810,000,000	23.20%	1,751,000,000	23.54%	59,000,000	3.37%
200 세외수입	155,889,848	2.00%	121,316,357	1.63%	34,573,491	28.50%
210 경상적세외수입	62,913,359	0.81%	30,503,400	0.41%	32,409,959	106.25%
220 임시적세외수입	92,976,489	1.19%	90,812,957	1.22%	2,163,532	2.38%
300 지방교부세	869,284,100	11.14%	834,100,000	11.21%	35,184,100	4.22%
310 지방교부세	869,284,100	11.14%	834,100,000	11.21%	35,184,100	4.22%
500 보조금	4,297,489,796	55.08%	4,103,153,957	55.17%	194,335,839	4.74%
510 국고보조금등	4,297,489,796	55.08%	4,103,153,957	55.17%	194,335,839	4.74%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69,829,256	8.58%	628,295,686	8.45%	41,533,570	6.61%
710 보전수입등	240,891,000	3.09%	152,172,000	2.05%	88,719,000	58.30%
720 내부거래	428,938,256	5.50%	476,123,686	6.40%	△47,185,430	△9.91%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802,493,000	100.00%	7,437,866,000	364,627,000	4.90%
010 일반공공행정	952,402,173	12.21%	933,291,614	19,110,559	2.05%
020 공공질서 및 안전	247,037,993	3.17%	242,491,740	4,546,253	1.87%
050 교육	83,409,016	1.07%	77,077,376	6,331,640	8.21%
060 문화및관광	452,130,562	5.79%	493,574,943	△41,444,381	△8.40%
070 환경보호	567,701,591	7.28%	547,334,229	20,367,362	3.72%
080 사회복지	2,836,208,057	36.35%	2,497,233,231	338,974,826	13.57%
090 보건	129,282,474	1.66%	102,946,394	26,336,080	25.58%
100 농림해양수산	986,925,132	12.65%	1,036,242,453	△49,317,321	△4.76%
110 산업·중소기업	210,002,921	2.69%	192,456,773	17,546,148	9.12%
120 수송 및 교통	297,189,553	3.81%	317,983,617	△20,794,064	△6.54%
140 국토 및 지역개발	424,348,111	5.44%	410,805,351	13,542,760	3.30%
150 과학기술	34,602,710	0.44%	33,392,640	1,210,070	3.62%
160 예비비	70,724,000	0.91%	85,658,700	△14,934,700	△17.44%
900 기타	510,528,707	6.54%	467,376,939	43,151,768	9.23%

□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 고
총 계	1,185,032,470 (1,113,332,964)	1,185,032,470 (1,113,332,964)	
통합관리기금	71,699,506	71,699,506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100,112	100,112	
중소기업육성기금	274,389,273	274,389,273	
문화예술진흥기금	783,837	783,837	
체육진흥기금	240,482	240,482	
농어촌진흥기금	111,105,664	111,105,664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22,985	22,985	
포플라장학기금	26,227	26,227	
사회복지기금	512,478	512,478	
재해구호기금	45,132,512	45,132,512	
양성평등기금	83,823	83,823	
청소년육성기금	112,517	112,517	
다문화가족지원기금	169,601	169,601	
식품진흥기금	8,158,294	8,158,294	
재난관리기금	52,523,991	52,523,991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5,156,250	15,156,250	
남북교류협력기금	565,600	565,600	
국제협력기금	16,713	16,713	
농식품수출진흥기금	3,473,000	3,473,000	
에너지사업육성기금	6,993,672	6,993,672	
지역개발기금	593,765,933	593,765,933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감액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세 서쪽	실 국 명	내 용(부기명)	조 정 내 역			비 교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 감 액	
<b>총계</b>		<b>24건</b>	<b>11,944,894</b>	<b>9,324,000</b>	<b>△2,620,894</b>	
52	미래전략기획단	경북신전략프로젝트개발사업	200,000	100,000	△100,000	
73	기획조정실	대구경북연구원운영지원	3,900,000	3,800,000	△100,000	
74	기획조정실	지방분권촉진 및 활성화사업지원	150,000	100,000	△50,000	
74	기획조정실	지방분권아카데미	50,000	30,000	△20,000	
91	기획조정실	열린혁신홍보단운영	150,000	50,000	△100,000	
110	창조경제산업실	경북로봇산업정책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710,000	510,000	△200,000	
166	일자리민생본부	경상북도청년정책위원회운영 등	10,000	0	△10,000	
173	일자리민생본부	협동조합활성화 홍보	150,000	0	△150,000	
174	일자리민생본부	협동조합교육컨설팅지원사업	45,000	0	△45,000	
174	일자리민생본부	협동조합인큐베이팅사업	45,000	0	△45,000	
174	일자리민생본부	바른소비실천학교지정운영	10,000	0	△10,000	
227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노래자랑	300,000	240,000	△60,000	
236	여성가족정책관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 사업운영지원	65,000	50,000	△15,000	
291	자치행정국	물품구입 및 노후집기교체	800,000	750,000	△50,000	
311	자치행정국	청소년정보화역기능예방사업	50,000	0	△50,000	

(단위 : 천원)

명세 서쪽	실 국 명	내 용(부기명)	조 정 내 역			비 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 감 액	
342	복지건강국	할매할배의날홍보 및 홍보물제작	150,000	100,000	△50,000	
342	복지건강국	할매할배의날전국화사업	200,000	150,000	△50,000	
346	복지건강국	요양보호사종합지원사업	596,500	270,000	△326,500	
347	복지건강국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설치	51,500	0	△51,500	
455	문화관광체육국	창작오페라석주이상룡	400,000	200,000	△200,000	
470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엑스포운영지원	3,500,000	2,694,000	△806,000	
527	환경산림자원국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지원	170,000	100,000	△70,000	
533	환경산림자원국	야생동물에의한인명피해보상보험	230,000	180,000	△50,000	
602	환경산림자원국	임도사업대장정리	11,894	0	△11,894	

[감액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세 서쪽	실 국 명	내 용(부기명)	조 정 내 역			비 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 감 액	
<b>총계</b>		<b>5건</b>	<b>11,783,000</b>	<b>14,403,894</b>	<b>2,620,894</b>	
1097	도민안전실	풍수해보험사업	100,000	200,000	100,000	
1098	도민안전실	지진대비행동요령등도민순회교육	50,000	100,000	50,000	
1098	도민안전실	마을별대피소안내지도 등 제작	133,000	903,894	770,894	
1098	도민안전실	공공건축물내진보강사업	500,000	1,100,000	600,000	
1203	소방본부	소방안전특별회계전출금	11,000,000	12,100,000	1,100,000	

[세입증액조서]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명세 서쪽	실 국 명	내용(부기명)	조 정 내 역			비 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 감 액	
총계		1건	11,000,000	12,100,000	1,100,000	
1277	소방본부	일반회계전입금	11,000,000	12,100,000	1,100,000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출감액조서]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명세 서쪽	실 국 명	내용(부기명)	조 정 내 역			비 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 감 액	
총계		1건	50,000	-	△50,000	
147	창조경제산업실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지원	50,000	0	△50,000	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증액조서]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명세 서쪽	실 국 명	내용(부기명)	조 정 내 역			비 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 감 액	
총계		2건	2,500,000	3,650,000	1,150,000	
1285	소방본부	구조 및 대테러장비보강	2,500,000	3,600,000	1,100,000	소방안전 특별회계
	창조경제산업실 (원자력산업정책과)	내부유보금	0	50,000	50,000	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12일

1. 주요내용

총괄

○ 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4,103,546,000	4,001,281,144	102,264,856	2.6%

○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수입 항목					지출 항목			
계	전입금	용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계	비용자성사업비	용자성사업비	예치금 등
270,456,887	31,000,000	3,000,000	233,253,920	3,202,967	270,456,887	17,580,824	5,300,000	247,576,063

예산안

○ 세입(관별)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률
<b>합 계</b>	<b>4,103,546,000</b>	<b>100.0</b>	<b>4,001,281,144</b>	<b>100.0</b>	<b>102,264,856</b>	<b>2.6</b>
<b>1. 이전수입</b>	<b>4,014,987,334</b>	<b>97.8</b>	<b>3,679,285,131</b>	<b>92.0</b>	<b>335,702,203</b>	<b>9.1</b>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3,622,116,281	88.3	3,281,049,400	82.0	341,066,881	10.4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89,107,796	9.5	396,730,381	9.9	△7,622,585	△1.9
다. 기타이전수입	3,763,257	0.1	1,505,350	0.0	2,257,907	150.0
<b>2. 자체수입</b>	<b>46,930,666</b>	<b>1.1</b>	<b>36,493,394</b>	<b>0.9</b>	<b>10,437,272</b>	<b>28.6</b>
가. 교수·학습활동수입	27,339,074	0.7	28,228,857	0.7	△889,783	△3.2
나. 행정활동수입	793,591	0.0	966,925	0.0	△173,334	△17.9
다. 자산수입	3,961,162	0.1	1,272,673	0.0	2,688,489	211.2
라. 이자수입	6,116,696	0.1	6,020,196	0.2	96,500	1.6
마. 기타수입	8,720,143	0.2	4,743	0.0	8,715,400	183752.9
<b>3. 차입</b>	<b>0</b>	<b>0.0</b>	<b>192,260,354</b>	<b>4.8</b>	<b>△192,260,354</b>	<b>순감</b>
가. 지방교육채	0	0.0	192,260,354	4.8	△192,260,354	순감
<b>4. 기타</b>	<b>41,628,000</b>	<b>1.0</b>	<b>93,242,265</b>	<b>2.3</b>	<b>△51,614,265</b>	<b>△55.4</b>
가. 전년도이월금	41,628,000	1.0	93,242,265	2.3	△51,614,265	△55.4

○ 세 출  
- 정책사업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b>합 계</b>	<b>4,103,546,000</b>	<b>100.0</b>	<b>4,001,281,144</b>	<b>100.0</b>	<b>102,264,856</b>	<b>2.6</b>
<b>1. 유아 및 초중등교육</b>	<b>3,926,206,513</b>	<b>95.7</b>	<b>3,825,411,500</b>	<b>95.6</b>	<b>100,795,013</b>	<b>2.6</b>
가. 인적자원운용	1,924,262,135	46.9	1,875,431,475	46.9	48,830,660	2.6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231,684,638	5.6	167,324,680	4.2	64,359,958	38.5
다. 교육복지지원	410,974,707	10.0	505,327,291	12.6	-94,352,584	△18.7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40,251,726	1.0	20,664,473	0.5	19,587,253	94.8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872,969,332	21.3	835,890,426	20.9	37,078,906	4.4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46,063,975	10.9	420,773,155	10.5	25,290,820	6.0
<b>2. 평생·직업교육</b>	<b>13,995,163</b>	<b>0.3</b>	<b>12,842,348</b>	<b>0.3</b>	<b>1,152,815</b>	<b>9.0</b>
가. 평생교육	6,409,203	0.2	5,780,498	0.1	628,705	10.9
나. 직업교육	7,585,960	0.2	7,061,850	0.2	524,110	7.4
<b>3. 교육일반</b>	<b>163,344,324</b>	<b>4.0</b>	<b>163,027,296</b>	<b>4.1</b>	<b>317,028</b>	<b>0.2</b>
가. 교육행정일반	59,306,298	1.4	33,394,833	0.8	25,911,465	77.6
나. 기관운영관리	41,626,432	1.0	49,237,620	1.2	△7,611,188	△15.5
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44,411,594	1.1	44,473,295	1.1	△61,701	△0.1
라. 예비비 및 기타	18,000,000	0.4	35,921,548	0.9	△17,921,548	△49.9

○ 세 출  
- 성질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b>합 계</b>	<b>4,103,546,000</b>	<b>100.0</b>	<b>4,001,281,144</b>	<b>100.0</b>	<b>102,264,856</b>	<b>2.6</b>
<b>100 인건비</b>	<b>1,549,493,832</b>	<b>37.8</b>	<b>1,534,402,302</b>	<b>38.3</b>	<b>15,091,530</b>	<b>1.0</b>
110 인건비	1,549,493,832	37.8	1,534,402,302	38.3	15,091,530	1.0
<b>200 물건비</b>	<b>172,099,144</b>	<b>4.2</b>	<b>139,839,371</b>	<b>3.5</b>	<b>32,259,773</b>	<b>23.1</b>
210 운영비	95,692,430	2.3	68,526,436	1.7	27,165,994	39.6
220 여비	12,020,490	0.3	11,544,311	0.3	476,179	4.1
230 업무추진비	3,811,552	0.1	3,253,407	0.1	558,145	17.2
240 복리후생비	44,802,645	1.1	40,508,463	1.0	4,294,182	10.6
250 직무수행경비	15,202,030	0.4	15,304,200	0.4	-102,170	△0.7
260 연구개발비	469,997	0.0	602,554	0.0	-132,557	△22.0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00,000	0.0	100,000	0.0	0	0.0
<b>300 이전지출</b>	<b>433,919,124</b>	<b>10.6</b>	<b>417,911,933</b>	<b>10.4</b>	<b>16,007,191</b>	<b>3.8</b>
310 보전금	9,721,317	0.2	8,162,981	0.2	1,558,336	19.1
320 민간이전	332,962,647	8.1	308,339,592	7.7	24,623,055	8.0
330 자치단체이전	91,235,160	2.2	101,409,360	2.5	-10,174,200	△10.0
<b>400 자산취득</b>	<b>475,306,925</b>	<b>11.6</b>	<b>508,370,723</b>	<b>12.7</b>	<b>-33,063,798</b>	<b>△6.5</b>
410 토지매입비	4,382,987	0.1	36,933,679	0.9	-32,550,692	△88.1
420 건설비	404,335,465	9.9	347,350,876	8.7	56,984,589	16.4
430 유형자산	34,181,623	0.8	19,924,668	0.5	14,256,955	71.6
440 무형자산	1,156,850	0.0	4,911,500	0.1	-3,754,650	△76.4
460 기금적립	31,000,000	0.8	99,000,000	2.5	-68,000,000	△68.7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250,000	0.0	250,000	0.0	0	0.0
<b>500 상환지출</b>	<b>38,335,914</b>	<b>0.9</b>	<b>38,492,475</b>	<b>1.0</b>	<b>-156,561</b>	<b>△0.4</b>
510 상환지출	38,335,914	0.9	38,492,475	1.0	-156,561	△0.4
<b>600 전출금 등</b>	<b>1,416,381,061</b>	<b>34.5</b>	<b>1,326,332,792</b>	<b>33.1</b>	<b>90,048,269</b>	<b>6.8</b>
610 전출금 등	28,455,002	0.7	16,757,997	0.4	11,697,005	69.8
620 학교회계전출금	1,387,926,059	33.8	1,309,574,795	32.7	78,351,264	6.0
<b>700 예비비 및 기타</b>	<b>18,010,000</b>	<b>0.4</b>	<b>35,931,548</b>	<b>0.9</b>	<b>-17,921,548</b>	<b>△49.9</b>
710 예비비 및 기타	18,010,000	0.4	35,931,548	0.9	-17,921,548	△49.9

□ 기금운용계획안

○ 수입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항목				
	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합계	270,456,887	31,000,000	3,000,000	233,253,920	3,202,967
공무원복지기금	6,787,549		3,000,000	3,742,549	45,000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63,669,338	31,000,000		229,511,371	3,157,967

○ 지출

(단위 : 천원)

기금명	지출항목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
합계	270,456,887	17,580,824	5,300,000	247,576,063
공무원복지기금	6,787,549		5,300,000	1,487,549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63,669,338	17,580,824		246,088,514

2018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감액조서]

(단위 : 천원)

예산 서쪽	소관부서	내용(부기명)	조 정 내 역			비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총계		1건	15,116,460	13,116,460	△2,000,000	
777	재무정보과	2. 학교정보화장비보급	15,116,460	13,116,460	△2,000,00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예산 서쪽	소관부서명	내용(부기명)	조 정 내 역			비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총계		1건	18,000,000	20,000,000	2,000,000	
	기획조정관	예비비	18,000,000	20,000,000	2,000,000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1.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감 륜	증 감 륜
총 계	7,953,045,000	100.00%	7,936,067,500	100.00%	16,977,500	0.21%
일반회계	7,214,090,000	90.71%	7,197,941,000	90.70%	16,149,000	0.22%
특별회계	738,955,000	9.29%	738,126,500	9.30%	828,500	0.11%
기타특별회계	738,955,000	9.29%	738,126,500	9.30%	828,500	0.1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503,636,138	6.33%	500,754,869	6.31%	2,881,269	0.58%
치수사업특별회계	18,390,550	0.23%	8,377,686	0.11%	10,012,864	119.5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898,086	0.11%	8,898,086	0.11%	0	0.00%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82,820,399	1.04%	82,820,399	1.04%	0	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8,281,703	0.23%	33,281,703	0.42%	△15,000,000	△45.07%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10,027,757	0.13%	10,027,757	0.13%	0	0.00%
소방안전특별회계	96,900,367	1.22%	93,966,000	1.18%	2,934,367	3.12%

2.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감 륜	증 감 륜
총 계	7,953,045,000	100.00%	7,936,067,500	100.00%	16,977,500	0.21%
100 지방세수입	1,751,000,000	22.02%	1,751,000,000	22.06%	0	0.00%
110 지방세	1,751,000,000	22.02%	1,751,000,000	22.06%	0	0.00%
200 세외수입	138,825,067	1.75%	139,885,245	1.76%	△1,060,178	△0.76%
210 경상적세외수입	40,899,667	0.51%	30,538,737	0.38%	10,360,930	33.93%
220 임시적세외수입	97,925,400	1.23%	109,346,508	1.38%	△11,421,108	△10.44%
300 지방교부세	956,594,734	12.03%	949,132,367	11.96%	7,462,367	0.79%
310 지방교부세	956,594,734	12.03%	949,132,367	11.96%	7,462,367	0.79%
500 보조금	4,299,435,195	54.06%	4,289,313,762	54.05%	10,121,433	0.24%
510 국고보조금등	4,299,435,195	54.06%	4,289,313,762	54.05%	10,121,433	0.24%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7,190,004	10.15%	806,736,126	10.17%	453,878	0.06%
710 보전수입 등	315,568,202	3.97%	315,114,324	3.97%	453,878	0.14%
720 내부거래	491,621,802	6.18%	491,621,802	6.19%	0	0.00%

### 3.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7,953,045,000	100.00%	7,936,067,500	100.00%	16,977,500	0.21%
010 일반공공행정	1,031,202,739	12.97%	1,019,273,295	12.84%	11,929,444	1.17%
020 공공질서 및 안전	275,602,007	3.47%	270,115,591	3.40%	5,486,416	2.03%
050 교육	80,766,492	1.02%	78,756,376	0.99%	2,010,116	2.55%
060 문화 및 관광	557,180,524	7.01%	558,969,002	7.04%	△1,788,478	△0.32%
070 환경보호	575,116,008	7.23%	563,517,258	7.10%	11,598,750	2.06%
080 사회복지	2,614,450,049	32.87%	2,613,346,369	32.93%	1,103,680	0.04%
090 보건	134,226,084	1.69%	133,005,251	1.68%	1,220,833	0.92%
100 농림해양수산	1,092,539,789	13.74%	1,073,256,832	13.52%	19,282,957	1.80%
110 산업·중소기업	205,974,725	2.59%	204,900,674	2.58%	1,074,051	0.52%
120 수송 및 교통	381,622,860	4.80%	372,107,343	4.69%	9,515,517	2.56%
140 국토 및 지역개발	452,668,286	5.69%	463,991,473	5.85%	△11,323,187	△2.44%
150 과학기술	37,421,640	0.47%	37,551,640	0.47%	△130,000	△0.35%
160 예비비	37,284,850	0.47%	67,720,300	0.85%	△30,435,450	△44.94%
900 기타	476,988,947	6.00%	479,556,096	6.04%	△2,567,149	△0.54%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1.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추경증감	기정예산	합 계	증감률
54,144,470	4,504,202,854	4,558,347,324	1.2

2. 세입(관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증감		기정예산		합 계	
	추경증감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합 계	증감률
<b>합 계</b>	<b>54,144,470</b>	<b>100.0</b>	<b>4,504,202,854</b>	<b>100.0</b>	<b>4,558,347,324</b>	<b>1.2</b>
<b>1. 이전수입</b>	<b>43,186,368</b>	<b>79.8</b>	<b>4,132,052,038</b>	<b>91.7</b>	<b>4,175,238,406</b>	<b>1.0</b>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19,659,606	36.3	3,716,226,307	82.5	3,735,885,913	0.5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843,025	38.5	409,457,432	9.1	430,300,457	5.1
다. 기타이전수입	2,683,737	5.0	6,368,299	0.1	9,052,036	42.1
<b>2. 자체수입</b>	<b>10,958,102</b>	<b>20.2</b>	<b>59,541,028</b>	<b>1.3</b>	<b>70,499,130</b>	<b>18.4</b>
가. 교수-학습활동수입	△1,277,741	△2.4	28,228,857	0.6	26,951,116	△4.5
나. 행정활동수입	△171,395	△0.3	989,107	0.0	817,712	△17.3
다. 자산수입	6,507,597	12.0	15,304,893	0.3	21,812,490	42.5
라. 이자수입	1,184	0.0	6,020,196	0.1	6,021,380	0.0
마. 기타수입	5,898,457	10.9	8,997,975	0.2	14,896,432	65.6
<b>3. 차입</b>	<b>0</b>	<b>0.0</b>	<b>138,948,431</b>	<b>3.1</b>	<b>138,948,431</b>	<b>0.0</b>
가. 지방교육채	0	0.0	138,948,431	3.1	138,948,431	0.0
<b>4. 기타</b>	<b>0</b>	<b>0.0</b>	<b>173,661,357</b>	<b>3.9</b>	<b>173,661,357</b>	<b>0.0</b>
가. 전년도이월금	0	0.0	173,661,357	3.9	173,661,357	0.0

### 3. 세 출

#### ○ 정책사업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증감		기정예산		합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b>합 계</b>	<b>54,144,470</b>	<b>100.0</b>	<b>4,504,202,854</b>	<b>100.0</b>	<b>4,558,347,324</b>	<b>1.2</b>
<b>1. 유아 및 초중등교육</b>	<b>△18,735,325</b>	<b>△34.6</b>	<b>4,192,204,804</b>	<b>93.1</b>	<b>4,173,469,479</b>	<b>△0.4</b>
가. 인적자원운용	△36,515,892	△67.4	1,839,440,230	40.8	1,802,924,338	△2.0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4,254,183	7.9	278,261,035	6.2	282,515,218	1.5
다. 교육복지지원	△4,171,819	△7.7	483,904,155	10.7	479,732,336	△0.9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1,058,153	2.0	36,178,948	0.8	37,237,101	2.9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916,420	3.5	846,660,149	18.8	848,576,569	0.2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4,723,630	27.2	707,760,287	15.7	722,483,917	2.1
<b>2. 평생·직업교육</b>	<b>△177,739</b>	<b>△0.3</b>	<b>15,275,901</b>	<b>0.3</b>	<b>15,098,162</b>	<b>△1.2</b>
가. 평생교육	△85,219	△0.2	7,611,951	0.2	7,526,732	△1.1
나. 직업교육	△92,520	△0.2	7,663,950	0.2	7,571,430	△1.2
<b>3. 교육일반</b>	<b>73,057,534</b>	<b>134.9</b>	<b>296,722,149</b>	<b>6.6</b>	<b>369,779,683</b>	<b>24.6</b>
가. 교육행정일반	1,051,040	1.9	37,956,412	0.8	39,007,452	2.8
나. 기관운영관리	△1,466,488	△2.7	52,170,243	1.2	50,703,755	△2.8
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73,291,231	135.4	156,934,366	3.5	230,225,597	46.7
라. 예비비 및 기타	181,751	0.3	49,661,128	1.1	49,842,879	0.4

○ 성질별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증감		기정예산		합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b>합계</b>	<b>54,144,470</b>	<b>100.0</b>	<b>4,504,202,854</b>	<b>100.0</b>	<b>4,558,347,324</b>	<b>1.2</b>
<b>100 인건비</b>	<b>△21,073,378</b>	<b>△38.9</b>	<b>1,498,020,334</b>	<b>33.3</b>	<b>1,476,946,956</b>	<b>△1.4</b>
110 인건비	△21,073,378	△38.9	1,498,020,334	33.3	1,476,946,956	△1.4
<b>200 물건비</b>	<b>△3,409,031</b>	<b>△6.3</b>	<b>150,376,955</b>	<b>3.3</b>	<b>146,967,924</b>	<b>△2.3</b>
210 운영비	△2,729,081	△5.0	76,416,463	1.7	73,687,382	△3.6
220 여비	△206,122	△0.4	12,579,736	0.3	12,373,614	△1.6
230 업무추진비	△3,347	0.0	3,838,316	0.1	3,834,969	△0.1
240 복리후생비	△381,240	△0.7	41,346,649	0.9	40,965,409	△0.9
250 직무수행경비	△8,400	0.0	15,308,100	0.3	15,299,700	△0.1
260 연구개발비	△80,841	△0.1	787,691	0.0	706,850	△10.3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0	0.0	100,000	0.0	100,000	0.0
<b>300 이전지출</b>	<b>△13,474,128</b>	<b>△24.9</b>	<b>432,235,004</b>	<b>9.6</b>	<b>418,760,876</b>	<b>△3.1</b>
310 보전금	△569,980	△1.1	8,687,258	0.2	8,117,278	△6.6
320 민간이전	△12,904,148	△23.8	322,138,386	7.2	309,234,238	△4.0
330 자치단체이전	0	0.0	101,409,360	2.3	101,409,360	0.0
<b>400 자산취득</b>	<b>△2,925,435</b>	<b>△5.4</b>	<b>635,724,802</b>	<b>14.1</b>	<b>632,799,367</b>	<b>△0.5</b>
410 토지매입비	△14,356,167	△26.5	44,272,186	1.0	29,916,019	△32.4
420 건설비	12,152,122	22.4	470,432,155	10.4	482,584,277	2.6
430 유형자산	△540,890	△1.0	23,087,861	0.5	22,546,971	△2.3
440 무형자산	△180,500	△0.3	4,462,600	0.1	4,282,100	△4.0
460 기금적립	0	0.0	93,220,000	2.1	93,220,000	0.0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0	0.0	250,000	0.0	250,000	0.0
<b>500 상환지출</b>	<b>73,291,231</b>	<b>135.4</b>	<b>150,953,546</b>	<b>3.4</b>	<b>224,244,777</b>	<b>48.6</b>
510 상환지출	73,291,231	135.4	150,953,546	3.4	224,244,777	48.6
<b>600 전출금등</b>	<b>21,553,460</b>	<b>39.8</b>	<b>1,587,221,085</b>	<b>35.2</b>	<b>1,608,774,545</b>	<b>1.4</b>
610 전출금등	60,146	0.1	19,341,796	0.4	19,401,942	0.3
620 학교회계전출금	21,493,314	39.7	1,567,879,289	34.8	1,589,372,603	1.4
<b>700 예비비 및 기타</b>	<b>181,751</b>	<b>0.3</b>	<b>49,671,128</b>	<b>1.1</b>	<b>49,852,879</b>	<b>0.4</b>
710 예비비 및 기타	181,751	0.3	49,671,128	1.1	49,852,879	0.4

## ＝ 동 의 안 ＝

- 2018년도 정기분(2차)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17. 10. 26)
-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교육감('17. 10. 26)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교육감('17. 12. 1)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진 수	수 량	금 액	비 고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건	28,414	60,4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28,414	60,400,000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예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면적)				
1	건물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	• 건축연면적 28,414m <sup>2</sup>	60,400,000	'1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전시·교육장 마련 및 공원 조성</li> <li>• 공개경쟁입찰</li> </ul>	건 축 디자인과 (신 축)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18학년도 중학교 배정 시부터 적용한다.

【별 지】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1) 포항시 제1학교군	포항 포항중앙 포항영흥 포항남부 포항동부 포항향도 포항송도 신흥 청림 대해 송림 대도 인덕 효자 두호 두호남부 양학 이동 죽도 대잠 상대 향구 포항대흥 용흥 장성 창포 장량 포항장흥 포항장원 포항양덕 대이 포항송곡 포항해맞 이 달전 학전 죽천 유강 강동		포항중 대도중 동지중 대동중 포항영신중 장흥중 (남녀공학) 포항향도중 (남녀공학) 상도중 (남녀공학) 송도중 (남녀공학) 용흥중 (남녀공학) 대흥중 (남녀공학) 양학중 (남녀공학) 창포중 (남녀공학) 포항이동중 (남녀공학) 유강중 (남녀공학) <b>양덕중 (남녀공학)</b>	효자초등학교는 포항시1학군 및 제철중학과와 추첨에 의한 배정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2) 포항시 제2학교군	청림 인덕		상도중 송도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졸업생의 희망에 의한 선배정
포항시	(3) 오천	오천 구경 문충 문덕 포항원동 장기 인덕	- 죽정리, 정천리 (기타는 장기중)	신흥중 포항포은중 오천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포항시	(4) 연일	연일 연일형산 대송 남성		영일중 대송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1) 연일, 연일 형산 졸업생 중, 영일중은 희망에 의한 선배정  2) 대송, 남성 졸업생 중, 대송중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청림초등학교 인덕초등학교		남녀공학 남녀공학	상도중학교 송도중학교	
연일초등학교 연일형산초등학교		남녀공학	영일중학교	
대송초등학교 남성초등학교		남녀공학	대송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경주시	(5) 경주시	계림 월성 황남 경주 동방 서라벌 황성 화랑 홍무 신라 동천 유림 용강 용황 사방 모량  내남 현곡 나원 금장 강동  천북 모아 모서분교	- 모량1리, 광명1, 2동 (기타는 무산중)          - 왕신3리 중 사라 (기타는 포항시제1학교군)	신라중 경주중 문화중 월성중 계림중 화랑중	경주여중 서라벌여중 근화여중 선덕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희망에 의한 선 배정 대상학교는 (별지)와 같다.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사방초등학교 현곡초등학교		남 여 남·여	신라중학교 서라벌여자중학교 화랑중학교	
나원초등학교 금장초등학교		남·여	화랑중학교	
강동초등학교 천북초등학교 모아초등학교 모아초모서분교장		남 여 여	신라중학교 서라벌여자중학교 근화여자중학교	
내남초등학교 월성초등학교	- 황남동 12~16통, 18통(2, 3반), 월성동 7통, 내남면 용장4리	남 여	경주중학교 경주여자중학교	
용강초등학교		여	근화여자중학교	
동방초등학교 서라벌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 보덕동 4통, 월성동 21-23통, 24통(2반)	남 여	경주중학교 선덕여자중학교	
경주초등학교 모량초등학교	- 모량1리, 광명1,2동	남 남 여	문화중학교 월성중학교 경주여자중학교	
행남초등학교		남 여 여	경주중학교 경주여자중학교 선덕여자중학교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김천시	(6) 김천시	김천		김천중앙중	김천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 지]와 같다.
		김천중앙		김천중	성의여중	
		김천서부		성의중	한일여중	
		금릉		석천중		
		김천다수		문성중		
		김천모암				
		김천동부				
		양천				
		김천신일				
		김천부곡				
		김천동신				
		농소	- 신촌리, 월곡2리 중 용시, 월곡3리 중 남곡, 월곡4리 (기타는 울곡중)			
		개령서부	- 대신동26통, 27통 중 모광, 다남2리 (기타는 개령중)			
		아천	- 남산3리 (기타는 어모중)			
봉계						
태화	- 추풍령중(충북)과 자유학구					
직지	- 대성리, 주례리, 상거2리는 지품천중학교와 자유학구					
대룡						
감천						
조마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태화초등학교		남 여	김천중앙중 한일여중	희망학교(택1) 선배정
봉계초등학교		남 여	김천중앙중 한일여중	
조마초등학교		남 남 여 여	석천중학교 문성중학교 김천여중 성의여중	
감천초등학교		남 여 여	성의중 김천여중 성의여중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동시	(7) 안동시	교대부설 안동 안동서부 안동동부 안동송현 북주 안동용상 길주  안동강남 영가 안동영호 영남 송천 서선 와룡  북후 서후 대흥분교 남후  남선 임하	- 수1, 2리는 풍산중과 자유학구  - 망천1리 중 안마·망지네, 망천2리 중 숲당, 마리는 웅부중과 자유학구  - 산야리, 중가구리, 서지리는 웅부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웅부중) - 도진리중 아랫마사 (기타는 북후중) - 광평1리는 북후중 - 고하리, 고상리는 일직중과 자유학구, 하이리는 풍산중과 자유학구 - 금소1,2리, 고곡리, 오대2리 중 배일·어덕은 길안중과 자유학구	안동중 경안중 경덕중 길주중	안동여중 북주여중 경안여중 (남녀공학)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길주초등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신초등학교 임하초등학교	- 임동면 : 망천1리중 안마· 망지네, 망천2리중 숲당, 마리 - 임하면 : 노산리, 천전1, 2리, 임하1리	남·여	길주중학교	선배정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  안동용상초등학교 길주초등학교	- 송천초등학교, 남신초등 학교, 임하초등학교 , 길주초등학교, 안동용상 초등학교 학구내 거주자	남·여	길주중학교	위 선배정을 제외한 정원 범위내에서 추첨에 의한 배정
남후초등학교		남 여	안동중학교 복주여자 중학교	



[ 별 지 ]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신주초등학교 구미봉곡초등학교		남·여 남	봉곡중학교 경구중학교	
구운초등학교		남	구미중학교	
원호초등학교	- 고아읍 원호1,2리 (원호3~7리인 택지개발지구는 제외)	남	구미중학교	
지산초등학교	- 고아읍 문성리, 괴평리, 송림리	남	구미중학교	
구미초등학교	- 선기동(대성지 아랫마을, 21통 제외) - 수점동(대성지 안쪽마을) -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남	구미중학교	
원남초등학교	- 선기동 21통	남	구미중학교	
상보초등학교 오대초등학교 구미오산초등학교 구미왕산초등학교	- 임오동	남	금오중학교	
신기초등학교	- 양호동	남·여	구미신평중학교	
인동초등학교 구평초등학교 항상초등학교 인의초등학교 구평남부초등학교 진평초등학교 천생초등학교		남·여	인동중학교 진평중학교 천생중학교	추첨배정
옥계초등학교 양포초등학교 옥계동부초등학교 해마루초등학교	- 금전2동은 오상중과 자유학구	남·여	옥계중학교 옥계동부중학교 해마루중학교	추첨배정
금오초등학교	- 남통동 남통마을 (금오산 식당 주변)	여	구미여자중학교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주시	(9) 영주시	영주 영주동부 영주중앙 영주남부 영주서부 영일 남산 영주가흥 이산 평은  문수 장수 안정 옥대  감천 (예천군)  도촌 (봉화군)  봉화 (봉화군)  물야 (봉화군)	- 두월리는 상운중(봉화군)과 자유학구 - 강동1리 중 왕류는 북후중 (안동시) - 천본1리 중 윗두들은 상운중 (봉화군)  - 용암리, 단촌2리는 풍기중학교군 - 동원리, 사천1리 (사천2리는 소수중, 기타는 단산중)  - 기곡2리 중 한밤실 [기타는 감천중(예천군)]  - 문단1, 2리, 화천리, 도촌리 (기타는 봉화중학구)  - 물야면 수석리는 봉화중학구와 자유학구 (용암리는 부석중, 기타는 봉화중학구)  - 물야면 수석리는 봉화중학구와 자유학구 (용암리는 부석중, 기타는 봉화중학구)	영주중 영광중 대영중	영주여중 영광여중 동산여중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주시	(10) 풍기	풍기 풍기북부 안정 봉현	- 용암리, 단촌2리  (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	풍기중 금계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영천시	(11) 영천시	영천 영천중앙 화남분교 영천동부 영화 포은 단포	- 호남리, 대곡리는 금호중학구와 자유학구 - 송포리는 영안중과 자유학구  - 매산1동 (기타는 산동중과 자유학구)  - 상리리, 학리는 별빛중과 자유학구	영천중 영동중	영천여중 성남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영천중앙초등학교 영천중앙초화남분교장 영화초등학교	- 구 영북초등학교 학구  - 구 호당초등학교 학구	여	영천여자중학교	
영천초등학교	- 구 영도초등학교 학구 - 구 영천남부초등학교 학구	여	성남여자중학교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상주시	(12) 상주시	상주	- 신촌1, 2리, 고곡1, 2리(둔 더기 제외), 북장리는 내서중과 자유학구	상주중	상주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상산				
		상주중앙				
		상영				
		상주동부				
		상주남부				
		성동				
		중동	- 회상2리 중 갈밭은 풍양중 (예천군), 낙동중학구와 자유 학구			
		사벌				
		낙동	- 신상1, 2리, 분황리 중 구촌 (기타는 낙운중)			
외남	- 지사리, 소은리 (기타는 청리중)					
외서	- 우산1, 2리, 이촌리, 대전1리, 서만2리, 하흘2리는 은척중 대전2리, 예의1리는 화령중					
공검	- 함창중학구와 자유학구					
백원	- 연봉1, 2리는 함창중학구와 자유학구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별	선배정학교	비 고
사별초등학교		남	상주중학교	
중동초등학교		남	남산중학교	
		여	상주여자중학교	
		여	성신여자중학교	
공검초등학교	-연봉1, 2리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남	상주중학교	
백원초등학교		여	성신여자중학교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경산시	(15) 진량	진량		진량중	(남녀공학)	
		진성		신상중	(남녀공학)	
		다문	- 평(坪)사리 및 평(平)사1, 2리는 하양중학구와 자유학구			
		부림	- 마곡리, 현내리는 자인중학구와 자유학구 - 보인2리, 북1, 2리, 부기1, 2리, 양기리, 문천2리, 상림리, 내리리는 하양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하양중학구)			
		봉황				
	현흥	- 금구리, 용암리, 현흥1리, 신촌리는 경산시중학교군				
	하양초 화성분교	- 하양중학구와 자유학구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경산)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남성초등학교		남	경산중	
경산압량초등학교	- 갑제동, 가일리, 내리, 당음리, 신대리(신대부 적택지지구는 제외)	여 남녀공학 남녀공학	경산여중 장산중 사동중	
현흥초등학교	- 금구리, 용암리, 현흥1리, 신촌리	남녀공학 남녀공학	삼성현중 문명중	
남산초등학교	- 전지리, 반곡리, 상대리 하대리, 인흥리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의성군	(16)	안계	- 경북중부중과 자유학구	안계중	(남녀공학)	남학생  (여학생은 안계중)
	안계	이두초쌍호 분교		삼성중		
청도군	(17)	청도	- 상동중(경남)과 자유학구  - 유등2리는 이서중 - 유등1, 3리, 서상2리는 이서중과 자유학구	모계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청도	유천 청도중앙 화양  남성현		청도중		
칠곡군	(18)	왜관	- 금남리 중 바꾸는 달서중(대구)  - 삼청2리 (연호2리는 칠곡중(대구), 기타는 신동중) - 장곡중과 자유학구 - 관호2, 3, 4, 5리 (기타는 약목중)	왜관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왜관	왜관중앙 왜관동부 낙산 매원 신동  석적 관호  약동 도원초선남 동부분교 (성주군)		석전중 순심중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칠곡군	(19) 북삼	북삼 승산 인평 오태	- 약목중과 자유학구  - 인평리 (기타는 구미시 중학교군과 자유학구)	북삼중 인평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예천군	(20) 예천	예천  예천동부 예천남부   유천	- 황산리, 입암리는 용궁중과 자유학구  - 호명면 백송리, 오천리, 본포리(머골 제외 지보초), 금능1리, 한어리, 원곡리 (범우리개 제외 예천초), 송곡리, 본리, 산합1, 2리는 풍천중학교(안동)와 자유학구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내 A-1, B-7, B-1-1/2/3 B-2-1/2, B-3-1/2, B-4-1 /2, B-5, B-6-1/2, B-8-1 /2, D-1/2/3/4/5/6은 풍천중학교(안동)와 자유학구	예천중 대창중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1) 구룡포	구룡포		구룡포중	(남녀공학)	
포항시	(2) 대보	대보	- 발산2리, 대동배1리는 포항동해중과 자유학구	대보중	(남녀공학)	
포항시	(3) 신광	신광		신광중	(남녀공학)	
포항시	(4) 송라	송라	- 지경1, 3리는 남정중 (영덕군)	송라중	(남녀공학)	
포항시	(5) 기계	기계		기계중	(남녀공학)	
포항시	(6) 기계중 기북분교	기북		기계중기북 분교	(남녀공학)	
포항시	(7) 기계중 상옥분교	죽장초상옥 분교		기계중상옥 분교	(남녀공학)	
포항시	(8) 제철	제철 제철지곡 효자		포항제철중	(남녀공학)	효자초등학교는 포항시1학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 첨에 의한 배정
포항시	(9) 청하	청하 월포		청하중	(남녀공학)	
포항시	(10) 동해	동해 대보	- 대동배1리, 발산2리는 대보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대보중)	포항동해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11) 장기	장기 모포분교 양포	-죽정리, 정천리는 오천중학교군	장기중	(남녀공학)	
포항시	(12) 죽장	죽장	-상사리, 하사리는 현동중 (청송군)과 자유학구	서포중	(남녀공학)	
포항시	(13) 홍해	홍해 홍해남산 홍해서부 곡강		홍해중	(남녀공학)	
경주시	(14) 불국	불국사 영지 괘릉		불국중	(남녀공학)	
경주시	(15) 안강	안강제일 안강 옥산 산대 양동		안강중	안강여중	
경주시	(16) 외동	입실 연안 모화 석계 양남	-효동리 (죽전리 중 남전은 양북중, 기타는 양남중)	외동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경주시	(17) 산내	의곡  일부분교	-우라리는 아화중	산내중	(남녀공학)	
경주시	(18) 양남	양남  나산 양북	-죽전리 중 남전은 양북중 -효동리는 외동중  -봉길리 중 하봉 (기타는 양북중)	양남중	(남녀공학)	
경주시	(19) 아화	아화 의곡	-우라리(기타는 산내중)	아화중	(남녀공학)	
경주시	(20) 감포	감포	-팔조리는 양북중	감포중	(남녀공학)	
경주시	(21) 양북	양북 감포  양남	-봉길리 중 하봉은 양남중 -팔조리 (기타는 감포중) -죽전리 중 남전 (효동리는 외동중, 기타는 양남중)	양북중	(남녀공학)	
경주시	(22) 무산	건천 친포 모량	-모량1리, 광명1, 2동은 경주시중학교군	무산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김천시	(23) 아포	아포 운곡 율곡 고아 (구미시)	- 대신1~3리, 봉산1~3리는 율곡중과 자유학구 - 봉천1리는 율곡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율곡중) - 대신1~3리, 봉산1~3리는 율곡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율곡중) - 횡산리, 외예리, 내예리는 현일중과 자유학구(횡산리중 물목은 선산중학과와 현일중 (구미시)의 자유학구, 기타는 현일중)	아포중	(남녀공학)	
김천시	(24) 개령	개령 개령서부	- 대신동 26통, 27통 중 모광, 다남2리는 김천시중학교군	개령중	(남녀공학)	
김천시	(25) 감문	위량		감문중	(남녀공학)	
김천시	(26) 율곡	농소 운곡 율곡 아포	- 신촌리, 월곡2리 중 용시, 월곡3리 중 남곡, 월곡4리는 김천시중학교군 - 봉천1리는 아포중과 자유학구 - 부상2리는 약목중(칠곡군) - 대신1~3리, 봉산1~3리는 아포중과 자유학구 - 대신1~3리, 봉산1~3리는 아포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아포중)	율곡중	(남녀공학)	
김천시	(27) 어모	아천 능치분교	- 남산3리는 김천시중학교군 - 공성면 영오리는 용운중 (상주시)	어모중	(남녀공학)	
김천시	(28) 지품천중	지례 부향분교 구성 부향 대덕 증산 직지	- 대성리, 주례리, 상거2리는 김천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김천시중학교군)	지품천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동시	(29) 북후	북후  서후  녹전  평은 (영주시)	-도진리 중 아랫마사는 안동시중학교군  -광평1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서삼리 중 새마·상이전· 하이전, 사산리 중 어석· 태봉·안지는 옹부중과 자유학구  -강동1리 중 왕류 [친본1리 중 윗두들은 청량중 (봉화군), 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	북후중	(남녀공학)	
안동시	(30) 길안	길안  길송분교  임하	-황목리, 병부리는 청송중학구 (청송군) -송사1리 [기타는 현서중(청송군)] -금소1, 2리, 고곡리, 오대2리중 배일·어덕은 안동시중학교 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길안중	(남녀공학)	
안동시	(31) 풍천	풍천풍서    신성 예천남부	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내 A-1, B-1-1,2,3, B-2-1,2, B-3-1,2, B-4-1,2, B-5, B-6-1,2, B-7, B-8-1,2 D-1, D-2, D-3, D-4, D-5, D-6은 예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백송리, 오천리, 본포리(머글제 외), 금능1리, 한어리, 원곡리 (범우리개 제외), 송곡리, 본리, 산합1, 2리는 예천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예천중학교군)	풍천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동시	(32) 응부	와룡	- 산야리, 증가구리, 서지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응부중	(남녀공학)	
	녹전	- 서삼리 중 새마·상이전·하이전, 사신리 중 어석·태봉·안지는 북후중과 자유학구				
	원천분교	- 원천 1, 2리, 매정리는 청량중 (봉화군)과 자유학구				
	월곡 삼계분교					
	온혜 임동	- 지리, 기곡리, 후평리, 어천리는 진보중(청송군)				
	길주	- 임동면 망천1리중 안마·망지네, 망천2리 중 숲당, 마리는 안동 시 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상운 (봉화군)	- 신라1, 2리는 청량중(봉화군) 과 자유학구(하늘2리중 배골은 봉화중학구, 기타는 청량중)				
안동시	(33) 풍산	풍산 풍북 안동송현	- 수1, 2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풍산중	(남녀공학)	
	남후	- 하이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고하리, 고상리는 안동시 중학교군과 일직중학구의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안동시	(34) 일직	일직 남후	- 고하리, 고상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하이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풍산중학구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일직중	(남녀공학)	
	단촌 (의성군)	- 세촌2리중 본동·동내개골 (기타는 의성중학구)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구미시	(35) 선산	선산 옥성 덕촌 고아	- 생곡리, 신기리는 도개중과 자유학구 - 산촌리, 구봉리, 옥관리는 낙동중(상주시)과 자유학구 - 황산리 중 물목은 현일중과 자유학구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는 현일중과 아포중(김천시)의 자유학구, 기타는 현일중]	선산중	(남녀공학)	
구미시	(36) 무을	무을		무을중	(남녀공학)	
구미시	(37) 해평	해평	- 낙산리, 일선리는 도개중과 자유학구	해평중	(남녀공학)	
구미시	(38) 산동	산동	-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산동면(신당리, 인덕리)은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확장단지 내 중학교 설립시 까지)	산동중	(남녀공학)	
구미시	(39) 오상	장천 옥계  학림(칠곡군) 가산(칠곡군)	- 금전2동은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구미시중학교군) - 금화리는 동명중(칠곡군)	오상중	(남녀공학)	
구미시	(40) 도개	도개 해평  선산	- 낙산리, 일선리는 해평중과 자유학구(기타는 해평중학구) - 생곡리, 신기리는 선산중학구와 자유학구(기타는 선산중학구)	도개중	(남녀공학)	
구미시	(41) 현일	고아   구운 남계	-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는 아포중과 자유학구 - 황산리 중 물목은 선산중학구와 자유학구 -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현일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주시	(42) 부석	부석 봉화 (봉화군) 물야 (봉화군)	- 보계리는 단산중  - 용암리 (물야면 수석리는 영주시중학교 군과 봉화중학구의 자유학구, 기타는 봉화중학구)  - 용암리 (물야면 수석리는 영주시중학교 군과 봉화중학구의 자유학구, 기타는 봉화중학구)	부석중	(남녀공학)	
영주시	(43) 단산	옥대  부석	- 사천2리는 소수중 - 동원리, 사천1리는 영주시 중학교군 - 보계리(기타는 부석중)	단산중	(남녀공학)	
영주시	(44) 소수	순흥 옥대	- 사천2리 (동원리, 사천1리는 영주시 중학교군, 기타는 단산중)	소수중	(남녀공학)	
영천시	(45) 청통	청통		청통중	(남녀공학)	
영천시	(46) 신녕	신녕 영화초화덕 분교	- 대안3리 (기타는 화산중)	신녕중	(남녀공학)	
영천시	(47) 화산	화산 영화초화덕 분교	- 화산1리(곽산제외), 화산2리중 효지미는 산동중과 자유학구 - 대안3리는 신녕중	화산중	(남녀공학)	
영천시	(48) 별빛	자천 보현분교 지곡  임고 평천 고경 단포  대창 금호  용성 (경산시)	- 오산1리는 산동중  - 용계리(달산 제외) (기타는 산동중)  - 상리리, 학리는 영천시중학교 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영천시중학교군)  - 강회리(기타는 금호중)  - 매남4리는 용성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용성중(경산시)]	별빛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천시	(49) 영안	북안 영천	- 송포리는 영천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영천시중학교군 및 금호중학구)	영안중	(남녀공학)	
영천시	(50) 금호	영천  금호  거여	- 호남리, 대곡리는 영천시중학교 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영천시 중학교군 및 영안중) - 강회리는 별빛중	금호중	금호여중	
영천시	(51) 산동	자천  지곡 화산  영천중앙초 화남분교	- 오산1리 (기타는 별빛중) - 용계리(달산 제외)는 별빛중 - 화산1리(곽산제외), 화산2리중 효지미는 화산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화산중) - 매산1동은 영천시중학교군 (기타는 영천시 중학교군과 자유학구)	산동중	(남녀공학)	
상주시	(52) 낙동	낙동동부 옥성 (구미시)  중동	- 산촌리, 구봉리, 옥관리는 선산 중학구(구미시)와 자유학구 (기타는 선산중학구)  - 회상2리 중 갈밭은 풍양중 (예천군), 상주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상주시 중학교군)	낙동중	(남녀공학)	
상주시	(53) 낙운	낙동	- 신상1, 2리, 분황리 중 구촌은 상주시 중학교군	낙운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상주시	(54) 청리	청리 외남	- 지사리, 소은리는 상주시중학교군	청리중	(남녀공학)	
상주시	(55) 내서	상주 낙서	- 신촌1, 2리, 고곡1, 2리(둔더기 제외), 북장리는 상주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내서중	(남녀공학)	
상주시	(56) 중모	중모 모동		중모중	(남녀공학)	
상주시	(57) 모서	모서 화동	- 화현1리 (기타는 화동중)	모서중	(남녀공학)	
상주시	(58) 화동	화동 화령	- 화현1리는 모서중 - 소곡2리 중 배실 (기타는 화령중)	화동중	(남녀공학)	
상주시	(59) 화령	화령 외서  농암초청화 분교 (문경시)  수정초삼가 분교(충북)	- 소곡2리 중 배실은 화동중  - 우산1, 2리, 이촌리, 대전1리, 서만2리, 하홀2리는 은척중,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 내서3리 (기타는 가은중 및 문경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동관리 (기타는 속리중(충북))	화령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상주시	(60) 은척	외서  은척 무릉분교 이안  농암 (문경시)	- 우산1, 2리, 이촌리, 대전1리, 서만2리, 하홀2리 (대전2리, 예의1리는 화령중,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 함창중학구와 자유학구 - 양범3리, 대현리(한티제외), 아천리는 함창중학구와 자유학구(기타는 함창중학구)  - 지동리, 선곡리 (기타는 가은중 및 문경시 중학교군과 자유학구)	은척중	(남녀공학)	
상주시	(61) 화북	화북 입석분교  용화분교	- 입석1리는 송면중(충북)과 자유학구(기타는 송면중)  - 보은중(충북)과 자유학구	화북중	(남녀공학)	
상주시	(62) 용운	옥산 능치 (김천시)	- 영오리 [기타는 어모중(김천시)]	용운중	(남녀공학)	
상주시	(63) 함창	공검 백원  함창 함창중앙 이안  은척초무릉 분교	- 상주중·성신여중과 자유학구 - 연봉1, 2리는 상주중·성신여중과 자유학구  - 양범3리, 대현리(한티제외), 아천리는 은척중학구와 자유학구  - 은척중학구와 자유학구	함창중	상지여중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문경시	(64) 문경	호서남 점촌북 점촌 신기 점촌중앙 모전 산양  호계 농암  청화분교  영순	- 평지2리 - 위만1리, 우본리중 감실은 용궁중(예천군), (기타는 산양중)  - 지동리, 선곡리는 은척중 (상주시) (기타는 가은중과 자유학구) - 내서3리는 화령중(상주시) (기타는 가은중과 자유학구) - 왕태1리는 용궁중(예천군)		문경여중	
문경시	(65) 산양	산양	- 평지2리는 문경시중학교군 및 문경중학구 - 위만1리, 우본리 중 감실은 용궁중(예천군)	산양중	(남녀공학)	
문경시	(66) 산북	산북  창구분교 동로	- 지내리, 흑송리, 월천리는 용궁중(예천군)  - 마광리 [명전리는 동로중과 단성중 (충북)과의 자유학구, 기타는 동로중]	산북중	(남녀공학)	
문경시	(67) 동로	동로  단천초가산 분교(충북)	- 마광리는 산북중 - 명전리는 단성중(충북)과 자유학구 - 단성면 별천리, 대강면 반곡리 는 단성중(충북)과 자유학구 (기타는 단성중)	동로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문경시	(68) 문경읍	문경용흥당포		문경서중	(남녀공학)	
문경시	(69) 마성	동성		마성중	(남녀공학)	
문경시	(70) 가은	가은 희양분교 농암 청화분교	- 지동리, 선곡리는 은척중(상주시) (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내서3리는 화령중(상주시) (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가은중	(남녀공학)	
경산시	(71) 자인	자인 남산 남성 다문	- 전지리, 반곡리, 상대리, 하대리, 인흥리는 경산시 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강서리, 백안리, 당리리는 경산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경산시중학교군) - 마곡리, 현대리는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진량중학교군 및 하양중학구)	자인중	자인여중	
경산시	(72) 용성	용성 금천 (청도군)	- 매남4리는 별빛중(영천시)과 자유학구 - 소천3리는 용성중 (기타는 금천중(청도군))	용성중	(남녀공학)	
경산시	(73) 하양	하양 화성분교 하주 청천  금락 다문 부림  외촌 계당 대동	-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청천리, 남하1, 2리, 은호1,2리는 대구광역시 3학교군(동구)과 자유학구 - 평(坪)사리, 평(平)1, 2리는 진량중 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진량중 학교군 및 자인중학구) - 보인2리, 북1, 2리, 부기1, 2리, 양기리, 문천2리, 상림리, 내리리는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	무학중	하양여중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군위군	(74) 군위	군위 효령 송원	- 노행2리 중 심원 (기타는 효령중) - 사리2리는 경북중부중(의성군)	군위중	(남녀공학)	
군위군	(75) 효령	효령 고매	- 노행2리 중 심원은 군위중학구	효령중	(남녀공학)	
군위군	(76) 부계	부계		부계중	(남녀공학)	
군위군	(77) 우보	우보		군위중 우보분교	(남녀공학)	
군위군	(78) 의흥	의흥 석산분교		의흥중	(남녀공학)	
의성군	(79) 의성	의성 의성남부 의성북부 단촌  점곡 옥전  안평  금성	- 세촌2리 중 본동·동내개골은 일직중(안동시)  - 오류리, 금봉리, 금학리(큰마, 새뜸제외), 실업2리 중 윗뜸안골 (기타는 옥산중)  - 신안3리 (대사1리는 봉양중, 경북중부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경북중부중)  - 만천1, 2리(기타는 금성중)	의성중	의성여중	
의성군	(80) 금성	금성 가읍 춘산	- 만천1, 2리는 의성중학구 -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금성중	탐리여중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의성군	(81) 다인	다인	- 용곡1, 2, 3리는 지보중 (예천군)과 자유학구	다인중	(남녀공학)	
의성군	(82) 경북중부	안평  신평분교 이두 송원 (군위군) 단밀 가음 춘산 이두초쌍호 분교	- 대사1리는 봉양중과 자유학구 - 신안3리는 의성중학구  - 사리2리 (기타는 군위중)  -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 안계중학교군 및 안계중과 자유학구	경북중부중	(남녀공학)	
의성군	(83) 안계	구천 안계 이두초쌍호 분교	- 경북중부중과 자유학구	안계중	(남녀공학)	- 구천초등학교: 남·여학생
의성군	(84) 봉양	도리원 안평	- 대사1리는 경북중부중과 자유학구 (신안3리는 의성중학구, 기타는 경북중부중)	봉양중	(남녀공학)	
의성군	(85) 옥산	옥전	- 오류리, 금봉리, 금학리 (큰마, 새뜸제외), 실업2리 중 윗몸 안골은 의성중학구	옥산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청송군	(86) 청송	청송 파천  길안 (안동시) 이전	- 지리는 청송중부동분교와 자유학구 - 어천리, 송강리, 신기리, 황목리, 지리는 진보중 (기타 남학생은 진성중과 자유학구) - 황목리, 병부리 [기타는 길안중(안동시)] - 상평리중 석고개 (기타는 청송중부동분교)	청송중	청송여중	
청송군	(87) 청송중 부동분교	청송 이전	- 지리는 청송중학구와 자유 학구(기타는 청송중학구) - 상평리 중 석고개는 청송중	청송중부동 분교	(남녀공학)	
청송군	(88) 구천	부남		구천중	(남녀공학)	
청송군	(89) 현서	화목  길안초길송분교 (안동시)	- 무계리 중 말방, 수탁리 중 원수락은 안덕중 - 송사1리는 길안중(안동시)	현서중	(남녀공학)	
청송군	(90) 안덕	안덕  화목	- 인지리 중 추강·손달은 현동중 - 무계리 중 말방, 수탁리 중 원수락(기타는 현서중)	안덕중	(남녀공학)	
청송군	(91) 현동	도평 안덕  죽장 (포항시)	- 인지리중 추강·손달 (기타는 안덕중) - 상사리, 하사리는 서포중 (포항시)과 자유학구 (기타는 서포중)	현동중	(남녀공학)	
청송군	(92) 진보	진보 파천  입동 (안동시) 입암 (영양군)	- 어천리, 송강리, 신기리, 황목리, 지리(기타는 청송중학구) - 지리, 기곡리, 후평리, 어천리 [기타는 입동중(안동시)] - 흥구리, 방전리는 입암중 (영양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영양중학구와 입암중의 자유학구)	진성중	진보중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양군	(93) 영양	영양 영양중앙 입암  일월 청기분교  수비 석보	- 영양중앙입암분교와 자유학구 [홍구리, 방전리는 진보중학구 (청송군)와 입암중의 자유학구]  - 수비중과 자유학구  - 수비중과 자유학구 - 석보중과 자유학구	영양중	영양여중	
영양군	(94) 영양중 입암분교	입암	- 홍구리, 방전리는 진보중학구 (청송군)와 자유학구 (기타는 영양중학구와 자유 학구)	영양중 입암분교	(남녀공학)	
영양군	(95) 석보	석보	- 영양중학구와 자유학구	석보중	(남녀공학)	
영양군	(96) 수비	일월 수비	- 영양중학구와 자유학구 - 영양중학구와 자유학구	수비중	(남녀공학)	
영덕군	(97) 영덕	영덕야성  지품	- 삼화리, 신애리, 오천리중 구읍골 (기타는 지품중)	영덕중	영덕여중	
영덕군	(98) 강구	강구 남정	- 남호리, 남정리, 중화리, 우곡리 (기타는 남정중)	강구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덕군	(99) 남정	남정 송라 (포항시)	-남호리, 남정리, 중화리, 우곡리는 강구중 -지경1,3리 (기타는 송라중(포항시))	남정중	(남녀공학)	
영덕군	(100) 지품	지품	-삼화리, 신애리, 오천리중 구읍골은 영덕중학구	지품중	(남녀공학)	
영덕군	(101) 축산	축산향 경정분교 영해	-영해중학과 자유학구 (사진3리는 영해중) -영해중학과 자유학구 -축산면 고곡1, 2리, 상원리, 부곡리, 도곡 1, 2리, 칠성1, 2리, 조항리, 대곡리, 기암2리는 영해중과 자유학구(기타는 영해중학구)	축산중	(남녀공학)	
영덕군	(102) 영해	축산향 경정분교 영해 병곡 원황 창수 인천분교	-사진3리(기타는 축산중학과와 자유학구) -축산중학과 자유학구 -축산면 고곡1, 2리, 상원리, 부곡리, 도곡 1, 2리, 칠성1, 2리, 조항리, 대곡리, 기암2리는 축산중과 자유학구(기타는 영해중학구) -병곡중학과 자유학구 -덕천리, 신평리, 사천리, 송천1, 2리 및 각리1, 2, 3리 (기타는 병곡중학과 자유학구)	영해중	(남녀공학)	
영덕군	(103) 병곡	병곡 원황	-영해중학과 자유학구 -영해중학과 자유학구(덕천리, 신평리, 사천리, 송천1, 2리 및 각리1, 2, 3리는 영해중학구)	병곡중	(남녀공학)	
청도군	(104) 풍각	풍각 각남 덕산	-녹명2리 -녹명1리는 이서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이서중)	풍각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청도군	(105) 금천	금천 문명분교	- 소천3리는 용성중(경산시)	금천중	(남녀공학)	
청도군	(106) 매전	동산	- 예전2리, 내1, 2리, 지전1, 2리, 송원리, 구촌리는 상동중 (경남)과 자유학구	매전중	(남녀공학)	
청도군	(107) 이서	이서 각남  화양	- 녹명2리는 풍각중 - 녹명1리는 풍각중과 자유학구  - 유등2리 - 유등1, 3리, 서상2리는 청도중 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청도중학교군)	이서중	(남녀공학)	
고령군	(108) 고령	고령 덕곡  운수 우곡초  수륜 (성주군)	- 노2리, 백1, 2리는 수륜중 (성주군)과 자유학구  - 사촌리 4반 - 예곡리 중 부레는 구지중 (대구), 기타는 우곡중  - 작은리, 보월1, 2리, 남은1, 2리는 수륜중(성주군)과 자유학구	고령중	(남녀공학)	
고령군	(109) 고령중 개진분교	개진		고령중개진 분교	(남녀공학)	
고령군	(110) 성산	성산 박곡		성산중	(남녀공학)	
고령군	(111) 우곡	우곡	- 사촌리 4반은 고령중학구 - 예곡리 중 부레는 구지중 (대구)	우곡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고령군	(112) 쌍림	쌍림		쌍림중	(남녀공학)	
고령군	(113) 다산	다산 용암 (성주군)	- 동락2리 중 가족정 - 중거1,2리는 성주중학구, - 동락2리 중 모방골은 수륜중(성주군), 기타는 용암중(성주군)	다산중	(남녀공학)	
성주군	(114) 성주	성주 성주중앙 선남  용암  대가  초전  월향	- 문방1, 2, 3리 (장학리, 명포1, 2리, 유서2리는 명인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명인중) - 중거1, 2리 - 동락2리 중 모방골은 수륜중, 동락2리 중 가족정은 다산중 (고령군), 기타는 용암중 - 광산리, 어은리, 명천리, 대천1, 2리, 옥화1, 2리, 도남1, 2리는 성주중학교가천분교장과 자유학구 - 용성1리 (기타는 초전중) - 용각1, 2, 3리, 보암1, 2리는 초전중학구와 자유학구	성주중	성주여중	
성주군	(115) 성주중 가천분교	가천 무학분교 대가  수륜	- 광산리, 어은리, 명천리, 대천1, 2리, 옥화1, 2리, 도남1, 2리는 성주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성주중) - 수성1리 중 가람 (기타는 수륜중)	성주중 가천분교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성주군	(116) 용암	용암  대동	- 동락2리 중 가족정은 다산중 (고령군) - 동락2리 중 모방골은 수륜중 - 중거1, 2리는 성주중학구 - 기산1, 2리, 운산리 (기타는 명인중)	용암중	(남녀공학)	
성주군	(117) 초전	초전 봉소분교 월항  지방분교	- 용성1리는 성주중학구  - 용각1, 2, 3리, 보암1, 2리는 성주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성주중)	초전중	(남녀공학)	
성주군	(118) 벽진	벽진		벽진중	(남녀공학)	
성주군	(119) 수륜	수륜  용암  덕곡 (고령군)	- 작은리, 보월1, 2리, 남은1, 2리는 고령중학구와 자유학구 - 수성1리 중 가람은 성주중학교 가천분교 - 동락2리 중 모방골 (동락2리 중 가족정은 다산중, 중거1, 2리는 성주중학구, 기타는 용암중) - 노2리, 백1, 2리는 고령중학구 와 자유학구 (기타는 고령중학구)	수륜중	(남녀공학)	
성주군	(120) 명인	선남  도원  대동	- 문방1, 2, 3리는 성주중학구 - 장학리, 명포1, 2리, 유서2리 는 성주중학구와 자유학구 - 용신1, 2, 3리는 왜관중학교군 (칠곡군)과 자유학구 - 기산1, 2리, 운산리는 용암중	명인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칠곡군	(121) 약목	송산 약목 관호  북삼초오평분교  운곡 (김천시)	- 북삼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관호2, 3, 4, 5리는 왜관중학교군  - 부상2리 (기타는 울곡중)	약목중	(남녀공학)	
칠곡군	(122) 신동	신동  지천  하빈 (대구)	- 삼청2리는 왜관중학교군 - 연호2리는 칠곡중(대구) - 금호리, 연호리 중 가정·구 슬개, 낙산리는 칠곡중(대구) - 대평리, 무등1리 [기타는 달서중(대구)]	신동중	(남녀공학)	
칠곡군	(123) 동명	동명 동명동부 다부 가산	- 금화리 (기타는 오상중(구미시))	동명중	(남녀공학)	
칠곡군	(124) 장곡	장곡 석적 대교	- 왜관중학교군과 자유학구	장곡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예천군	(125) 용궁	예천	- 황산리, 입암리는 예천중학교 군 및 예천여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예천중학교군 및 예천여중)	용궁중	(남녀공학)	
		용궁 영순 (문경시)	- 왕태1리 (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 및 문경중학구)			
		산양 (문경시)	- 위만1리, 우본리 중 감실 (평지2리는 문경시중학교군 및 문경중학구, 기타는 산양 중(문경시))			
		산북 (문경시)	- 지내리, 흑송리, 월천리 [기타는 산북중(문경시)]			
예천군	(126) 풍양	풍양 중동 (상주시)	- 회상2리 중 갈밭은 상주시 중학교군, 낙동중학구와 자유 학구(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풍양중	(남녀공학)	
예천군	(127) 지보	지보 다인 (의성군)	- 용곡1, 2, 3리는 다인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다인중(의성군)]	지보중	(남녀공학)	
예천군	(128) 감천	감천	- 기곡2리중 한밤실은 영주시 중학교군	감천중	(남녀공학)	
예천군	(129) 용문	용문 유천	- 노사2리 (기타는 예천중학교군 및 예천중학구)	용문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예천군	(130) 예천	예천  예천동부 예천남부       유천	- 황산리, 입암리는 용궁중과 자유학구  - 호명면 백송리, 오천리, 본포리 (머골 제외 지보초), 금능1리, 한어리, 원곡리(범우리개 제외 예천초), 송곡리, 분리, 산합1, 2리는 풍천중학교(안동)와 자유학구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내 A-1, B-7, B-1-1/2/3 B-2-1/2, B-3-1/2, B-4-1/2, B-5, B-6-1/2, B-8-1/2, D-1/2/3/4/5/6은 풍천중학교(안동)와 자유학구 - 노사2리는 용문중		예천여중	
예천군	(131) 은풍	상리 은풍		은풍중	(남녀공학)	
봉화군	(132) 봉화	봉화  도촌  내성  동양 상운   봉성 물야	- 수식리는 영주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문단1, 2리, 화천리, 도촌리는 영주시중학교군  - 청량중과 자유학구 - 하눌2리 중 배골 [신라1, 2리는 청량중과 웅부중(안동시)의 자유학구, 기타는 청량중] - 청량중과 자유학구 - 용암리는 부석중(영주시) - 수식리는 영주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물야중)	봉화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봉화군	(133) 물야	물야	- 용암리는 부석중(영주시) - 수석리는 봉화중과 영주시 중학교군의 자유학구, 북지1리 21통4반은 봉화중(기타는 물야중)	물야중	(남녀공학)	
봉화군	(134) 춘양	춘양  소천초임기분교  소천초두음분교	- 삼동1리는 청량중과 자유학구 - 갈산2리중 합강은 청량중과 자유학구 - 애당1, 2리, 도심1, 2리는 춘양중 서벽분교 - 갈산1리 중 공이, 갈산2리는 청량중	춘양중	(남녀공학)	
봉화군	(135) 춘양중 서벽분교	서벽 춘양	- 애당1, 2리, 도심1, 2리 (삼동1리는 청량중과 춘양중의 자유학구, 갈산2리중 합강은 청량중과 춘양중의 자유학구, 기타는 춘양중) - 김삿갓면 내리4반 중 조제와 춘양면 우구치리 중 하금정은 녹전중(강원)과 자유학구	춘양중서벽 분교	(남녀공학)	
봉화군	(136) 소천	소천 분천분교  삼근초옥방분교 (울진군)		소천중	(남녀공학)	
봉화군	(137) 석포	석포		석포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봉화군	(138) 청량	명호 법전중앙 재산 상운  봉성 동양 춘양  소천초임기분교  녹전초원천분교 (안동시)  이산 (영주시)  평은 (영주시)	- 하늘2리중 배골은 봉화중학구 - 신라1, 2리는 응부중(안동시) 과 자유학구 - 봉화중과 자유학구 - 봉화중과 자유학구 - 삼동1리는 춘양중과 자유학구 - 갈산2리 중 합강은 춘양중과 자유학구 - 애당1, 2리, 도심1, 2리는 춘양중서벽분교 (기타는 춘양중) - 갈산1리중 공이, 갈산2리 (기타는 춘양중) - 원천1, 2리, 매정리는 응부중 (안동시)과 자유학구(기타는 응부중) - 두월리는 영주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영주시 중학교군) - 천본1리 중 윗두들 (강동1리 중 왕류는 북후중, 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	청량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울진군	(139) 울진	울진 울진남부 부구초삼당분교  삼근 왕피분교 죽변 노음	- 명도2리, 정립2리(소곡1리는 부구중, 기타는 죽변중) - 구산3리는 매화중	울진중	(남녀공학)	
울진군	(140) 평해	평해 월송 기성초구산분교	- 학곡2리 남자는 후포중	평해중	평해여중	
울진군	(141) 부구	부구 죽변	- 고목1, 2리, 덕천리는 죽변중 - 소곡1리 (명도2리, 정립2리는 울진중, 기타는 죽변중)	부구중	(남녀공학)	
울진군	(142) 매화	매화 노음	- 구산3리 (기타는 울진중)	매화중	(남녀공학)	
울진군	(143) 기성	기성 사동분교		기성중	(남녀공학)	
울진군	(144) 온정	온정	- 덕인2, 3리는 후포중	온정중	(남녀공학)	
울진군	(145) 죽변	죽변  부구	- 명도2리, 정립2리는 울진중 - 소곡1리는 부구중  - 고목1, 2리, 덕천리 (기타는 부구중)	죽변중	(남녀공학)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울진군	(146) 후포	후포 후포동부 평해 온정	- 학곡2리 남자 (기타는 평해중학구) - 덕인2, 3리 (기타는 온정중)	후포중	(남녀공학)	
울릉군	(147) 울릉	울릉 남양	- 남양3리는 울릉서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울릉서중)	울릉중	(남녀공학)	
울릉군	(148) 서면	남양	- 남양3리는 울릉중과 자유학구	울릉서중	(남녀공학)	
울릉군	(149) 울릉북	천부 현포분교		울릉북중	(남녀공학)	
울릉군	(150) 우산	저동		우산중	(남녀공학)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포항대흥 용흥 장성 창포 장량 포항장흥 포항장원 포항양덕 대이 포항송곡 포항해맞이 달전 학천 죽천 유강 강동	-왕신3리 중 사라는 경주시 중학교군					포항대흥 용흥 장성 창포 장량 포항장흥 포항장원 포항양덕 대이 포항송곡 포항해맞이 달전 학천 죽천 유강 강동	-왕신3리 중 사라는 경주시 중학교군				
경주시	(6) 경주시	천북 <del>물천분교</del>		신라중 경주중 문화중 월성중 계림중 화랑중	경주여중 서라벌여중 근화여중 선덕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경주시	(6) 경주시	천북 <del>삭제</del>		신라중 경주중 문화중 월성중 계림중 화랑중	경주여중 서라벌여중 근화여중 선덕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2017. 3. 1. 천북초물천분교 폐교

현행						개정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안동시	(7) 안동시	길주	- 망천1리 중안마 망지네 망천2리 중숲당 마리는 일 당중과 자유학구	안동중 경안중 경덕중 길주중	안동여중 북주여중 경안여중 (남녀공학)	희망에 의한 선배정대상학 교는(별지와 같다)	안동시	(7) 안동시	길주	-망천1리 중 안마망지네, 망천2리 중 숲당, 마리는 웅부중과 자유학구	안동중 경안중 경덕중 길주중	안동여중 북주여중 경안여중 (남녀공학)	희망에 의한 선배정대상학 교는(별지와 같다)
		외룡	-산아리, 중 가구리, 서 지리(기타 는 안동중 외룡 분교장)					외룡	-산아리, 중 가구리, 서 지리는 웅 부중과 자 유학교 (기타는 웅 부중)				
영주시	(9) 영주시	<u>신설</u>		영주중 영광중 대영중	영주여중 영광여중 동산여중		영주시	(9) 영주시	<u>영주가흥</u>		영주중 영광중 대영중	영주여중 영광여중 동산여중	2017. 3. 1. 영주가흥초 신설
경산시	(14) 경산시	경산 <중략> 삼성현 <u>입량</u> 현홍 <중략>		경산중 장산중 사동중 삼성현중 문명중	경산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경산시	(14) 경산시	경산 <중략> 삼성현 <u>경산입량</u> 현홍 <중략>		경산중 장산중 사동중 삼성현중 문명중	경산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2017. 3. 1. 입량초 폐교 경산입량초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의성군	(16) 안계	안계  쌍호		안계중 삼성중	(남녀공학)	남학생 (여학생은 안계중)	의성군	(16) 안계	안계  이 두 초 쌍 호분교		안계중 삼성중	(남녀공학)	남학생 (여학생은 안계중) 2017. 3. 1. 쌍호초를 이두초쌍호분교 장으로 개편

###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현					개 정 안				
학 교 명	마 을 명	성별	선배정학교	비고	학 교 명	마 을 명	성별	선배정학교	비고
강동초등학교 천북초등학교 <u>천북초물천분교장</u> 모아초등학교 모아초모서분교장		남 여 여	신라중학교 서라벌여자중학교 근화여자중학교		강동초등학교 천북초등학교 모아초등학교 모아초모서분교장		남 여 여	신라중학교 서라벌여자중학교 근화여자중학교	2017.3.1. 천북초물천분교 폐교
남후초등학교	<del>고하리, 고상리는</del> <u>일직중과 자유학구</u>	남	안동중		남후초등학교		남 여	안동중 <u>복주여자중학교</u>	
남성초등학교 <u>압량초등학교</u>  현흥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갑제동, 가일리, 내리, 당읍리, 신대리(신대부적 택지지구는 제외) -금구리, 용암리, 현흥1리, 신촌리 -전지리, 반곡리, 상대리, 하대리, 인흥리	남 여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경산중 경산여중 장산중 사동중 삼성현중 문명중		남성초등학교 <u>경산압량초등학교</u>  현흥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갑제동, 가일리, 내리, 당읍리, 신대리(신대부적 택지지구는 제외) -금구리, 용암리, 현흥1리, 신촌리 -전지리, 반곡리, 상대리, 하대리, 인흥리	남 여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경산중 경산여중 장산중 사동중 삼성현중 문명중	2017. 3. 1. 압량초 폐교 경산압량초신설

중학구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명	마을명	남				여	남	여	
포항시	(8) 제철	제철동 제철서 제철지곡 효자		포항제철중 (남녀공학)	효자초등학교는 포항시1학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 정	포항시	(8) 제철	제철 《삭제》 제철지곡 효자		포항제철중 (남녀공학)	2017. 3. 1. 제철서초 폐교 2017. 9. 1. 제철동초 교명 변경(제철초)
김천시	(27) 어모	아천 능치	-남산3리는 김천시 중학교군 -공성면 영오리는 용운중 (상주시)	어모중 (남녀공학)		김천시	(27) 어모	아천 아천초 능치분교	-남산3리는 김천시중학교군 -공성면 영오리는 용운중 (상주시)	어모중 (남녀공학)	2016. 3. 1. 능치초를 아천초능치분교 장으로 개편
김천시	(28) 지품천중	지례 구성 부항  대덕 증산 직지		지품천중 (남녀공학)		김천시	(28) 지품천중	지례 구성 지례초 부항분교  대덕 증산 직지		지품천중 (남녀공학)	2016. 3. 1. 부항초를 지례초부항분교 장으로 개편
안동시	(29) 안동중 외룡분교	외룡	-산야리, 중기구리, 서지는 안동시중 학교군	안동중외룡 분교장 (남녀공학)		안동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18. 3. 1. 안동중외룡분교 폐교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안동시		<b>윤혜</b>	-천전리, 오천리 (의일리 중 안을 리·매쟁이, 구송 리,선양리는 길주 중녹전분교, 기타 는 도산중						《삭제》	《삭제》				
		<b>녹전</b>	-서삼리중 보재 (서삼리 중 새마 상이전·하이진, 사 신리중 어석·태봉 ·안지는 복후중 (기타는 길주중 녹전분교장)						《삭제》	《삭제》				
안동시	(30) 안동중 인계분교	<b>월곡</b>	-구룡리, 계곡리, 임 동중과 자유학구 -의촌리중 설마 의 인, 원천리중 싹 실은 도산중	안동중인계 분교	(남녀공학)		안동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18. 3. 1. 안동중인계분교 폐교
		<b>삼계분교</b>							《삭제》	《삭제》				
안동시	(31) 길주중 녹전분교	<b>녹전</b>	-서삼리 중 보재는 안동중외룡분교 -서삼리 중 새마 상 이전·하이진, 사신 리중 어석·태봉·안 지는 복후중	길주중녹전 분교	(남녀공학)		안동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18. 3. 1. 길주중녹전분교 폐교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안동시		<b>원천분교</b>	-원천 1, 2리 매정리는 상운중 (봉화군)과 자유 학구					《삭제》	《삭제》	《삭제》			
		<b>온혜</b>	-의일리중 안을리· 매쟁이, 구송리 선 양리 (천정리, 오천리는 안동중외통분교, 기타는 도산중)					《삭제》	《삭제》	《삭제》			
안동시	(32) 임동	<b>임동</b>	-지리, 기곡리, 후평 리, 어천리는 진보 중학구 (청송군)	임동중	(남녀공학)		안동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18. 3. 1. 임동중 폐교
		<b>월곡</b>	-구룡리, 계곡리는 안동중인계분교와 자유학구 (의촌리중 심마 의인, 원천리중 쌍실은 도산중, 기타는 안동중인 계분교)					《삭제》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길주	-망천1리중 안마 망지네, 망천 2리 중 숲당, 마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삭제>	<삭제>	<삭제>			
안동시	(33)복후	복후 서후 녹전  평은 (영주시)	-도진리 중 아랫마사는 안동시중학교군 -광평1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서삼리 중 새마상이전·하이전, 사신리 중 어석·태봉·안지 (서삼리중 보개는 안동중외통분교, 기타는 길주중녹전분교) -강동1리 중 왕류 [천본1리 중 윗두들은 삼은중 (봉화군), 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	복후중 (남녀공학)		안동시	(29)복후	복후 서후 녹전  평은 (영주시)	-도진리 중 아랫마사는 안동시중학교군 -광평 1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서삼리 중 새마상이전·하이전, 사신리 중 어석·태봉·안지는 용부중과 자유학구  -강동1리 중 왕류 [천본1리 중 윗두들은 청량중 (봉화군), 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	복후중 (남녀공학)		2018. 3. 1. 용부중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안동시	(36) 도산	윤례	- 천전리, 오천리는 안동중외룡분교 - 의일리중 안을리·매쟁이, 구송리, 선양리는 길주중녹전분교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18. 3. 1. 도산중 폐교			
		월곡	- 의촌리중 섬마· 의인, 원천리중 씩실 - (구룡리, 계곡리 는 임동중과 안동 중인계분교의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중인계분교)										<삭제>	<삭제>	<삭제>
		상운 (봉화군)	- 신리1, 2리는 상운 중(봉화군)과 자유학구 - (하늘2리중 배골은 봉화 중학구, 기타는 상운중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안동시	《신설》	《신설》	-				안동시	《32》 《옹부》	《외룡》	-산아리, 중가구리, 서지리는 안동시중 학교군과 자유학구	《옹부중》	《남녀공학》	2018. 3. 1. 옹부중 신설
		《신설》							《녹전》	-서삼리 중 새마 상이전·하이전, 사신리중 어석· 태봉·안지는 북후중과 자유학구			
		《신설》							《원천분교》	-원천1, 2리, 매정리는 청량중 (봉화군)과 자유학구			
		《신설》							《월곡》				
		《신설》							《삼계분교》				
		《신설》							《온혜》	-지리, 기곡리, 후평리, 어천리는 진보중(청송군)			
		《신설》							《임동》				
		《신설》							《길주》	-임동면 망천1리중 안마 망지네, 망천 2리 중 숲당, 마 리는 안동시 중학 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 학교군			
		《신설》							《상운》				
									《(봉화군)》	-신라1, 2리는 청량중(봉화군)과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안동시									자유학구(하늘 2리중 배골은 봉화중학구, 기타는 청량중)				
의성군	(83) 의성	의성 의성남부 의성북부 단촌	- 세촌2리 중 본동·동내개골 은 일직중 (안동시)	의성중	의성여중		의성군	(79) 의성	의성 의성남부 의성북부 단촌	- 세촌2리 중 본동·동내개골은 일직중(안동시)	의성중	의성여중	
		접곡 옥전	-오류리, 금봉리, 금학리(큰마, 새뜸 제외), 실업2리 중 윗뜸안골 (기타는 옥산중)					접곡 옥전	-오류리, 금봉리, 금학리(큰마, 새뜸 제외), 실업2리 중 윗뜸안골 (기타는 옥산중)				
		안평	-신안3리 (대사1리는 봉양중, 기타는 경북중부중)					안평	-신안3리 (대사1리는 봉양 중, 경북중부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경북중부중)				
		금성	- 만천1, 2리 (기타는 금성중)					금성	- 만천1, 2리 (기타는 금성중)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의성군	(86) 경북중부	안평	-대사리리는 봉양중 -신안3리는 의성중학구	경북중부중	(남녀공학)		의성군	(82) 경북중부	안평	-대사리리는 봉양중과 자유학구 -신안3리는 의성중학구	경북중부중	(남녀공학)	2017. 3. 1. 쌍호초를 이두초쌍호분교 장으로 개편	
		신평분교 이두 송원 (군위군) 단밀	-사리2리 (기타는 군위중)						신평분교 이두 송원 (군위군) 단밀	-사리2리 (기타는 군위중)				
		가음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가음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춘산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춘산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신설》							이두초쌍 호분교	-안계중학교군, 안계중과 자유학구				
의성군	(87) 안계	구천 안계 쌍호		안계중	(남녀공학)	-구천초등 학교: 남·여학생	의성군	(83) 안계	구천 안계 이두초쌍 호분교	-경북중부중과 자유학구	안계중	(남녀공학)	2017. 3. 1. 쌍호초를 이두초쌍호분교 장으로 개편	
의성군	(88) 봉양	도리원 안평	-대사리 (신안3리는 의성중학구, 기타는 경북중부중)	봉양중	(남녀공학)		의성군	(84) 봉양	도리원 안평	-대사리리는 경북중 부중과 자유학구 (신안3리는 의성 중학구, 기타는 경북중부중)	봉양중	(남녀공학)		

현행						개정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청도군	(108) 풍각	풍각 각남	-녹명2리 -녹명1리는 이서 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이서중)	풍각중	(남녀공학)		청도군	(104) 풍각	풍각 각남	-녹명2리 -녹명1리는 이서중과 자유학구 (기타는 이서중)	풍각중	(남녀공학)	
		《신설》						《삭제》	《삭제》				
청도군	(109) 풍각중각 북분교	《삭제》		《삭제》	(남녀공학)		청도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18. 3. 1. 풍각중각북분교 폐교
성주군	(125) 명인	선남	-문방1, 2, 3리 는 성주중학구 -장학리, 명포1, 2리, 유서2리는 성주중학구와 자유학구	명인중	(남녀공학)		성주군	(120) 명인	선남	-문방1, 2, 3리는 성주중학구 -장학리, 명포1, 2리, 유서2리는 성주중학구와 자유학구	명인중	(남녀공학)	2017. 3. 1. 도원초선남동부 분교 폐교
		도원 《신남동부 분교》	-용신1, 2, 3리는 왜관중학교군 (칠곡군)과 자유 학구					도원 《삭제》	-용신1, 2, 3리는 왜관중학교군 (칠곡군)과 자유학구				
		대동	-기산1, 2리, 운 산리는 용암중					대동	-기산1, 2리, 운산리는 용암중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봉화군	(137) 봉화	봉화	-수식리는 영주시 중학교교과 자유학구	봉화중	(남녀공학)		봉화군	(132) 봉화	봉화	-수식리는 영주시중학교교과 자유학구	봉화중	(남녀공학)	2017. 3. 1. 2017. 3. 1. 물야초복지분교 폐교
		도촌	-문단1, 2리, 화 천리, 도촌리는 영주시중학교교과						도촌	-문단1,2리, 화천리, 도촌리는 영주시중학교교과			
		내성							내성	《삭제》			
		물야초복 지분교							동양	-청량중과 자유학구			
		동양	-청량중과 자유 학구						상운	-하늘2리 중 배골 [신라1, 2리는 청량중과 <b>도산 중</b> (안동시)의 자유학구, 기타는 청량중]			
		상운	-하늘2리 중 배골 [신라1, 2리는 청량중과 <b>도산 중</b> (안동시)의 자유학구, 기타는 청량중]						봉성	-청량중과 자유학구			
		봉성	-청량중과 자유학구						물야	-용암리는 부석중 (영주시) -수식리는 영주시중학교교과 자유학구 (기타는 물야중)			
		물야	-용암리는 부석중(영주시) -수식리는 영주 시 중학교교과 자유학구 (기타는 물야중)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봉화군	(141) 소천	소천 분천분교 삼근초광 회분교 (울진군) 삼근초옥 방분교 (울진군)	-소천면 분천2리 (원곡), 서면 진곡리(원곡)은 석포중	소천중	(남녀공학)		봉화군	(136) 소천	소천 분천분교 《삭제》 《삭제》  삼근초옥 방분교(울 진군)				2017. 3. 1. 삼근초광회분교 폐교
봉화군	(142) 석포	석포 삼근초광 회분교 (울진군)	-소천면 분천2리 (원곡), 서면 진 곡리(원곡)(기타 는 소천중)	석포중	(남녀공학)		봉화군	(137) 석포	석포 《삭제》 《삭제》		석포중	(남녀공학)	2017. 3. 1. 삼근초광회분교 폐교
봉화군	(143) 청량	명호 법전중앙 재산 상운  봉성 동양 춘양	-하늘2리중 배골 은 봉화중학구 -신라1, 2리는 도 산중(안동시)과 자유학구 -봉화중과 자유학구 -봉화중과 자유학구 -삼동1리는 춘양	청량중	(남녀공학)		봉화군	(138) 청량	명호 법전중앙 재산 상운  봉성 동양 춘양	-하늘2리중 배골은 봉화중학구 -신라1, 2리는 용부중(안동시)과 자유학구 -봉화중과 자유학구 -봉화중과 자유학구 -삼동1리는 춘양중과	청량중	(남녀공학)	2018. 3. 1. 용부중학교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소천초 임기분교	중과 자유학구 -갈산2리 중 합강 은 춘양중과 자 유학구 -애당1, 2리, 도심1, 2리는 춘양중서벽분교 (기타는 춘양중) -갈산1리중 공이, 갈산2리 (기타는 춘양중)					소천초 임기분교	자유학구 -갈산2리 중 합강은 춘양중과 자유학구 -애당1, 2리, 도심1, 2리는 춘양중서벽분교 (기타는 춘양중) -갈산1리중 공이, 갈산2리 (기타는 춘양중)				
		녹전초 원천분교 (안동시)	-원천1, 2리, 매 정리는 <b>길주중독 진분교</b> (안동시) 와 자유학구(기 타는 <b>길주중녹전 분교</b> )					녹전초 원천분교 (안동시)	-원천1, 2리, 매정 리는 <b>옹부중</b> (안동시)와 자유학구(기타는 <b>옹부중</b> )				
		이산 (영주시)	-두월리는 영주시 중학교군과 자유 학구(기타는 영 주시중학교군)					이산 (영주시)	-두월리는 영주시 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				
		평은 (영주시)	-천분1리 중 윗두 들(강동1리 중 왕류는 북후중, 기타는 영주시중 학교군)					평은 (영주시)	-천분1리 중 윗두들 (강동1리 중 왕류는 북후중, 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울진군	(148) 기성	기성 사동		기성중	(남녀공학)		울진군	(143) 기성	기성 사동분교		기성중	(남녀공학)	2016. 3. 1. 사동초를 기성초사동분교 장으로 개편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취득재산

(금액단위 : 천원)

재산구분	변경 대비	계		매입(신증축)		교환취득·무상공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토 지(㎡)	당초	40,129	1,221,085	40,129	1,221,085		
	변경						
	최종	40,129	1,221,085	40,129	1,221,085		
건 물(㎡)	당초	67,260	165,597,505	67,260	165,597,505		
	변경	<b>5,338</b>	<b>12,354,723</b>	<b>5,338</b>	<b>12,354,723</b>		
	최종	72,598	177,952,228	72,598	177,952,228		
공작물(식)	당초						
	변경						
	최종						
입목축(주)	당초						
	변경						
	최종						
합 계	당초	107,389	166,818,590	107,389	166,818,590		
	변경	<b>5,338</b>	<b>12,354,723</b>	<b>5,338</b>	<b>12,354,723</b>		
	최종	<b>112,727</b>	<b>179,173,313</b>	<b>112,727</b>	<b>179,173,313</b>		

2. 처분재산

(금액단위:천원)

재산구분	변경 대비	계		매각		철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토 지(m <sup>2</sup> )	당초	38,152	11,326,319	38,152	11,326,319		
	변경						
	최종	38,152	11,326,319	38,152	11,326,319		
건 물(m <sup>2</sup> )	당초	17,342	4,431,275	17,342	4,431,275		
	변경	<b>4,866</b>	<b>1,605,838</b>			<b>4,866</b>	<b>1,605,838</b>
	최종	22,208	6,037,113	17,342	4,431,275	4,866	1,605,838
공작물(식)	당초	27	164,645	27	164,645		
	변경						
	최종	27	164,645	27	164,645		
입목죽(주)	당초	678	39,959	678	39,959		
	변경						
	최종	678	39,959	678	39,959		
합 계	당초	56,199	15,962,198	56,199	15,962,198		
	변경	<b>4,866</b>	<b>1,605,838</b>			<b>4,866</b>	<b>1,605,838</b>
	최종	<b>61,065</b>	<b>17,568,036</b>	<b>56,199</b>	<b>15,962,198</b>	<b>4,866</b>	<b>1,605,838</b>

## 취득대상 재산목록

□ 소관부서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구 분	내 용	
기 관 명	홍해초등학교	
재 산 구 분	건물	
재산의 표시	지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소재지	포항시 북구 홍해읍 약성리 100
	수 량	5,338㎡
기 준 가 격	교부금 및 자치단체전입금	-
	자 체	12,354,723천원
	계	12,354,723천원
취득 예정 시기	2020년 2월	
취 득 내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업 명 : 홍해초등학교 교사동 개축</li> <li>■ 사업기간 : 2017. 12. ~ 2020. 2.</li> <li>■ 소요예산 : 12,354,723천원</li> <li>■ 사업규모 : 연면적 5,338㎡(지상 4층)</li> <li>■ 계약방법 : 경쟁입찰</li> <li>■ 취득사유 : 2017. 11. 15. 포항지진(규모 5.4) 발생으로 교사A동 붕괴 위험과 교사 C동의 구조적 피해가 많아 18학급 규모로 개축하고자 함.</li> </ul>	

### 처분대상 재산목록

□ 소관부서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구 분	내 용
	기 관 명	홍해초등학교
	재 산 구 분	건물
재산의 표시	지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소재지	포항시 북구 홍해읍 약성리 100
	수 량	A동 2,499.56㎡ C동 2,366.64㎡(계 4,866.2㎡)
	기 준 가 격	A동 687,379천원 C동 918,459천원(계 1,605,838천원)
	처분 예정 시기	2017년 12월
	처 분 내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업 명 : 홍해초등학교 교사동 철거</li> <li>■ 사업기간 : 2017. 12. ~</li> <li>■ 사업규모 : 4,866.2㎡                   건물 A동(2,499.56㎡), C동(2,366.64㎡)</li> <li>■ 처분내용 : 철거</li> <li>■ 처분사유 : 2017. 11. 15.포항지진의 영향으로 건물 붕괴                   위험과 구조적 피해가 많아 철거가 불가피함.</li> </ul>

## 二 결 의 안 二

-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김명호 의원 외 36명('17. 12. 1)
-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  
박권현 의원 외 37명('17. 12. 1)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황병직 의원 외 9명('17. 12. 20)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장('17. 12. 20)
- 지진대책특별위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17. 12. 20)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문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문

2016년 2월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청이 도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옹도 경북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도민에게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상북도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북도민을 위한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도청은 경북지역으로 이전하였지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제로 제한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5개의 고등법원과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에는 9개, 부산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는 3개, 대전고등법원에는 2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고등법원에는 단 1개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다.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고 있어 도민에게는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대구지방법원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실례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0.1%에 달하는 520만여 명의 인구나 전체 1심 사건의

9.3%에 달하는 200만 여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지방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 평균의 1.82배, 사건평균의 1.67배에 달한다. 또한 경북의 남쪽에 치우쳐 있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초래된 경북도민의 불편은 이미 한계에 달하였다.

이런 이유로 경북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부단히 제기돼 왔고 공감을 얻고 있다. 이제 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예 경상북도와 의회 및 시민사회와 지역정치권을 망라한 모든 도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옹도 경북의 새 시대에 걸맞은 위상과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법조직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북 지방법원을 신설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확립,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하라.

2017. 12.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문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용 규

2017년 12월 20일

###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문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오랜 가난을 벗고,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이 되는 바탕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놀랍고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 각국은 새마을운동을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UNDP(유엔개발계획)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적원조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새마을운동은 그야말로 경제성장의 상징이자 우리 손으로 지켜나가야 할 인류의 문화자산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업 26개 중 16개를 폐지하고, 새마을 ODA(공적개발원조)로 분류된 사업에서 '새마을' 명칭을 삭제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내 새마을운동 사업예산을 절반 이하로 삭감하는 등 새마을운동의 자긍심을 부인하고, 그 미래마저 불투명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새마을 세계화 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논의하게 됨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가 더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이 배우고자 하는 경제발전모델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와 전통이며 인류문화의 유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숭고한 가치와 빛나는 업적을 오늘에 새로운 공동체운동으로 되살려 세대, 지역, 계층 간 격차와 갈등의 골을 메워나가는 제2의, 제3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켜나갈 시대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국 200만 현역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600만 전직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정신과 자부심이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은 물론 국가발전의 커다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경상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정신의 숭고한 역사와 가치를 깊이 성찰하고,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에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운동과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자 숭고한 정신유산인 새마을 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에 앞장서라.

2017. 12.

경상북도의회 의원일동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 1. 제안이유

-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5분 자유발언 등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18. 1. 29(월) 14:00
  - 2018. 2. 9(금) 11:00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2조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기간 : 2017. 11. 7 ~ 11. 26 / 기간중 14일 이내
  2. 감 사 반 : 각 상임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편성·운영
  3. 감사대상 : 84개 기관
  4. 감사결과 처리의견 : 285건
    - 시정·처리 : 87건
    - 건의·촉구 : 192건
    - 제도 개선 : 4건
    - 수범 사례 : 2건
  5. 지적사항 처리결과 : 지적사항 283건에 대하여  
연 2회(다음년도 2월, 11월) 보고
- 별 첨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내 용

-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 한다.
-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특별위원회 보좌전문위원은 건설소방전문위원으로 한다.

###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 「경상북도의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12월 20일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상임위원회명	출신지역	성명	비고
기획경제위원회	경주	배진석	
문화환경위원회	경주	이진락	
"	비례	조주홍	
농수산위원회	경주	이동호	
"	포항	한창화	
건설소방위원회	포항	김종영	
"	포항	박문하	
교육위원회	포항	김희수	
"	비례	박용선	
9명			

# 의정 활동 보고서

(제296회 정례회)



2018. 1. 인쇄 / 2018. 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